

2024년도
지배구조 및 보수체계
연차보고서

본 공시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차보고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진실되고 충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2025. 2. 20

대표이사 조 재 민



목 차

	Page
[제1절] 지배구조 연차보고서	1
1. 지배구조 일반	1
가. 지배구조 원칙과 정책	1
나. 지배구조 현황	2
(1) 조직도	2
(2) 지배구조의 특징	3
(3) 지배구조 현황(요약)	3
다. 관련 규정	4
2. 이사회	5
가. 역할(권한과 책임)	5
(1) 총괄	5
(2) 구체적 역할	5
(가) 경영목표·전략의 수립 및 평가	5
(나) 정관 변경	6
(다) 예산 및 결산 승인	6
(라) 해산·영업양도 및 합병 등 조직의 중요한 변경	7
(마) 내부통제기준 및 위험관리기준 수립 · 평가	7
(바) 경영승계 등 지배구조 원칙·정책의 수립·평가	8
(사) 이해상충행위 관리·감독	8
(아) 기타	9
나. 구성	9
(1) 총괄	9
(2) 구성원	10
(3) 요약	14
다. 활동내역	15
(1) 활동내역 개요	15

(2) 회의 개최내역	16
라. 이사회 및 이사에 대한 직무평가	23
(1) 이사회 평가	23
(2) 이사에 대한 직무평가 기준	24
마. 사외이사가 아닌 이사회 의장 선임 사유	24
3. 임원후보추천위원회	26
가. 역할(권한과 책임)	26
(1) 대표이사 후보 추천	26
(2) 감사위원 후보 추천	26
(3) 사외이사 후보 추천	27
나. 구성	27
다. 선임기준	28
(1) 후보 자격요건	28
(가) 대표이사 후보 자격요건	28
(나) 감사위원 후보 자격요건	28
(다) 사외이사 후보 자격요건	28
(2) 후보 추천 절차	29
(가) 대표이사 후보 추천 절차	29
(나) 감사위원 후보 추천 절차	29
(다) 사외이사 후보 추천 절차	29
(3) 임원 업무수행 평가 방식	30
(가) 대표이사 업무수행 평가 방식	30
(나) 상근감사위원 업무수행 평가 방식	30
(다) 사외이사 업무수행 평가 방식	30
라. 활동내역 및 평가	30
(1) 활동내역 개요	30
(2) 회의 개최내역	31
(3) 평가	32
마. 임원 후보 추천 관련사항	32

(1) 대표이사 후보	32
(2) 감사위원 후보	32
(가) 후보자 인적사항	32
(나) 후보제안자	33
(다) 후보자 추천 사유	33
(라) 자격충족 여부 및 근거	34
(마) 임원후보추천위원회 검토 및 의결 결과	34
(3) 사외이사 후보	35
(가) 후보자 인적사항	35
(나) 후보제안자	37
(다) 후보자 추천 사유	38
(라) 금융회사등과 관계	38
(마) 자격충족 여부 및 근거	39
(바) 임원후보추천위원회 검토 및 의결 결과	41
(4) 사외이사 재임여부 및 평가 결과	41
(5) 자격요건 검토보고서	42
(6) 사외이사 후보군 관리현황	44
(가) 사외이사 후보군 관리 개요	44
(나) 후보군 관리 활동내역	44
(다) 후보군 현황	44
(7) 임원후보추천위원회가 이사회에 후보군 추천관련 보고한 내용	45
(8) 사외이사 지원부서가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 후보군 관리 업무 관련 주기적으로 보고한 내용	45
(가) 사외이사 지원부서 운영 현황	45
(나)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 후보군 관리 관련 업무 보고 및 지원 내용	46
4. 사외이사 활동 · 보수 등	47
가. 사외이사 활동내역	47
(1) 이사회 및 이사회내위원회 회의일시, 안건내용	47

(가) 이사회	47
(나) 임원후보추천위원회	47
(다) 감사위원회	47
(라) 위험관리위원회	47
(마) 보수위원회	47
(바) 내부통제위원회	47
(2) 사외이사 개인별 이사회내위원회 참석 및 찬성여부	48
(가) 사외이사 이재은	48
(나) 사외이사 박영규	48
(다) 사외이사 조성부	49
(라) 사외이사 신선경	49
(마) 사외이사 조세훈	49
(바) 요약	50
나. 임원책임보상보험 가입 현황	50
다. 사외이사 교육·연수	52
라. 사외이사 자격요건 유지 여부	52
(1) 사외이사 이재은	52
(2) 사외이사 박영규	53
(3) 사외이사 조성부	53
(4) 사외이사 신선경	54
마. 기부금 등 지원내역	54
바. 사외이사 평가	55
(1) 평가 개요	55
(2) 내부평가	55
(가) 내부평가 개요	55
(나) 내부평가 결과 및 개선방안	55
(3) 외부평가	56
사. 선임사외이사 및 지원부서 활동 내역	56
(1) 선임사외이사 활동내역	56

(2) 사외이사 지원부서의 활동내역	57
(가) 지원부서 현황	57
(나) 지원부서 수행 업무	57
아. 사외이사 재직기간 및 보수	57
(1) 사외이사 이재은	57
(2) 사외이사 박영규	58
(3) 사외이사 조성부	58
(4) 사외이사 신선경	59
(5) 사외이사 조세훈	60
자. 금융회사와 사외이사등이 소속한 기관과의 계약체결 내역	60
차. 최근 5년간 사외이사 선임 내역	60
5. 대표이사 경영승계	62
가. 대표이사 경영승계 내부규정	62
나. 대표이사 후보추천 및 경영승계 절차	67
(1) 일반	67
(2) 비상계획	69
다. 대표이사 자격충족 여부 및 근거	69
(1) 소극적 요건	69
(2) 금융회사가 정한 자격요건	70
라. 대표이사 후보추천 및 경영승계 내역	70
(1) 대표이사 후보추천 및 승계 내역	70
(2) 대표이사 승계 관련 주요 심의·의결 경과	70
마. 대표이사 후보군 관리현황	70
바. 이사회와 대표이사 경영승계계획 적정성 점검 내역	71
사. 대표이사 승계업무 지원부서 운영 현황	72
6. 신한금융지주회사 자회사최고경영자후보추천위원회	74
가. 역할	74
나. 구성	74
다. 활동내역 및 평가	75

(1) 활동내역 개요	75
(2) 회의 개최내역	75
(3) 평가	79
7. 감사위원회	80
가. 역할(권한과 책임)	80
(1) 총괄	80
(2) 구체적 역할	80
(가) 이사 및 집행임원의 업무집행 감독	80
(나) 외부감사인 선임 승인 및 감독	81
(다) 상임감사위원 관련 사항	81
(라) 재무제표 검토 등	81
(마) 기타	82
나. 구성	82
(1) 총괄	82
(2) 구성원	82
다. 활동내역 및 평가	83
(1) 활동내역 개요	83
(2) 회의 개최내역	83
(3) 평가	86
라. 감사보조조직 등	87
8. 위험관리위원회	89
가. 역할(권한과 책임)	89
(1) 총괄	89
(2) 구체적 역할	89
(가) 위험관리의 기본방침 및 전략 수립	89
(나) 부담가능한 위험수준 결정	89
(다) 적정투자한도 및 손실허용한도 승인	89
(라) 위험관리기준의 제정 및 변경	89
(마) 기타	90

나. 구성	90
(1) 총괄	90
(2) 구성원	90
다. 활동내역 및 평가	91
(1) 활동내역 개요	91
(2) 회의 개최내역	91
(3) 평가	92
9. 내부통제위원회	93
가. 역할(권한과 책임)	93
(1) 총괄	93
(2) 구체적 역할	93
(가) 임원·대표이사 (총괄)관리조치 점검·평가·개선조치 요구	93
(나) 내부통제의 기본방침 및 전략수립	93
(다) 임직원 직업윤리와 준법정신을 중시하는 조직문화의 정착 방안 마련	93
(라) 지배구조내부규범 마련 및 변경, 내부통제기준 제·개정	93
(마) 기타	94
나. 구성	94
(1) 총괄	94
(2) 구성원	94
다. 활동내역 및 평가	94
(1) 활동내역 개요	94
(2) 회의 개최내역	95
(3) 평가	95
10. 감독당국 권고사항 및 개선계획	96
[제2절 보수체계 연차보고서]	97
1. 보수위원회	97
가. 총괄	97
나. 구성	97

(1) 총괄	97
(2) 구성원	98
다. 권한과 책임	98
(1) 총괄	98
(2) 보수의 결정 및 지급방식에 관한 심의·의결	98
(3) 보수지급에 관한 연차보고서의 작성 및 공시에 관한 사항 심의·의결	99
(4) 보수체계의 설계·운영 및 그 설계·운영의 적정성 평가 등에 관한 사항 심의·의결	99
(5) 보수정책에 대한 의사결정 절차와 관련된 사항 심의·의결	100
(6) 금융회사의 보수체계와 재무상황 및 위험과의 연계성 및 이 법규 준수 여부에 대한 상시 점검	100
(7) 금융회사의 보수체계가 이 법규를 준수하고 있는지 등을 점검하기 위하여 연차보수평가를 경영진으로부터 독립적으로 실시	101
(8) 보수위원회 보수정책의 적용 범위	101
(9) 임원, 금융투자업무담당자 등에 대한 변동보수 대상자의 결정	102
라. 보수위원회 활동내역 및 평가	102
(1) 의사결정 절차	102
(2) 활동내역 개요	103
(3) 회의 개최내역	103
(4) 평가	104
2. 보수체계	105
가. 주요사항	105
(1) 성과측정 및 성과와 보수의 연계방식	105
(가) 회사 전체 또는 중요 사업부에 대한 주요 성과측정 지표	105
(나) 개인에 대한 주요 성과측정 지표	105
(다) 회사 전체 및 개인 성과측정 결과와 개인 보수의 연계방법	105
(2) 성과보수 이연 및 조정, 환수, 지급확정 기준	105
(가) 성과보수액 중 즉시지급과 이연지급에 대한 정책	105

(나) 이연된 보수액 또는 지급된 보수액에 대한 조정 및 환수 정책	106
(다) 이연보수액 중 지급확정과 지급미확정의 결정 기준	107
(3) 현금과 주식 등 기타 보수간의 배분을 결정하는 기준	107
(가) 전체 보수액 중 고정보수액과 변동보수액의 배분을 결정하는 기준 및 근거	107
(나) 성과보수의 지급형태(현금, 주식, 주식연계상품 등)	107
(다) 성과보수액 중 현금과 주식 등 기타 보수간의 배분을 결정하는 기준 및 근거	107
(라) 성과보수액 중 즉시지급과 이연지급의 배분을 결정하는 기준 및 근거	108
(4) 일반직원의 보수체계	108
(가) 성과주의 문화 정착을 위한 보수제도	108
(나) 임금체계의 합리화	108
(5) 외부전문가의 자문내역	108
(6) 보수 관련 보험의 활용 내역	109
(7) 보수체계상 주요 변경 사항	109
나. 보수 세부사항	109
(1) 임직원 총보수	109
(2) 직급별 보수총액 및 성과보수액	109
다. 임원 및 금융투자업무담당자 보수 세부사항	109
(1) 보수의 구분(해당년도 발생액 기준)	110
(2) 성과보수의 형태(해당년도 발생액 기준)	110
(3) 이연보수액의 보수의 구분(해당년도 발생액 기준)	110
(4) 이연보수액의 형태별 구분(해당년도 발생액 기준)	110
(5) 이연보수액의 보수의 구분(해당년도말 누적액 기준을 발생년도 별로 구분)	110
(6) 이연보수의 조정	110
(7) 퇴직자에 대한 퇴직보수	111

[첨부]	112
가. 관련 규정	112
(1) 신한자산운용(주) 정관	112
(2) 신한자산운용(주) 이사회규정	121
(3) 신한자산운용(주) 지배구조 내부규범	128
(4) 신한자산운용(주) 감사위원회규정	151
(5) 신한자산운용(주) 임원후보추천위원회규정	157
(6) 신한자산운용(주) 보수위원회규정	159
(7) 신한자산운용(주) 위험관리위원회규정	162
(8) 신한자산운용(주) 내부통제위원회규정	164
나. 재선임 대상 사외이사 후보 검토보고서	166

[제1절] 지배구조 연차보고서

1. 지배구조 일반

가. 지배구조 원칙과 정책

신한자산운용(주) (이하 “당사”)는 회사의 지속적 성장과 주주, 금융소비자 등 이해관계자의 이익보호를 위해 투명하고 건전한 기업지배구조를 정착시킴으로써 경영안정성을 제고하고, 장기적으로 금융산업 발전에 기여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당사는 전문성과 독립성을 겸비한 이사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안정적인 경영승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주주 및 투자자들과의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을 위하여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회는 주주, 투자자 등 금융소비자의 정당한 이익과 회사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상법 등 관련법령 범위 내의 경영에 관한 포괄적인 책임과 권한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사회는 회사와 주주의 이익을 위해 경영전략을 수립하고, 경영목표 및 사업계획을 승인하며, 그 이행여부를 감독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사회는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 개진과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위하여 이사진을 다양한 전문성을 가진 자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당사 이사는 관련법령에서 정한 자격기준에 부합할 뿐만 아니라 모범적인 윤리의식과 직업의식, 정직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사회는 경영진의 주요 업무집행 사항에 대해 보고를 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경영진의 효율적인 견제를 위해 대표이사의 선임·해임 권한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사회의 경영진 견제기능이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이사회의 과반수를 독립성이 검증된 사외이사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2024년 12월말 기준 이사회의 67% 이상을 사외이사로 구성) 2024년말 현재 이사회 구성원은 총 6명으로 금융분야 전문가 2명, 경영분야 전문가 2명, 회계분야 전문가 1명, 법률분야 전문가 1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사회는 정기 이사회뿐만 아니라 필요시 임시 이사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2024년에는 정기 이사회가 4 회, 임시 이사회가 6 회 개최되어 회사의 중요한 경영사항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와 전략적 의사결정을 수행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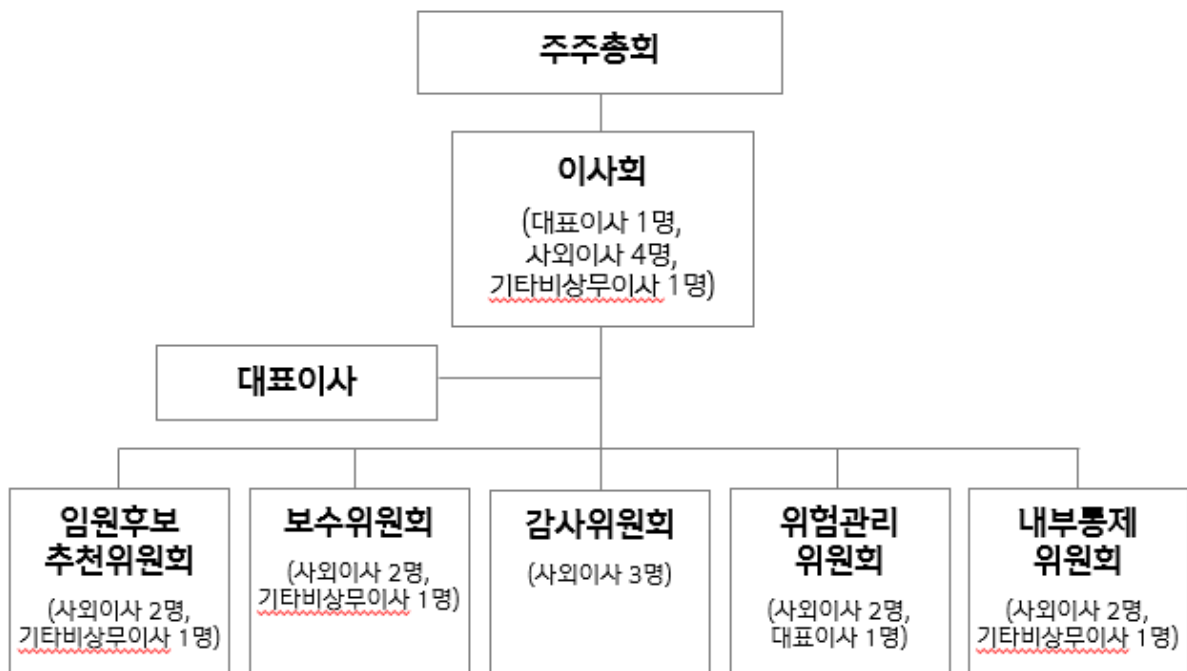
당사의 이사회 및 이사회내위원회 활동내역, 사외이사의 주요 활동내역 등 지배구조에 대한 보고서는 당사 및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구체적 내용은 아래 사이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개내용 확인 사이트 주소 : <http://www.shinhanfund.com>)

(협회 사이트 주소 : <http://www.kofia.or.kr>)

나. 지배구조 현황

(1) 조직도



(2) 지배구조의 특징

당사 이사회는 회사의 최고 상설의사결정기구로서 경영실적 등 중요사항을 보고 받고, 정관 및 관련 내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전략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자본금에 관한 사항, 대표이사 선임 및 해임 권한 등 주요 의사결정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이사회는 사외이사 수와 비율이 4명, 67%로 주주 추천 및 다양한 전문성과 배경을 갖춘 사외이사를 이사회에 참여시켜 주주의 이익을 대변하고 이사회 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며 이사회 의사결정기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임원후보추천위원회, 감사위원회, 위험관리위원회, 보수위원회, 내부통제위원회의 5개의 이사회내위원회를 두고 있습니다.

(3) 지배구조 현황(요약)

<2024년 12월말 기준>

내부기관	주요 역할	구성 (사외이사수/ 구성원수)	의장, 위원장 (이름/상임·사외·비상임 여부)	관련 규정
이사회	최고의결기구	4/6	조재민/상임	정관§31 이사회규정§5
임원후보 추천위원회	임원후보추천	2/3	조성부/사외	정관§32 임원후보추천위원회규정§5
감사 위원회	회사의 회계 및 업무 감사	3/3	이재은/사외	정관§32 감사위원회규정§4
위험관리 위원회	회사의 고유재산과 집합투자재산 운용 및 기타 제반 리스크관리	2/3	박영규/사외	정관§32 위험관리위원회규정§5
보수 위원회	경영진 등의 평가 보상 체계 운용 및 관리	2/3	박영규/사외	정관§32 보수위원회규정§2
내부통제 위원회 ^{주)}	내부통제의 기본방침 및 전략 수립	2/3	-	정관§32 내부통제위원회규정§6

주) 내부통제위원회 : 2024년 12월 19일 신설

다. 관련 규정

- 첨부 1. 신한자산운용(주) 정관
- 첨부 2. 신한자산운용(주) 이사회규정
- 첨부 3. 신한자산운용(주) 지배구조 내부규범
- 첨부 4. 신한자산운용(주) 감사위원회규정
- 첨부 5. 신한자산운용(주) 임원후보추천위원회규정
- 첨부 6. 신한자산운용(주) 보수위원회규정
- 첨부 7. 신한자산운용(주) 위험관리위원회규정
- 첨부 8. 신한자산운용(주) 내부통제위원회규정

2. 이사회

가. 역할(권한과 책임)

(1) 총괄

당사 이사회는 건전경영의 기반 하에 경영진이 책임경영을 펼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경영진 경영활동의 기준·절차·방식 등에 문제가 있는 경우 이를 지적하고 시정 요구함으로써 합리적 경영판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합니다. 이를 위해 당사는 다양한 전문역량과 식견을 보유한 사외이사와 금융분야 전문경영인인 대표이사로 이사회를 구성함으로써 다양한 시각에서 회사의 주요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필요시 회사 내외의 전문인력 등을 활용하여 의사결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 구체적 역할

회사의 최고 상설의사결정기구로서 경영계획·실적 등 중요사항을 보고 받고, 정관 및 내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전략 및 주요 운용에 관한 사항, 자본금에 관한 사항 등 주요 의사결정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당사는 이사회의 구체적인 역할을 이사회규정 제 5 조, 제 13 조 등에 정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지배구조 내부규범 제 4 조에서도 이사회의 구체적인 역할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동 내용은 당사 정관에도 반영되어 있습니다.

(가) 경영목표·전략의 수립 및 평가

당사 지배구조 내부규범 제 4 조제 1 항제 1 호는 '자회사를 포함한 경영계획의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을 이사회의 권한으로 정하고 있으며, 이사회규정 제 13 조제 1 항제 4 호 A 목에 회사 경영의 기본 방침 및 계획에 관한 사항을 이사회의 결의사항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당사 이사회는 사업계획, 재무계획, 예산계획 등을 포함한 경영계획을 최종 승인하며, 실무 업무는 경영진에게 위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경영진이 실무적으로 마련한 2024 년도

경영목표 및 전략은 2023년 12월 26일 개최된 제 28기 제 9차 임시 이사회에서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승인 받은 경영계획은 매 분기 경영실적 보고 형태로 이사회에 보고하며 점검합니다.

(나) 정관 변경

당사 지배구조 내부규범 제 4 조제 1 항제 2 호는 '정관 등 중요 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을 이사회 의 권한으로 정하고 있으며, 이사회규정 제 13 조제 1 항제 2 호에 정관 및 중요 규정의 제정 및 개폐시 이사회 결의를 거쳐야 함을 명확히 정하고 있습니다.

2024년 12월 19일 개최된 제 29기 제 9차 임시 이사회는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 정책의 수립 및 감독에 관한 사항을 이사회 의 심의·의결사항에 반영하고, 이사회내위원회로서 내부통제위원회를 신설하는 정관 개정안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동 개정은 금융권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개정 사항을 정관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상기 정관 변경 내용은 동일 자에 개최된 제 29기 임시 주주총회에서 승인되어 정관에 반영되었습니다.

(다) 예산 및 결산 승인

당사 지배구조 내부규범 제 4 조제 1 항제 3 호는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을 이사회 의 권한으로 정하고 있으며, 이사회규정 제 13 조제 1 항제 4 호 B 목은 보다 구체적으로 '경영진 및 직원의 보수를 포함한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을 이사회 의 결의사항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2024년도 예산은 2024년도 경영목표·전략과 함께 2023년 12월 26일 개최된 제 28기 제 9차 임시 이사회에서 심의·의결하였습니다. 당사의 예산은 자본예산과 비용예산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본예산은 유·무형자산에 대한 예산이며, 비용예산은 영업비용의 수수료 비용, 판관비와 관리비, 기타영업비용과 영업외비용에 대한 예산입니다.

2023년도 결산에 대한 제 28기(2023년) 재무제표 승인의 건은 2024년 2월 14일에 개최된 제 29기 제 2차 임시 이사회에서 심의·의결하였습니다.

(라) 해산·영업양도 및 합병 등 조직의 중요한 변경

당사 지배구조 내부규범 제 4 조제 1 항제 4 호는 '조직의 중요한 변경 및 계약에 관한 사항'을 이사회 의사결정 권한으로 정하고 있으며, 이사회규정 제 13 조제 1 항제 4 호 D 목에 '조직·인사·급여에 관한 기본 체계의 결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E 목에 '점포의 이전 및 폐쇄', F 목에 '자본시장법상의 신규사업에의 진출', 제 13 조제 1 항제 5 호 A 목에 '업무용 동산, 부동산의 취득, 처분의 경우', D 목에 '해산, 영업양도 및 합병승인', E 목에 '기타 중요자산의 운용에 관한 사항' 등을 이사회 의사결정 사항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2024 년 7 월 1 일자로 사무실을 사학연금 TP 타워로 이전하였으며, 해당 사무실 이전 건은 2022 년 11 월 9 일 개최된 제 27 기 제 12 차 정기 이사회에서 심의·의결하였습니다.

(마) 내부통제기준 및 위험관리기준 수립·평가

당사 지배구조 내부규범 제 4 조제 1 항제 7 호, 제 8 호는 '회사의 내부통제제도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회사의 위험관리기준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을 이사회 의사결정 권한으로 정하고 있으며, 이사회규정 제 13 조제 1 항제 7 호 D 목, E 목에 동일 내용을 이사회 의사결정 사항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2024 년 2 월 27 일 개최된 제 29 기 제 3 차 임시 이사회는 내부통제기준 개정의 건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동 안건은 금융투자협회의 표준내부통제기준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상정된 안건으로 개정의 주된 내용은 불공정거래 혐의 발견 시 금융투자회사 및 임직원이 이를 금융당국에 신고하도록 의무조항을 신설하고, 불공정거래 혐의 등의 조사관련 정보에 대해 제 3 자 유출을 금지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2024 년 12 월 19 일 개최된 제 29 기 제 9 차 임시 이사회는 이사회 내부통제 관련 주요사항 심의·의결 권한을 추가하고, 대표이사의 책무구조도 마련 및 내부통제 총괄관리 의무를 반영하고, 이사회내위원회로서 내부통제위원회를 신설하는 내부통제기준 개정의 건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동 개정은 금융권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개정 사항을 반영하는 내용입니다.

(바) 경영승계 등 지배구조 원칙·정책의 수립·평가

당사 지배구조 내부규범 제 4 조제 1 항제 5 호, 제 9 호는 '회사의 지배구조 정책 및 원칙 전반에 관한 사항', '최고경영자 경영승계계획의 수립·평가 및 상시적인 최고경영자후보군 관리에 관한 사항'을 이사회 의사결정권으로 정하고 있으며, 이사회규정 제 13 조제 1 항제 4 호, 제 6 호에 동일 내용을 이사회 의사결정권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당사 이사회는 지배구조의 효율성과 안전성, 투명성을 위해 이사회 내 임원후보추천위원회를 설치하여 최고경영자 경영승계 등의 절차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신한금융지주회사 자회사최고경영자후보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최고경영자 대표이사 후보에 대하여 관계 법규와 지배구조 내부규범에서 정한 자격기준 적합여부를 검토하여 주주총회에 이사 후보로 추천하고 있으며, 이사회는 주주총회에서 이사로 선임된 최고경영자 대표이사 후보에 대해 당사 지배구조 내부규범에 따라 도덕성, 신한가치 구현 능력, 업무 전문성, 조직관리 역량을 갖추고 회사의 비전을 공유하며 공익성 및 건전경영에 노력할 수 있는 자를 최고경영자 대표이사로 선임합니다.

(사) 이해상충행위 관리·감독

당사 지배구조 내부규범 제 4 조제 1 항제 6 호는 '대주주·임원 등과 회사 간 이해상충 행위의 감독에 관한 사항'을 이사회 의사결정권으로 정하고 있으며, 이사회규정 제 13 조제 1 항제 6 호 B 목에 '상법 제 398 조에 따른 이사 등과 회사 간의 거래에 관한 사항'을 이사회 의사결정권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계열사와 거래 발생시마다 개별 거래에 대한 이사회 의사결정권의 현실적으로 어려움에 따라 신규체결 및 갱신 예정인 거래에 대해 거래 유형별로 연간 예상금액을 설정하여 1 년 단위의 포괄적 거래 한도를 이사회를 통해 사전승인 받습니다. 2023 년 12 월 26 일 개최된 제 28 기 제 9 차 임시 이사회는 이러한 포괄적 거래 한도의 2024 년도 계열사간 거래 계획안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2024 년 3 월 28 일 개최된 제 29 기 제 4 차 정기 이사회는 당사와 신한라이프간 기 승인 받은 계열사간 거래 한도 및 기준 변경의 건을 심의·의결하였으며, 당사와 신한라이프간

체결 예정인 전대차계약 거래에 대해 심의·의결하였습니다. 다만, 최종적으로 당사는 신한 라이프와 동 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습니다.

2024년 5월 14일 개최된 제 29기 제 6차 정기 이사회는 당사와 신한 EZ 손해보험과의 건물 및 기업 관련 보험계약 체결 건에 대해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아) 기타

당사 이사회는 2024년 총 10회의 이사회를 개최하여 이사회내위원회 위원 선임, 위험관리책임자 및 주요업무집행책임자 선임 등의 안건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또한, 정기적으로 업계 동향 및 실적, 감사 업무 등을 보고 받았습니다.

나. 구성

(1) 총괄

당사 이사회는 총수는 정관 제23조에 따라 5인 이상 10인 이내로 구성하며, 사외이사는 상법, 자본시장법, 지배구조법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이사 총수의 과반수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2024년도말 현재 이사회는 모두 6명의 이사(대표이사, 기타비상무이사 이외 4명의 사외이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24년 3월 28일 개최된 정기 주주총회는 임기가 만료된 감사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2명을 재선임하였고, 감사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1명 및 사외이사 1명을 신규 선임하였고, 12월 19일 개최된 임시 주주총회는 임기가 만료되는 기타비상무이사 1명을 재선임하였습니다.

이사의 임기는 3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주총회의 결정에 따르며 연임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외이사의 경우 임기는 2년 이내로 하되 연임 시 임기는 1년 이내로 하고, 총 재임기간이 6년을 초과하지 않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는 상임이사의 임기를 단기

로 설정할 경우 책임경영이 어렵고 단기수익을 추구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고, 사외이사의 임기를 장기로 설정할 경우 사외이사에 대한 마땅한 견제장치가 없다는 점을 고려한 것입니다.

사외이사는 금융, 경제, 경영, 회계, 법률 등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이나 실무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특정한 이해관계에 얽매이지 않고 전체 주주 및 금융소비자의 이익을 위하여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고, 그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한 윤리의식과 책임성을 보유하고 있는 자로서 정관에 명시된 자격을 충족해야 선임되고 그 직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2024 년말 현재 이사의 전문분야를 기준으로 분류하면 금융분야 2 명, 회계분야 1 명, 경영분야 2 명, 법률분야 1 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사회 의장으로는 이사회 진행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이사회 결의를 거쳐 조재민 전통자산부문 대표이사가 그 역할을 수행하였습니다. 당사는 사외이사 아닌 자가 이사회 의장을 겸직하는 경우 이사회 독립성과 경영진 견제기능이 저해되지 않도록 선임사외이사를 선임하고 있으며, 조세훈 사외이사는 2023 년 3 월 22 일 개최된 제 28 기 제 4 차 임시 이사회에서 선임사외이사로 재선임되었습니다.

(2) 구성원

(가) 이사회 의장: 조재민

- 1) 직위: 대표이사
- 2) 구분: 상임
- 3) 이사회, 위원회 역할: 이사회 의장, 보수위원회 위원
- 4) 임기: 2022.01.01 ~ 2023.12.31 / 2024.01.01 ~ 2025.12.31
- 5) 학력: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1985)
New York University, MBA (1987)
- 6) 주요 경력: 마이다스에셋자산운용 대표이사 (1999 ~ 2009)
KB 자산운용 대표이사 (2009 ~ 2013)
KTB 자산운용 대표이사 (2013 ~ 2016)

KB 자산운용 대표이사 (2017 ~ 2020)

(나) 이사: 이재은

- 1) 직위: 사외이사
- 2) 구분: 비상임
- 3) 이사회, 위원회 역할: 선임사외이사, 감사위원회 위원장, 위험관리위원회 위원
- 4) 임기: 2021.01.15 ~ 2023.03.22 / 2023.03.22 ~ 2024.03.28 /
2024.03.28 ~ 2025 년 개최 정기 주주총회일
- 5) 학력: 고려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1985)
서울대학교 대학원 경영학과 졸업 (1992)
고려대학교 대학원 경영학과 졸업 (2008)
- 6) 주요 경력: 삼일회계법인 (1984~2010)
삼일회계법인 회계감사 파트너 (1997~2010)
삼일회계법인 회계감사심리실장 (2004~2007)
미국 PricewaterhouseCoopers(PwC) 회계법인 SanFrancisco office
근무 (1988~1990)
홍익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2010~현재)
한국공인회계사회 회계감사기준위원회 위원 (2011~2015)
금융감독원 금융투자업인가 외부평가위원회 위원 (2011~2016)
관세청 법인심사대상선정심의위원회 위원 (2014~2016)
한국회계학회 연구윤리분과 위원장 (2019~2020)
한국공인회계사회 위탁감리위원회 위원 (2019~2024)
한국공인회계사회 표준감사시간위원회 위원장 (2021~2024)
한국상장회사협의회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위원회 위원장 (2018~현재)
증권선물위원회 회계제도심의위원회 위원 (2018~2021)
삼성에스디에스 사외이사 겸 감사위원 (2014~2020)
폭스바겐파이낸셜 사외이사 겸 감사위원 (2016~2017)

(다) 이사: 박영규

- 1) 직위: 사외이사

- 2) 구분: 비상임
- 3) 이사회, 위원회 역할: 이사회 이사, 감사위원회 위원, 위험관리위원회 위원장,
보수위원회 위원장
- 4) 임기: 2021.01.15 ~ 2023.03.22 / 2023.03.22 ~ 2024.03.28 /
2024.03.28 ~ 2025 년 개최 정기 주주총회일
- 5) 학력: 미네소타대학교 통계학 졸업(학사) (1985)
컬럼비아대학교 경영학과 졸업(석사) (1987)
조지워싱턴대학교 경영학과 졸업(박사) (1993)
- 6) 주요 경력: 쌍용투자증권 연구원 (1988~1990)
삼성금융연구소 선임연구원 (1993~1995)
중앙대학교 조교수 (1995~2002)
성균관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2002~현재)
아이트러스트자산운용 기타비상무이사 (2021~현재)

(라) 이사: 조성부

- 1) 직위: 사외이사
- 2) 구분: 비상임
- 3) 이사회, 위원회 역할: 이사회 이사, 감사위원회 위원,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위원장,
보수위원회 위원, 내부통제위원회 위원
- 4) 임기: 2022.03.23 ~ 2024.03.28 / 2024.03.28 ~ 2025 년 개최 정기 주주총회일
- 5) 학력: 고려대학교 신문방송학과 졸업 (1979)
- 6) 주요 경력: 한국기자협회 회장 (1998 ~ 1999)
연합뉴스 편집국 경제부장 (2000 ~ 2002)
연합뉴스 방콕특파원 (2003 ~ 2006)
연합뉴스 광주·전남 취재본부장 (2007 ~ 2009)
연합뉴스 논설위원·논설주간·논설고문 (2009 ~ 2014)
뉴스통신진흥회 이사 (2014 ~ 2017)
연합뉴스 연합뉴스 TV 대표이사 사장, 연합인포맥스 회장 (2018 ~ 2021)
우리종합금융(주) 사외이사 (2022~현재)

(마) 이사: 신선경

- 1) 직위: 사외이사
- 2) 구분: 비상임
- 3) 이사회, 위원회 역할: 이사회 이사,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위원, 내부통제위원회 위원
- 4) 임기: 2024.03.28 ~ 2026 년 개최 정기 주주총회일
- 5) 학력: 서울대학교 사법학과 졸업 (1999)
 - 사법연수원 수료 (2001)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수료 (2002)
 - Stanford Law School (법학석사-LL.M) (2007)
 - 미국 뉴욕주 변호사 자격 취득 (2008)
- 6) 주요 경력: 법무법인 세종 금융파트 파트너 변호사 (2001~2016)
 - 미국 ClearyGottliebSteen&Hamilton Associate 변호사(2007~2009)
 - 법무법인 리우 자문파트 파트너 변호사 (2016~현재)
 - 기획재정부 고문변호사 (2014~2019)
 - 공인중재인협회(Chartered Institute of Arbitrators) 정회원 (2014~현재)
 -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 (2015~2019)
 - 조달청 과징금부과심의위원회 민간위원 (2017~2020)
 -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전문위원 (2017~2022)
 - 예금보험공사 자문위원 (2017~2022)
 - 한국금융법학회 국제이사 (2020~현재)
 - 서울지방변호사회 중대재해처벌법대응 TF 자문위원 (2022~현재)
 - 서울시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2022~현재)
 - MBC 인사위원회 위원 (2022~현재)
 -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 위원 (2022~2024)
 - 주식회사 부루구루 사외이사 (2023~현재)
 - 주식회사 카카오 사외이사 (2023~2024)

(바) 이사: 고유선

- 1) 직위: 기타비상무이사
- 2) 구분: 비상임

- 3) 이사회, 위원회 역할: 이사회 이사,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위원, 보수위원회 위원, 내부통제위원회 위원
- 4) 임기: 2024.01.01 ~ 2024.12.31 / 2025.01.01 ~ 2025.12.31
- 5) 학력: 상명여자대학교 경제학 학사 (1993)
서강대학교 경제학 석사 (1995)
송실대학교 경영학 박사 (2022)
- 6) 주요 경력: 대우경제연구소 (1995)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2000)
한국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경제팀장 (2004)
대우증권 투자전략팀 글로벌경제팀장 (2005)
삼성자산운용 투자리서치센터 글로벌매크로팀장 (2015)
삼성자산운용 투자리서치센터장 (2020)
신한금융지주 미래전략연구소장 (2023~현재)

(사) 이사: 조세훈

- 1) 직위: 사외이사
- 2) 구분: 비상임
- 3) 이사회, 위원회 역할: 선임사외이사, 감사위원회 위원장, 위험관리위원회 위원장,
- 4) 임기: 2020.03.24 ~ 2022.03.23 / 2022.03.23 ~ 2023.03.22 /
2023.03.22 ~ 2024.03.28
- 5) 학력: 고려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1988)
서울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 EMBA 졸업 (2016)
- 6) 주요 경력: 동원증권 국제부 (1988 ~ 1997)
한남투자신탁 국제부 (1997 ~ 1998)
현대투자신탁운용 주식운용팀장 (1998 ~ 2006)
신한 BNP 파riba투자신탁 CIO (2006 ~ 2008)
이룸투자자문 대표이사 (2008 ~ 현재)

(3) 요약 (2024년 12월말 기준)

성명	상임/ 사외	직위	경력	최초 선임일	임기 만료일	재임 기간	담당 위원회
조재민	상임	대표이사 이사회 의장	KB 자산운용	22.01.01	25.12.31	36 개월	위험관리위원회
이재은	사외	선임사외이사, 감사위원회 위원장,	홍익대학교 교수	21.01.15	25 년 개최 정기 주총	47 개월	감사위원회, 위험관리위원회,
박영규	사외	사외이사, 감사위원, 위험관리위원회 위원장, 보수위원회 위원장	성균관대학교 교수	21.01.15	25 년 개최 정기 주총	47 개월	감사위원회, 위험관리위원회, 보수위원회
조성부	사외	사외이사, 감사위원,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위원장	연합뉴스·연합뉴스 TV 대표이사	22.03.23	25 년 개최 정기 주총	33 개 월	감사위원회, 임원후보추천 위원회, 보수위원회, 내부통제위원회
신선경	사외	사외이사	법무법인 리우 파트너 변호사	24.03.28	26 년 개최 정기 주총	9 개월	임원후보추천 위원회, 내부통제위원회
고유선	-	기타비상무이사	신한금융지주 미래전략연구소 소장	24.01.01	25.12.31	12 개월	임원후보추천 위원회, 보수위원회, 내부통제위원회
조세훈	사외	사외이사	이룸투자자문 대표이사	20.03.24	24.03.28	48 개월	감사위원회, 위험관리위원회

다. 활동내역

(1) 활동내역 개요

2024년에는 총 10 회의 이사회가 소집되었고, 모든 이사회는 이사회 규정 제 14 조에서 정한 결의에 필요한 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되었습니다. 이사의 평균 참석률은 100%

입니다. 이사회 개최 전 이사회 의안을 사전에 공유하여 이사들이 사전에 검토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안건에 대한 사전 설명을 통해 이사들의 이해를 돕고 있어 이사회에서 활발한 토의가 가능하였으며, 그 결과 2024 년도 이사회에 부의된 총 38 개의 결의안건 중 38 개 안건 모두 가결되었습니다.

(2) 회의 개최내역

(2-1) 제29기 제1차 임시 이사회

2024년 1월 25일 오후 4:00 [안건통지일: 2024년 1월 18일]

항목	이사별 활동내역						가결 여부
1. 이사 성명	조재민	이재은	박영규	조성부	조세훈	고유선	-
2. 참석여부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
3. 보고안건	-						
4. 결의안건	제1호 위험관리책임자 선임의 건 ^{주)}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주) 조영식 위험관리책임자 재선임

(2-2) 제29기 제2차 임시 이사회

2024년 2월 14일 오후 3:45 [안건통지일: 2024년 2월 7일]

항목	이사별 활동내역						가결 여부
1. 이사 성명	조재민	이재은	박영규	조성부	조세훈	고유선	-
2. 참석여부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
3. 보고안건	1. 2023년도 경영진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 2.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심의 및 결의내역 보고 3. 감사위원회 심의 및 결의내역 보고 4. 고객 정보의 제공 및 이용에 관한 보고						
4. 결의안건							

제1호 제28기(2023.01.01~2023.12.31) 재무제표(이익잉여금처분 계산서 포함)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의 건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제2호 제28기(2023.01.01~2023.12.31) 영업보고서 승인의 건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2-3) 제29기 제3차 임시 이사회

2024년 2월 27일 오후 4:05 [안건통지일: 2024년 2월 20일]

항목	이사별 활동내역						가결 여부
1. 이사 성명	조재민	이재은	박영규	조성부	조세훈	고유선	-
2. 참석여부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
3. 보고안건							
1.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에 대한 감사위원회 평가보고서 2.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에 대한 내부감사부서 평가결과 보고 3. 감사업무 보고 4. 2023년도 이사회 및 이사회내위원회 평가 보고 5. 2023년 신용정보관리·보호인의 업무수행 실적 및 2024년 계획 보고 6. 2023년도 내부통제 체계·운영에 대한 실태 점검 결과 보고 7. 2023년도 재산상 이익 제공 현황 및 적정성 점검 결과 보고 8. 감사위원회 심의 및 결의내역 보고							
4. 결의안건							
제1호 내부통제기준 개정의 건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제2호 재산상 이익 제공한도 결정의 건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2-4) 제29기 제4차 정기 이사회

2024년 3월 28일 오후 5:10 [안건통지일: 2024년 3월 22일]

항목	이사별 활동내역						가결 여부
1. 이사 성명	조재민	이재은	박영규	조성부	조세훈	고유선	-
2. 참석여부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

3. 보고안건							
1. 조직개편 보고 2. 임원 선임 보고 3. 감사업무 보고 4. 내부통제시스템에 대한 평가보고서 5.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 개최내역 보고 6.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위원회 회의결과 보고 7.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테스트 및 점검 결과 보고 8.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정기 점검 및 모니터링 점검 보고 9.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승인위원회 의결사항 보고 10.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심의 및 결의내역 보고 11. 감사위원회 심의 및 결의내역 보고							
4. 결의안건							
제1호 고유재산의 시딩투자 총 한도 승인의 건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제2호 최소영업자본액비율한도 승인의 건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제3호 계열사간 거래 한도 및 기준 변경의 건 - 신한라이프 용역계약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제4호 계열사간 거래 계획(안) 승인의 건 - 신한라이프 전대차계약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제5호 제28기 정기 주주총회 개최의건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제6호 제28기 정기 주주총회 의안 상정의 건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2-5) 제29기 제5차 임시 이사회

2024년 3월 28일 오후 5:40 [안건통지일: 2024년 3월 22일]

항목	이사별 활동내역						가결 여부
	조재민	이재은	박영규	조성부	신선경	고유선	
1. 이사 성명	조재민	이재은	박영규	조성부	신선경	고유선	-
2. 참석여부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
3. 보고안건							

1. 사외이사 기부금 내역 보고							
4. 결의안건							
제1호 선임사외이사 선임의 건	찬성	- 주)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제2호 박영규 이사 겸직 승인의 건	찬성	찬성	- 주)	찬성	찬성	찬성	가결
제3호 조성부 이사 겸직 승인의 건	찬성	찬성	찬성	- 주)	찬성	찬성	가결
제4호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주1)	찬성	찬성	찬성	- 주)	- 주)	찬성	가결
제5호 보수위원회 위원 선임의건 주2)	찬성	찬성	- 주)	- 주)	찬성	- 주)	가결
제6호 위험관리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주3)	찬성	- 주)	- 주)	찬성	찬성	찬성	가결

주) 본인 심의 의결권 제한

주1) 사외이사 조성부, 사외이사 신선경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위원으로 선임

주2) 사외이사 박영규, 사외이사 조성부, 기타비상무이사 고유선 보수위원회 위원으로 선임

주3) 사외이사 이재은, 사외이사 박영규 위험관리위원회 위원으로 선임

(2-6) 제29기 제6차 정기 이사회

2024년 5월 14일 오후 4:00 [안건통지일: 2024년 5월 7일]

항목	이사별 활동내역						가결 여부
1. 이사 성명	조재민	이재은	박영규	조성부	신선경	고유선	-
2. 참석여부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
3. 보고안건							
1. 2024년 1분기 실적 보고 2. 감사업무 보고 3.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 개최내역 보고 5.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위원회 회의결과 보고 6. 보수위원회 심의 및 결의내역 보고 7. 감사위원회 심의 및 결의내역 보고 8. 위험관리위원회 심의 및 결의내역 보고 9. 2024년 1분기 고객 정보의 제공 및 이용에 관한 보고							
4. 결의안건							

제1호 계열사간 거래 승인의 건 - 신한EZ손 해보험 보험계약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	----	----	----	----	----	----	----

(2-7) 제29기 제7차 정기 이사회

2024년 7월 24일 오후 3:30 [안건통지일: 2024년 7월 18일]

항목	이사별 활동내역						가결 여부
1. 이사 성명	조재민	이재은	박영규	조성부	신선경	고유선	-
2. 참석여부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
3. 보고안건							
1. 2024년 상반기 실적 보고 2. 신기술사업투자조합 공동 운용(GP) 업무 추진 보고 3. 감사업무 보고 4.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 개최내역 보고 5.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위원회 회의결과 보고 6.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승인위원회 결과 보고 7. 감사위원회 심의 및 결의내역 보고 8. 위험관리위원회 심의 및 결의내역 보고 9. 2024년 2분기 고객 정보의 제공 및 이용에 관한 보고							
4. 결의안건							
제1호 조성부 이사 겸직 승인의 건	찬성	찬성	찬성	- 주)	찬성	찬성	가결

주) 본인 심의 의결권 제한

(2-8) 제29기 제8차 정기 이사회

2024년 11월 19일 오후 4:00 [안건통지일: 2024년 11월 14일]

항목	이사별 활동내역						가결 여부
1. 이사 성명	조재민	이재은	박영규	조성부	신선경	고유선	-
2. 참석여부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
3. 보고안건							

1. 2024년 3분기 실적 보고 2. 유동화전문회사의 수탁업무 추진 보고 3. 감사업무 보고 4.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 개최내역 보고 5.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위원회 회의결과 보고 6. 그룹 자회사 경영승계계획 및 육성후보군 보고 7. 사외이사 후보군 관리내역 보고 8. 감사위원회 심의 및 결의내역 보고 9. 위험관리위원회 심의 및 결의내역 보고 10. 2024년 3분기 고객 정보의 제공 및 이용에 관한 보고							
4. 결의안건							
제1호 고객 정보의 제공 및 이용에 관한 지침 개정 건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2-9) 제29기 제9차 임시 이사회

2024년 12월 19일 오전 10:40 [안건통지일: 2024년 12월 13일]

항목	이사별 활동내역						가결 여부
1. 이사 성명	조재민	이재은	박영규	조성부	신선경	고유선	-
2. 참석여부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
3. 보고안건							
1. 소송현황 보고 2. 자금세탁방지 활동 보고 3. 감사업무 보고 4. 사외이사 후보군 관리 내역 보고 5. 감사위원회 심의 및 결의내역 보고 6. 위험관리위원회 심의 및 결의내역 보고 7.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심의 및 결의내역 보고							
4. 결의안건							
제1호 2025년 경영계획(안) 승인의 건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제2호 2024년 계열사간 거래 계획(안) 승인 의 건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제3호 정관 개정의 건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제4호 지배구조 내부규범 개정의 건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제5호 이사회규정 개정의 건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제6호 경영진운영규정 개정의 건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제7호 내부통제기준 개정의 건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제8호 내부통제위원회규정 제정의 건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제9호 내부회계관리규정 개정의 건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제10호 제29기 임시 주주총회 의안 상정의 건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제11호 제29기 임시 주주총회 의안 상정의 건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2-10) 제29기 제10차 임시 이사회

2024년 12월 19일 오전 11:40 [안건통지일: 2024년 12월 13일]

항목	이사별 활동내역						가결 여부
1. 이사 성명	조재민	이재은	박영규	조성부	신선경	고유선	-
2. 참석여부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
3. 보고안건							
1. 이사 아닌 경영진 선임 보고 ^{주1)}							
4. 결의안건							
제1호 이사회 의장 선임의 건 ^{주2)}	- 주)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제2호 보수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주3)}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 주)	가결
제3호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주4)}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 주)	가결

제4호 내부통제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주5)}	찬성	찬성	찬성	- 주)	- 주)	- 주)	가결
제5호 위험관리책임자 임면의 건 ^{주6)}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제6호 위험관리책임자 선임의 건 ^{주7)}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제7호 주요업무집행책임자 선임의 건 ^{주8)}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주) 본인 심의 의결권 제한

주1) 하대승 부사장 재선임, 김충선 전무 재선임, 윤재원 전무 신규 선임, 이호준 전무 신규 선임

주2) 대표이사 조재민 이사회 의장으로 재선임

주3) 기타비상무이사 고유선 보수위원회 위원으로 재선임

주4) 기타비상무이사 고유선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위원으로 재선임

주5) 신설된 내부통제위원회 위원으로 사외이사 신선경, 사외이사 조성부, 기타비상무이사 고유선 선임

주6) 조영식 위험관리책임자 사임

주7) 이영한 위험관리책임자 신규 선임

주8) 전략기획 및 재무관리 담당 주요업무집행책임자로 이성환 전무 선임

라. 이사회 및 이사에 대한 직무평가

(1) 이사회 평가

이사회는 당사 지배구조 내부규범 제8조(이사회 운영실적 등의 평가)에 의거 연1회 이사회 운영과 관련하여 결의 및 보고안건의 적정성, 경영정보의 제공수준, 이사회의 역할 등에 대하여 평가하고, 그 결과를 이사회 운영에 참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 평가항목에는 이사회 개최 빈도의 적정성, 회의시간의 적정성, 안건의 범위와 깊이의 적정성, 당 금융회사로부터 충분한 정보수령 여부 등이 포함되며, 이 평가는 외부업체에 위탁하여 실시합니다.

당사는 이사회 및 이사회내위원회 평가제도 도입을 2016년 12월 제21기 제10차 정기이사회에서 승인하여 외부업체에 위탁 수행하고 있습니다. 2024년도에 대한 평가는 2025년 1월에 위탁하여 수행하였습니다. 평가는 이사회 위원 전원의 온라인 자기기입식 설문조사

를 통해 이루어지고, 동 평가결과에서 도출된 개선사항은 이사회 운영에 반영하며 참고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2) 이사에 대한 직무평가 기준

이사에 대한 직무평가는 이사회 및 이사회내 각 위원회가 당사의 주요 의사결정기구 및 경영진 견제기구로서 제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를 위해 당사는 매년 초 정기 주주총회일 전까지 사외이사에 대한 평가를 실시합니다.

다면평가 방식의 사외이사 평가는 전문성, 직무공정성, 윤리책임성, 충실성을 평가지표로 외부업체에 위탁하여 실시하며, 그 결과는 사외이사 재선임시 참고자료로 활용되고 공시되며 주주총회에 보고됩니다. 평가등급은 5 등급으로 분류하여 차등 배점하고 있습니다. 사외이사에 대한 평가기준은 본 연차보고서 4. 사외이사 활동·보수 등 - 바. 사외이사 평가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 사외이사가 아닌 이사회 의장 선임 사유

당사는 이사회의 원활한 운영과 법령·내규에서 요구하는 역할과 책임을 적절하게 수행하기 위해 매년 사외이사 중에서 이사회 의장을 선임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이사회 결정으로 이사회 구성원 중 사외이사가 아닌 자로 이사회 의장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률에 의해 사외이사 중 선임사외이사를 선임하여 사외이사 전원으로 구성되는 사외이사 회의의 소집 및 주재, 사외이사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한 지원, 사외이사의 책임성 제고를 위한 지원 업무를 수행합니다.

2023년 12월 26일 개최된 제28기 제10차 임시 이사회는 이사회 의장으로 조재민 대표이사를 재선임하였습니다. 이는 그간 당사가 이사회의 소집, 회의진행 및 안건 상정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대표이사를 이사회 의장으로 선임하였으므로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결정한 것입니다.

사외이사가 아닌 자를 이사회 의장으로 선임함에 따라 당사는 선임사외이사를 선임하고 있습니다. 2023 년 3 월 22 일 개최된 제 28 기 제 4 차 임시 이사회에서 조세훈 사외이사를 선임사외이사로 선임하였으며, 조세훈 선임사외이사의 임기 만료에 따라 2024 년 3 월 28 일 개최된 제 29 기 제 5 차 임시 이사회에서 이재은 사외이사를 선임사외이사로 선임하였습니다.

3. 임원후보추천위원회

가. 역할(권한과 책임)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이사회를 지원하여 대표이사,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 후보를 추천하기 위하여 이사회내위원회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임원후보추천위원회의 권한에 대해 지배구조 내부규범 제 11 조 및 동 위원회 규정 제 5 조에 서술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금융업에 대한 전문성과 미래에 대한 통찰력, 조직을 이끌어갈 수 있는 리더십을 겸비한 역량있는 대표이사, 독립적이면서 당사의 전략적 목표에 부합하는 역량과 전문성, 식견 및 독립성을 갖춘 사외이사, 이사 및 경영진의 업무를 독립적으로 감독하고 내부통제, 재무활동 등 감사업무 전반을 통제할 수 있는 전문성과 역량이 풍부한 감사위원을 추천하기 위해 3인 이상 5인 이내의 이사로 동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으며, 총 위원의 과반수는 사외이사로 정하여 상시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4년도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총 2 회의 회의를 개최하여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 후보를 주주총회에 추천하였으며, 사외이사 후보군에 대한 관리 내역을 결의하였습니다.

(1) 대표이사 후보 추천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신한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경영관리위원회에서 추천한 최고경영자 대표이사 후보에 대하여 관계 법규와 지배구조 내부규범에서 정한 자격기준 적합여부를 검토하여 주주총회에 추천합니다.

(2) 감사위원 후보 추천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감사위원 후보에 대하여 관계 법규에서 정한 자격기준 적합여부를 검토하여 주주총회에 추천합니다.

(3) 사외이사 후보 추천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사외이사 후보에 대하여 회사 및 주주 등의 이익에 부합하는 사람을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에 따라 주주총회에 추천합니다.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지배구조 내부규범 제 3 조에 명시한 이사회 구성의 다양성 원칙 아래 관계 법규 또는 내규상 적극적 자격요건과 소극적 자격요건에 부합하고, 당사에 적합한 전문성과 식견 및 독립성을 갖춘 사외이사를 추천하고 있으며, 상시적으로 사외이사 후보군을 발굴·관리하고 있습니다.

전문 분야별(금융, 경영, 경제, 법률, 회계, 소비자보호, 정보기술) 후보군을 관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개인정보보호법 준수 범위 내 취득 가능한 공개정보의 모니터링을 통해 후보군의 소극적 자격요건 여부, 직무공정성, 윤리책임성, 충실성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배구조 내부규범 제 18 조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이사회가 전문성에서 특정한 공통의 배경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직업군 등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등 전문성과 직업군에서 편중되지 않도록 다양한 추천경로(주주, 이해관계자, 외부자문기관, 지원부서 등)를 활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나. 구성

당사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2024 년말 기준 위원장을 포함하여 총 3 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원회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사외이사 2 명과 기타비상무이사 1 명을 위원으로 선임하였으며, 사외이사인 위원 중 1 인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였습니다.

2023 년 12 월 26 일 개최된 제 28 기 제 10 차 임시 이사회는 고유선 기타비상무이사를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위원으로 신규 선임하였으며, 2024 년 3 월 28 일 개최된 제 29 기 제 5 차 임시 이사회는 조성부 사외이사, 신선경 사외이사를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였습니다.

2024 년 중 재임하였던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위원은 다음과 같습니다.

<임원후보추천위원회 구성 (2024 년말 기준)>

성 명	상임/사외/비상임	직위 등	선임일 (최초선임일/횟수)	임기만료일
조성부	사외	위원장	2024.03.28 (2022.02.23/2회)	25년 개최 정기주총
신선경	사외	위원	2024.03.28 (2024.03.28/1회)	26년 개최 정기주총
고유선	비상임	위원	2024.01.01 (2024.01.01/1회)	2025.12.31
이재은	사외	위원	2023.03.22 (2021.01.15/3회)	2024.03.28

다. 선임 기준

(1) 후보 자격요건

당사는 장기 비전을 공유하고 주주와 이해관계자의 이익에 부합하는 임원(대표이사, 사외 이사, 감사위원) 선임을 위하여 임원 후보의 자격요건에 관해 지배구조 내부규범과 정관에 규정으로 마련하고 있습니다. 임원 후보자들은 관련법령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하며 당사에서 정한 자격기준에도 부합하여야 합니다.

(가) 대표이사 후보 자격요건

본 연차보고서 5. 대표이사 경영승계 - 나. 대표이사 후보자 추천 및 경영승계 절차 - (1) 일반 - ① 대표이사 자격요건 참조

(나) 감사위원 후보 자격요건

감사위원은 지배구조법 제 5 조 및 동법 시행령 제 7 조가 정하는 임원의 자격에 관한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감사위원 중 1 명은 지배구조법 제 19 조 및 시행령 제 16 조에 따른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이어야 합니다.

(다) 사외이사 후보 자격요건

사외이사는 지배구조법 제 5 조 및 동법 시행령 제 7 조가 정하는 임원의 자격에 관한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더불어, 지배구조법 제 6 조 및 동법 시행령 제 8 조가 정하는 사외이사의 자격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2) 후보 추천 절차

당사는 금융회사의 장기 비전을 공유하고 주주와 이해관계자의 이익에 부합하는 임원선임을 위하여 임원후보 추천과 관련한 절차를 정관 및 이사회규정, 지배구조 내부규범에 정하고 있습니다.

(가) 대표이사 후보 추천 절차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임원후보추천위원회규정 제 6 조에 의거하여 신한금융지주회사 자회사최고경영자후보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최고경영자 대표이사 후보에 대하여 관계 법규와 지배구조 내부규범에서 정한 자격기준 적합여부를 검토하여 주주총회에 추천합니다.

(나) 감사위원 후보 추천 절차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감사위원회 업무의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감사위원 후보를 추천하고 있으며, 감사위원 후보 추천은 총 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합니다.

(다) 사외이사 후보 추천 절차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임원후보추천위원회규정 제 7 조에 의거하여 사외이사 후보를 주주총회에 추천합니다.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회사 및 주주 등의 이익에 부합하는 자를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에 따라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합니다. 또한, 후보자가 관련 법령 및 지배구조 내부규범에서 정하는 자격요건을 충족하는지를 공정하게 검증한 후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합니다.

위원회는 사외이사의 재선임을 위해 후보를 추천하는 경우에는 후보추천서에 사외이사 평가결과 및 위원회의 검토보고서를 첨부하며, 사외이사 평가 결과 해당 사외이사의 업무수행 능력이 우수하다는 점이 입증되는지 검토합니다.

위원회는 사외이사 후보 추천을 위한 사외이사 후보군 발굴시 주주, 이해관계자 및 외부 자문기관 등 회사 외부로부터의 추천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3) 임원 업무수행 평가 방식

당사 지배구조 내부규범 제 24 조는 이사에 대한 평가 및 결과 활용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외이사의 평가결과는 연임시 판단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사내이사의 경영성과 등의 평가는 보수위원회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가) 대표이사 업무수행 평가 방식

대표이사에 대한 평가는 신한금융지주회사 보수위원회에서 심의·조정한 내용을 당사 보수위원회에서 확정합니다. 대표이사에 대한 평가는 계량적인 평가 외에 정성적인 평가를 병행하며, 신한금융지주회사 등 상위조직 단위의 업무성과와 연동하여 평가할 수 있습니다.

(나) 상근감사위원 업무수행 평가 방식

상근감사위원의 평가목표 설정 및 평가는 감사위원회의 결의로 확정합니다.

(다) 사외이사 업무수행 평가 방식

당사는 지배구조 내부규범 제 24 조에 따라 사외이사에 대한 평가를 실시합니다. 다면평가 방식의 사외이사 평가는 전문성, 직무공정성, 윤리책임성, 충실성을 평가지표로 외부업체에 위탁하여 연 1 회 실시하며, 그 결과는 사외이사 재선임시 참고자료로 활용되고 공시되며 주주총회에 보고됩니다. 평가등급은 5 등급으로 분류하여 차등 배점하고 있습니다.

라. 활동내역 및 평가

(1) 활동내역 개요

2024 년중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총 2 회의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기간 중 부의된 결의안건 7 개 모두 가결되었습니다.

(2) 회의 개최내역

(가) 제29기 제1차 임원후보추천위원회

2024년 2월 27일 오후 3:55 [안건통지일: 2024년 2월 23일]

항목	이사별 활동내역			가결여부
1. 이사 성명	이재은	조성부	고유선	-
2. 참석여부	참석	참석	참석	-
3. 보고안건				
1. 사외이사 후보자 자격요건 검토 보고서				
4. 결의안건				
제1-1호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후보 추천의 건 - 이재은 추천의 건	-주)	찬성	참석	가결
제1-2호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후보 추천의 건 - 박영규 추천의 건	찬성	찬성	참석	가결
제1-3호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후보 추천의 건 - 조성부 추천의 건	찬성	-주)	참석	가결
제2호 사외이사 후보 추천의 건 ^{주1)}	찬성	찬성	참석	가결
제3호 사외이사 후보군 관리내역 결의의 건	찬성	찬성	참석	가결

주) 본인 심의 의결권 제한

주1) 사외이사 후보 신선경 추천

(나) 제29기 제2차 임원후보추천위원회

2024년 11월 19일 오후 3:50 [안건통지일: 2024년 11월 15일]

항목	이사별 활동내역			가결여부
1. 이사 성명	조성부	신선경	고유선	-
2. 참석여부	참석	참석	참석	-
3. 보고안건				
-				
4. 결의안건				

제1호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주1)}	-주)	찬성	찬성	가결
제2호 사외이사 후보군 관리내역 결의의 건	찬성	찬성	찬성	가결

주) 본인 심의 의결권 제한

주1) 조정부 사외이사 위원장으로 선임

(3) 평가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지배구조 내부규범 제9조(이사회내 위원회) 제4항에 의거 연1회 이사회내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결의 및 보고 안건의 적정성, 경영정보의 제공수준, 이사회내위원회의 역할 등에 대하여 평가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 운영에 참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24년도 이사회 및 이사회내위원회에 대한 평가를 2025년 1월에 외부업체에 위탁하여 실시하였습니다. 평가 등급은 5등급으로 구분되며, 2024년도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동 평가에서 5등급(매우 적정)을 받았습니다. 구체적 평가항목에는 임원후보추천위원회 회의 시간의 적정성, 안건의 범위 및 깊이의 적정성, 직무수행의 충실성이 포함됩니다.

마. 임원 후보 추천 관련사항

(1) 대표이사 후보

2024년에는 대표이사 후보 추천을 하지 않았습니다.

(2) 감사위원 후보

(가) 후보자 인적사항

가. 이재은 : 아래 (3) 사외이사 후보 항목 참조

나. 박영규 : 아래 (3) 사외이사 후보 항목 참조

다. 조성부 : 아래 (3) 사외이사 후보 항목 참조

(나) 후보제안자

(1) 후보제안자 인적사항

성명	직위	학력	경력
이재은	사외이사/ 임원후보추천 위원회 위원장	- 대전고등학교 - 고려대 경영학과 - 서울대학교대학원 경영학과 - 고려대학교대학원 경영학과	- 홍익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2) 후보자와의 관계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위원장인 이재은 후보제안자는 주주인 신한금융지주회사로부터 후보자 추천을 받았습니다.

(다) 후보자 추천 사유

(1) 후보제안자 추천이유

이재은 후보자는 홍익대학교 교수로 재직하고 있으며, 2021년 1월부터 당사의 감사위원회 위원 및 사외이사로 재직 중입니다. 동 후보자는 30년 이상의 경력을 지닌 회계 분야 전문가로 실무경력 및 전문지식을 충분히 활용하여 당사의 신뢰도 및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감사위원회 위원 후보로 재추천하였습니다.

박영규 후보자는 성균관대학교 교수로 재직하고 있으며, 2021년 1월부터 당사의 감사위원회 위원 및 사외이사로 재직 중입니다. 동 후보자는 30년 이상의 경력을 지닌 금융 및 경영 분야 전문가로 실무경력과 전문지식을 충분히 활용하여 당사의 신뢰도 및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감사위원회 위원 후보로 재추천하였습니다.

조성부 후보자는 연합뉴스·연합뉴스TV 대표이사를 역임한 경영 분야 전문가로 2022년 3월부터 당사의 사외이사로 재직 중입니다. 실무경력과 전문지식을 충분히 활용하여 당사의 신뢰도 및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감사위원회 후보로 추천하였습니다.

(2) 후보자 추천경로

이재은, 박영규, 조성부 후보자는 주주인 신한금융지주회사가 자회사 경영관리를 위해 추천하였으며, 2024년 2월 27일 개최된 제29기 제1차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서 감사위원회 위원 후보로 추천되었습니다.

(라) 자격충족 여부 및 근거

(1) 소극적 요건

소극적 요건	충족여부	충족이유
지배구조법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충족	결격사유 없음
지배구조법 제1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	충족	결격사유 없음

(2) 금융회사가 정한 자격요건

당사 감사위원으로서의 자격요건은 전문성, 직무공정성, 윤리책임성, 충실성을 갖춘 자입니다. 위 감사위원 후보자는 전문지식과 실무경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당사가 정한 자격요건에도 적합하였습니다.

(3) 본인 소명

감사위원 후보자에 대해서 이력서, 임원선임심사표 등을 받아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사항 없음을 확인했습니다.

(마) 임원후보추천위원회 검토 및 의결 결과

이재은, 박영규, 조성부 후보자에 대한 감사위원회 위원 후보 추천을 위해 2024년 2월 27일 제29기 제1차 임원후보추천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위원회에서는 해당 후보의 자격요건을 검증하고 관련 법규 등에서 정하는 소극적 요건에 대한 결격사유가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후보자가 제출한 자료 및 위원회가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당사에서 정하는 감사위원회 위원 자격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심사하고 심도 있는 논의를 하였습니다.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후보자의 전문지식과 실무경험 등이 당사의 신뢰 제고와 경영 합리화에 기여하는 바가 클 것으로 판단하여 후보자를 감

사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할 것을 결의했습니다.

박영규 후보자 추천에 대한 안건은 재적위원 3명 중 3명 출석 및 3명의 찬성으로 가결되었습니다. 이재은, 조성부 후보자 추천에 대한 안건은 재적위원 3명 중 3명 출석 및 본인 심의로 의결권이 제한된 이재은 위원장, 조성부 위원을 제외한 1명의 찬성으로 가결되었습니다.

(3) 사외이사 후보

(가) 후보자 인적사항

가. 이재은

- (1) 성명: 이재은
- (2) 출생연도 : 1959년
- (3) 출신학교 : 대전고등학교, 고려대학교 경영학과,
서울대학교 대학원 경영학과, 고려대학교 대학원 경영학과
- (4) 경력 : 삼일회계법인 (1984~2010)
 - 삼일회계법인 회계감사 파트너 (1997~2010)
 - 삼일회계법인 회계감사심리실장 (2004~2007)
 - 미국 PricewaterhouseCoopers(PwC) 회계법인 San Francisco office 근무 (1988~1990)
 - 홍익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2010~현재)
 - 한국공인회계사회 회계감사기준위원회 위원 (2011~2015)
 - 금융감독원 금융투자업인가 외부평가위원회 위원 (2011~2016)
 - 관세청 법인심사대상선정심의위원회 위원 (2014~2016)
 - 한국회계학회 연구윤리분과 위원장 (2019~2020)
 - 한국공인회계사회 위탁감리위원회 위원 (2019~2024)
 - 한국공인회계사회 표준감사시간위원회 위원장 (2021~2024)
 - 한국상장회사협의회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위원회 위원장 (2018~현재)
 - 증권선물위원회 회계제도심의위원회 위원 (2018~2021)
- (5) 사외이사 경력 : 삼성에스디에스 사외이사 겸 감사위원 (2014~2020)

폭스바겐파이낸셜 사외이사 겸 감사위원 (2016~2017)

신한자산운용 사외이사 겸 감사위원 (2021 ~ 현재)

나. 박영규

(1) 성명: 박영규

(2) 출생연도 : 1963년

(3) 출신학교 : 미네소타대학교 통계학과(학사), 컬럼비아대학교 경영학과(석사),
조지워싱턴대학교 경영학과(박사)

(4) 경력 : 쌍용투자증권 연구원 (1988~1990)

삼성금융연구소 선임연구원 (1993~1995)

중앙대학교 조교수 (1995~2002)

성균관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2002~현재)

(5) 사외이사 경력 : 신한자산운용 사외이사 겸 감사위원 (2021~현재)

다. 조성부

(1) 성명: 조성부

(2) 출생연도 : 1956년

(3) 출신학교 : 전주고등학교, 고려대학교 신문방송학과

(4) 경력 : 한국기자협회 회장 (1998 ~ 1999)

연합뉴스 편집국 경제부장 (2000 ~ 2002)

연합뉴스 방콕특파원 (2003 ~ 2006)

연합뉴스 광주·전남 취재본부장 (2007 ~ 2009)

연합뉴스 논설위원·논설주간·논설고문 (2009 ~ 2014)

뉴스통신진흥회 이사 (2014 ~ 2017)

연합뉴스·연합뉴스TV 대표이사 사장, 연합인포맥스 회장 (2018 ~ 2021)

(5) 사외이사 경력 : 우리종합금융(주) 사외이사 (2022 ~ 현재)

신한자산운용 사외이사 (2022 ~ 현재)

라. 신선경

(1) 성명: 신선경

(2) 출생연도 : 1974년

(3) 출신학교 : 여의도여자고등학교, 서울대학교 사법학과,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수료, Stanford Law School(법학석사-LL.M)

(4) 경력 : 법무법인 세종 금융파트 파트너 변호사 (2001~2016)

미국 ClearyGottliebSteen&Hamilton Associate 변호사(2007~2009)

법무법인 리우 자문파트 파트너 변호사 (2016~현재)

기획재정부 고문변호사 (2014~2019)

공인중재인협회(Chartered Institute of Arbitrators) 정회원 (2014~현재)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 (2015~2019)

조달청 과징금부과심의위원회 민간위원 (2017~2020)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전문위원 (2017~2022)

예금보험공사 자문위원 (2017~2022)

한국금융법학회 국제이사 (2020~현재)

서울지방변호사회 중대재해처벌법대응 TF 자문위원 (2022~현재)

서울시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2022~현재)

MBC 인사위원회 위원 (2022~현재)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 위원 (2022~2024)

(5) 사외이사 경력 : 주식회사 부루구루 사외이사 (2023~현재)

주식회사 카카오 사외이사 (2023~2024)

신한자산운용 사외이사 (2024 ~ 현재)

(나) 후보 제안자

(1) 인적사항

성명	직위	학력	경력
이재은	사외이사/ 임원후보추천 위원회 위원장	- 대전고등학교 - 고려대 경영학과 - 서울대학교대학원 경영학과 - 고려대학교대학원 경영학과	- 홍익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2) 후보자와의 관계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위원장인 이재은 후보제안자는 주주인 신한금융지주회사로부터 후보

자 추천을 받았으며, 동 후보자와 다른 특수관계는 없습니다.

(다) 후보자 추천 사유

(1) 후보제안자 추천이유

이재은 후보자는 홍익대학교 교수로 재직하고 있으며, 2021년 1월부터 당사의 감사위원회 위원 및 사외이사로 재직 중입니다. 동 후보자는 30년 이상의 경력을 지닌 회계 분야 전문가로 실무경력 및 전문지식을 충분히 활용하여 당사의 신뢰도 및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사외이사 후보로 재추천하였습니다.

박영규 후보자는 성균관대학교 교수로 재직하고 있으며, 2021년 1월부터 당사의 감사위원회 위원 및 사외이사로 재직 중입니다. 동 후보자는 30년 이상의 경력을 지닌 금융 및 경영 분야 전문가로 실무경력과 전문지식을 충분히 활용하여 당사의 신뢰도 및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사외이사 후보로 재추천하였습니다.

조성부 후보자는 연합뉴스·연합뉴스TV 대표이사를 역임한 경영 분야 전문가로 2022년 3월부터 당사의 사외이사로 재직 중입니다. 실무경력과 전문지식을 충분히 활용하여 당사의 신뢰도 및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사외이사 후보로 재추천하였습니다.

신선경 후보자는 법무법인 리우에서 파트너 변호사로 재직하고 있으며, 법무법인 세종 금융파트 파트너 변호사 및 기획재정부 고문변호사 등을 역임한 25년 이상의 경력을 지닌 법률 전문가입니다. 실무경력과 전문지식을 충분히 활용하여 당사의 신뢰도 및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하였습니다.

(2) 후보자 추천경로

이재은, 박영규, 조성부, 신선경 후보자는 주주인 신한금융지주회사가 자회사 경영관리를 위해 추천하였으며, 2024년 2월 27일 개최된 제29기 제1차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서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되었습니다.

(라) 금융회사등과 관계

(1) 금융회사 및 계열회사와의 관계

이재은, 박영규, 조성부, 신선경 후보자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2) 대주주와의 관계

이재은, 박영규, 조성부, 신선경 후보자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당사의 최대주주인 신한금융지주회사와 특수관계 없음)

(3) 임원과의 관계

이재은, 박영규, 조성부, 신선경 후보자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당사 및 계열회사 임원과 특수관계 없음)

(마) 자격충족 여부 및 근거

후보자는 당사 사외이사 후보로 관련 법령에서 정한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합니다.

(1) 소극적 요건

소극적 요건		충족여부	충족이유
지배구조법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임원의 자격요건	충족	결격사유 없음
지배구조법 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	사외이사의 자격요건	충족	결격사유 없음

(2) 금융회사가 정한 자격요건

당사는 법령에서 정한 사외이사 자격요건의 충족은 물론 지배구조 내부규범 제17조 이사의 자격요건인 전문성, 직무공정성, 윤리성 및 책임성, 충실성 등을 고려하여 금융, 경제, 경영, 법률, 회계, 소비자보호, 정보기술 등 관련분야에 전문지식이나 실무적 경험을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사외이사를 선임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3) 적극적 자격 충족여부

㉞ 전문성

당사의 지배구조 내부규범 제17조는 이사의 자격요건으로서 금융, 경제, 경영, 회계, 법률, 소비자보호, 정보기술 등 금융회사의 금융업 영위와 관련된 분야에 관한 충분한 실무경험이나 전문지식을 보유할 것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재은 후보자는 현 홍익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로 공인회계사, 세무사, 미국 공인회계사 자격증을 보유한 회계전문가로 전문성 요건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박영규 후보자는 경영학 박사로서 금융회사 실무경력을 보유한 현 성균관대학교 경영학과 교수입니다. 동 후보자는 금융 및 경영 전문가로서의 전문성 요건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조성부 후보자는 연합뉴스·연합뉴스TV 대표이사, 연합뉴스포맥스 회장을 역임한 경영전문가로 전문성 요건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신선경 후보자는 현 법무법인 리우 파트너 변호사로, 법무법인 세종 파트너 변호사 및 기획재정부 고문변호사를 역임한 법률전문가로 전문성 요건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㉞ 직무공정성

당사의 지배구조 내부규범 제17조는 이사의 자격요건으로서 특정한 이해관계에 얽매이지 않고 전체 주주 및 금융소비자의 이익을 위하여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를 정하고 있습니다.

이재은, 박영규, 조성부, 신선경 후보자는 당사와 신한금융지주회사 계열회사에 관련된 거래관계가 없으며 사외이사 선임 후 전체 주주 및 금융소비자의 이익 모두를 고려하여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㉟ 윤리성, 책임성

당사의 지배구조 내부규범 제17조는 이사의 자격요건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한 윤리의식과 책임성을 보유할 것을 정하고 있습니다. 후보자들은 윤리의식이 투철하며 이사회 등의 의안을 사전에 충실히 검토하고 활발히 의견을 개진하여 당사, 주주 및 금융소비자 등 이해관계자에게 장기적으로 이익이 되는 의사결정을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㊱ 충실성

당사의 지배구조 내부규범 제17조는 이사의 자격요건으로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는데 필요한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할애할 것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재은, 박영규, 조성부, 신선경 후보자는 활동 내역, 경력 등을 비추어 보았을 때 당사의 사외이사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할애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4) 본인 소명

후보자들은 소극적 요건에 해당없음을 확인하는 임원선임심사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으며, 이 외에도 이력서, 경력증명서 등을 당사에 제출하였습니다. 당사는 후보자의 신원조회를 의뢰하여 관계기관으로부터 특이사항 없음을 회신받았습니다.

(바) 임원후보추천위원회 검토 및 의결결과

후보자들에 대한 사외이사 후보 추천을 위해 2024년 2월 27일 제29기 제1차 임원후보추천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위원회에서는 해당 후보의 자격요건을 검증하고 관련 법규 등에서 정하는 소극적 요건에 대한 결격사유가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후보자가 제출한 자료 및 위원회가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당사에서 정하는 사외이사의 자격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심사하고 심도 있는 논의를 하였습니다.

사외이사 후보 추천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동의로 결의됩니다. 박영규, 신선경 후보 추천의 건은 재적위원 3명 중 3명 출석 및 3명의 찬성으로 가결되었습니다. 이재은, 조성부 후보 추천의 건은 재적위원 3명 중 3명 출석 및 본인 심의 의결권 제한된 이재은 위원장, 조성부 위원을 제외한 1명의 찬성으로 가결되었습니다.

(4) 사외이사 재임여부 및 평가결과

제28기 정기 주주총회일(2024.03.28) 기준 임기 만료가 도래한 사외이사는 총 4명으로, 4명 중 3명의 사외이사가 연임하였으며, 사외이사 평가 결과 연임한 사외이사는 사외이사로서 적합한 것으로 평가받았습니다.

사외이사명	재임기간	연임여부	이사회 등 출석률	평가 여부
이재은	2023.03.22 ~2024.03.28	연임	100%	우수(적합)
박영규	2023.03.22 ~2024.03.28	연임	100%	우수(적합)

조성부	2022.03.23 ~2024.03.28	연임	100%	우수(적합)
-----	------------------------	----	------	--------

※ 출석률은 FY2024년 기준

(5) 자격요건 검토보고서

자격요건 검토보고서 - 사외이사 후보 이재은 2024년 2월 27일 개최한 제29기 제1차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서 후보 추천 결의에 앞서 '사외이사 후보자 자격요건 검토'에 관한 사항이 보고되었으며, 이에 따라 이재은 후보자에 대한 사외이사 후보자 자격요건 검토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후보자가 관련 법령 등에서 정하는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함을 확인하였고, 후보자가 제출한 자료,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지원부서에서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후보자가 당사에서 정하는 사외이사 자격기준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여부를 항목별로 세밀하게 확인하였습니다. 이재은 후보자는 당사의 사외이사로서 직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성, 직무공정성, 윤리책임성, 충실성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으며, 사외이사 후보로서 우수한 자질과 능력을 갖춘 것으로 판단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별첨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별첨: 사외이사 후보자 자격요건 검토보고서
--

자격요건 검토보고서 - 사외이사 후보 박영규 2024년 2월 27일 개최한 제29기 제1차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서 후보 추천 결의에 앞서 '사외이사 후보자 자격요건 검토'에 관한 사항이 보고되었으며, 이에 따라 박영규 후보자에 대한 사외이사 후보자 자격요건 검토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후보자가 관련 법령 등에서 정하는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함을 확인하였고, 후보자가 제출한 자료,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지원부서에서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후보자가 당사에서 정하는 사외이사 자격기준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여부를 항목별로 세밀하게 확인하였습니다. 박영규 후보자는 당사의 사외이사로서 직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성, 직무공정성, 윤리책임성, 충실성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으며, 사외이사 후보로서 우수한 자질과 능력을 갖춘 것으로 판단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별첨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별첨: 사외이사 후보자 자격요건 검토보고서

자격요건 검토보고서 - 사외이사 후보 조성부

2024년 2월 27일 개최한 제29기 제1차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서 후보 추천 결의에 앞서 '사외이사 후보자 자격요건 검토'에 관한 사항이 보고되었으며, 이에 따라 조성부 후보자에 대한 사외이사 후보자 자격요건 검토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후보자가 관련 법령 등에서 정하는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함을 확인하였고, 후보자가 제출한 자료,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지원부서에서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후보자가 당사에서 정하는 사외이사 자격기준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여부를 항목별로 세밀하게 확인하였습니다.

조성부 후보자는 당사의 사외이사로서 직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성, 직무공정성, 윤리 책임성, 충실성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으며, 사외이사 후보로서 우수한 자질과 능력을 갖춘 것으로 판단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별첨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별첨: 사외이사 후보자 자격요건 검토보고서

자격요건 검토보고서 - 사외이사 후보 신선경

2024년 2월 27일 개최한 제29기 제1차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서 후보 추천 결의에 앞서 '사외이사 후보자 자격요건 검토'에 관한 사항이 보고되었으며, 이에 따라 신선경 후보자에 대한 사외이사 후보자 자격요건 검토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후보자가 관련 법령 등에서 정하는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함을 확인하였고, 후보자가 제출한 자료,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지원부서에서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후보자가 당사에서 정하는 사외이사 자격기준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여부를 항목별로 세밀하게 확인하였습니다.

신선경 후보자는 당사의 사외이사로서 직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성, 직무공정성, 윤리 책임성, 충실성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으며, 사외이사 후보로서 우수한 자질과 능력을 갖춘 것으로 판단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별첨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별첨: 사외이사 후보자 자격요건 검토보고서

(6) 사외이사 후보군 관리현황

(가) 사외이사 후보군 관리 개요

당사는 주주, 임원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사외이사 후보를 추천받고 있으며, 추천된 후보군 중 관계 법령 및 내부 규정에 의거하여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사외이사 후보 추천자를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서 최종 승인하여 주주총회 의안으로 부의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 지배구조 내부규범에 의거하여 사외이사 후보군 관리 내역에 관한 사항을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의결을 거쳐 이사회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나) 후보군 관리 활동내역

당사는 독립적이고 전문성이 높은 사외이사 후보를 추천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사외이사 후보 추천 시에는 소극적, 적극적 자격요건을 사전에 철저히 검증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전문성을 가진 사외이사 후보군 관리를 위하여 주주, 지원부서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추천을 받고 있습니다.

2024년말 후보군은 금융전문가 6명, 경제전문가 5명, 경영전문가 6명, 회계전문가 5명, 법률전문가 6명, 소비자보호 전문가 4명, 정보기술 전문가 3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 후보군 현황

- 1차 결의일자: 2024년 2월 27일 제29기 제1차 임원후보추천위원회

분야	후보군 수	백분율	비고
금융	6	17.1%	-
경제	5	14.3%	-
경영	6	17.1%	-
회계	5	14.3%	-
법률	6	17.1%	-
소비자보호	4	11.4%	-
정보기술	3	8.6%	-
합계	35	100%	-

※동일인이 복수의 분야에서 전문성을 지니고 있는 경우 대표 분야만 계산(이하 동일)

추천경로	후보군 수	백분율	비고
주주	4	11.4%	-
외부자문기관	31	88.6%	-
합계	35	100%	-

- 2차 결의일자: 2024년 11월 19일 제29기 제2차 임원후보추천위원회

분야	후보군 수	백분율	비고
금융	6	17.1%	-
경제	5	14.3%	-
경영	6	17.1%	-
회계	5	14.3%	-
법률	6	17.1%	-
소비자보호	4	11.4%	-
정보기술	3	8.6%	-
합계	35	100%	-

※동일인이 복수의 분야에서 전문성을 지니고 있는 경우 대표 분야만 계산(이하 동일)

추천경로	후보군 수	백분율	비고
주주	4	11.4%	-
외부자문기관	31	88.6%	-
합계	35	100%	-

(7) 임원후보추천위원회가 이사회에 후보군 추천관련 보고한 내용

제29기 제1차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자격검증을 거친 3명의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후보 및 1명의 사외이사 후보를 추천하였으며, 동 사항은 2024년 3월 28일 개최된 제29기 제4차 정기 이사회에 보고되었습니다.

(8) 사외이사 지원부서가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 후보군 관리 업무 관련 주기적으로 보고한 내용

(가) 사외이사 지원부서 운영 현황

- 부서명 : 전략기획팀

- 조직 : 경영관리본부 소속
- 인원구성 : 팀장 1명(총괄), 팀원 4명

(나)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 후보군 관리 관련 업무 보고 및 지원 내용

일 자	보고 및 지원내용
2024.02.27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 후보 자격검증 결과 보고 위원회의 후보 추천에 따른 후보자의 수락여부 확인 및 확인서류 징구 사외이사 후보군 보고
2024.11.19	사외이사 후보군 보고

4. 사외이사 활동 · 보수 등

가. 사외이사 활동 내역

(1) 이사회 및 이사회내위원회 회의일시, 안건내용

(가) 이사회

2024년 중 이사회는 총 10회 개최되었으며, 각 차수별 이사회 안건 및 세부사항은 본 보고서 2. 다. 활동내역의 (2) 회의 개최내역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나) 임원후보추천위원회

2024년 중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총 2회 개최되었으며, 각 차수별 임원후보추천위원회의 안건 및 세부사항은 본 보고서 3. 라. 활동내역 및 평가의 (2) 회의 개최내역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다) 감사위원회

2024년 중 감사위원회는 총 8회 개최되었으며, 각 차수 별 감사위원회의 안건 및 세부사항은 본 보고서 7. 다. 활동내역 및 평가의 (2) 회의 개최내역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라) 위험관리위원회

2024년 중 위험관리위원회는 총 4회 개최되었으며, 각 차수별 위험관리위원회의 안건 및 세부사항은 본 보고서 8. 다. 활동내역 및 평가의 (2) 회의 개최내역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마) 보수위원회

2024년 중 보수위원회는 총 1회 개최되었으며, 각 차수별 보수위원회의 안건 및 세부사항은 본 보고서 [제2절] 보수체계 연차보고서 1. 라. 보수위원회 활동내역 및 평가의 (3) 회의 개최내역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바) 내부통제위원회

내부통제위원회는 2024년 12월 19일 신설되었으며, 2024년 중 회의 개최내역은 없습니다.

(2) 사외이사 개인별 이사회내위원회 참석 및 찬성여부

(가) 사외이사 이재은

사외이사 이재은은 2021년 1월 15일 개최된 임시 주주총회에서 신규 선임되었으며, 2023년 3월 22일 개최된 제27기 정기 주주총회 및 2024년 3월 28일 개최된 제28기 정기 주주총회에서 재선임되었습니다. 2024년 재임 중 개최된 이사회 10회 중 10회, 감사위원회 8회 중 8회, 임원후보추천위원회 2회 중 1회, 보수위원회 1회 중 1회, 위험관리위원회 4회 중 3회 모두에 참석하였습니다. (이사회 참석률 100%, 감사위원회 참석률 100%,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참석률 100%, 보수위원회 참석률 100%, 위험관리위원회 참석률 100%)

연중 개최된 이사회, 이사회 사전설명 등을 통해 당사 회계 결산 및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하여 심도있는 질의를 하였으며, 당사의 재무계획 관련하여 제언을 하며 논의에 적극 참여했습니다. 안건 검토 및 회의참석 등을 위해 2024년 약 36시간(이사회 등 안건 사전설명, 의안 및 의사록 검토시간, 이사회내위원회 포함)을 할애하였습니다.

(나) 사외이사 박영규

사외이사 박영규는 2021년 1월 15일 개최된 임시 주주총회에서 신규 선임되었으며, 2023년 3월 22일 개최된 제27기 정기 주주총회 및 2024년 3월 28일 개최된 제28기 정기 주주총회에서 재선임되었습니다. 2024년 재임 중 개최된 이사회 10회 중 10회, 감사위원회 8회 중 8회, 보수위원회 1회 중 1회, 위험관리위원회 4회 중 4회 모두 참석하였습니다. (이사회 참석률 100%, 감사위원회 참석률 100%, 보수위원회 100%, 위험관리위원회 참석률 100%)

사전에 제공한 의안에 대해 전문적인 식견을 바탕으로 활발한 의견 개진을 하였으며,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합리적 경영판단과 기업가치 제고에 부합하는 의사결정을 하였습니다. 안건 검토 및 회의참석 등을 위해 2024년 약 37시간(이사회 등 안건 사전설명, 의안 및

의사록 검토시간, 이사회내위원회 포함)을 할애하였습니다.

(다) 사외이사 조성부

사외이사 조성부는 2022년 3월 23일 개최된 정기 주주총회에서 신규 선임되었으며, 2024년 3월 28일 개최된 제28기 정기 주주총회에서 재선임되었습니다. 2024년 재임 중 개최된 이사회 10회 중 10회, 감사위원회 8회 중 5회, 임원후보추천위원회 2회 중 2회 참석하였습니다. (이사회 참석률 100%, 감사위원회 참석률 100%,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참석률 100%)

사전에 제공한 의안에 대해 전문적인 식견을 바탕으로 활발한 의견 개진을 하였으며,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합리적 경영판단과 기업가치 제고에 부합하는 의사결정을 하였습니다. 안건 검토 및 회의참석 등을 위해 2024년 약 27시간(이사회 등 안건 사전설명, 의안 및 의사록 검토시간, 이사회내위원회 포함)을 할애하였습니다.

(라) 사외이사 신선경

사외이사 신선경은 2024년 3월 28일 개최된 정기 주주총회에서 신규 선임되었습니다. 2024년 중 개최된 이사회 10회 중 6회, 임원후보추천위원회 2회 중 1회 참석하였습니다. (이사회 참석률 100%,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참석률 100%)

사전에 제공한 의안에 대해 전문적인 식견을 바탕으로 활발한 의견 개진을 하였으며,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합리적 경영판단과 기업가치 제고에 부합하는 의사결정을 하였습니다. 안건 검토 및 회의참석 등을 위해 2024년 약 13시간(이사회 등 안건 사전설명, 의안 및 의사록 검토시간, 이사회내위원회 포함)을 할애하였습니다.

(마) 사외이사 조세훈

사외이사 조세훈은 2020년 3월 24일 개최된 정기 주주총회에서 신규 선임되었으며, 2022년 3월 23일 개최된 제26기 정기 주주총회 및 2023년 3월 22일 개최된 제27기 정기 주주총회에서 재선임되었습니다. 2024년 중 개최된 이사회 10회 중 4회, 감사위원회 8회 중 3회, 위험관리위원회 4회 중 1회 참석하였습니다. (이사회 참석률 100%, 감사위원회 참석률 100%, 위험관리위원회 100%)

사전에 제공한 의안에 대해 전문적인 식견을 바탕으로 활발한 의견 개진을 하였으며,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합리적 경영판단과 기업가치 제고에 부합하는 의사결정을 하였습니다. 안건 검토 및 회의참석 등을 위해 2024년 약 13시간(이사회 등 안건 사전설명, 의안 및 의사록 검토시간, 이사회내위원회 포함)을 할애하였습니다.

(바) 요약

구분 사외 이사명	이사회		이사회내위원회								활동 시간
			감사위원회		임원후보 추천위원회		보수위원회		위험관리 위원회		실적
	개최	참여	개최	참여	개최	참여	개최	참여	개최	참여	
이재은	10	10	8	8	2	1	1	1	4	3	36시간
박영규	10	10	8	8	-	-	1	1	4	4	37시간
조성부	10	10	8	5	2	2	-	-	-	-	27시간
신선경	10	6	-	-	2	1	-	-	-	-	13시간
조세훈	10	4	8	3	-	-	-	-	4	1	13시간

나. 임원배상책임보험 가입 현황

신한금융지주회사는 신한금융지주회사와 당사를 포함한 모든 자회사의 사외이사에 대한 임원책임배상보험을 가입하고 있습니다.

보험계약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요 보상하는 손해

(가) 임원의 배상책임 (Directors and Officers Liability)

임원의 부당행위(Wrongful Act)로 주주나 제 3 자(종업원, 소비자, 경쟁업체 등)가 임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해당 임원이 부담하는 손해배상금과 소송비용을 보상. 부당

행위(Wrongful Act)란 임원으로서의 의무위반, 태만, 과실, 누락, 허위진술,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진술을 행하였거나 또는 행하였다는 주장에 근거하여 임원으로서 배상청구를 받은 경우를 포함함 (담보 범위는 약관 및 계약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나) 임원에 대한 회사의 보상(Company Reimbursement)

상기 배상청구에 대하여 법률이나 정관의 규정에 따라 해당 임원의 배상책임을 회사가 보상함으로써 발생한 회사의 손해를 보상

(2) 주요 보상하지 않는 손해

- 가. 임원의 의도적인 사기행위, 의무해태 또는 고의적인 법령위반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청구
- 나. 대주주 및 지배주주로부터 제기된 손해배상청구
- 다. 내부정보를 이용하여 주식매매를 함으로 취한 이득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 라. 부정직행위로서 고의적인 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
- 마. 임원의 업무수행과 관련되지 않은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 바. 불법으로 사적인 이익 또는 혜택을 획득한 임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 사. 타인의 신체장해 또는 재물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 아. 벌과금 및 징벌적 손해
- 자. 전문직업 수행으로 기인한 손해배상청구 등

(3) 보험기간 : 2024.4 월~2025.3 월

(4) 보상한도 : 그룹 총 보상한도 500 억원 (청구당/자회사별)

(5) 담보지역 : 북미지역 포함 전세계

다만, 당사 및 신한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인 신한은행, 신한카드, 신한투자증권, 신한라이프, 제주은행의 이사회는 지배구조 내부규범에서 규율하는 사외이사의 책임있는 의사결정을 담보하기 위한 취지를 적극 반영하여 사외이사 임원배상책임보험은 사외이사의 자기부

담액을 배상책임액의 20% 이상으로 하는 것을 규정화하였습니다. (당사 지배구조내부규범 제 23 조 제 5 항제 6 항에 동 내용을 적시)

상기 내용을 임원책임배상보험에 아래와 같은 특약을 삽입하여 임원책임배상보험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배구조내부규범에 따른 특약 신설 : 피보험회사 중 신한금융지주회사, 신한카드, 신한투자증권, 신한라이프, 신한자산운용, 제주은행의 사외이사일 경우 자기부담액을 최대 1 억원 범위 내에서 배상책임액의 20%로 한다.]

다. 사외이사 교육·연수

사외이사 성명 (최초 선임일)	이재은 (‘21. 01. 15)	박영규 (‘21. 01. 15)	조성부 (‘22. 03. 23)
1. 교육·연수 실시 내역			
가. 교육·연수 일시 및 내용	- 실시일자: 2024년 10월 18일 - 주요내용: 내부회계관리제도 교육 로드맵 내부회계관리제도 최근 동향 및 영향 분석 FRICS(재무보고내부통제시스템) 확산 구축		
사외이사별 참석 여부	참석	참석	참석
2. 누적 교육 시간	1	1	1

라. 사외이사 자격요건 유지 여부

(1) 사외이사 이재은

심사항목	충족여부	충족이유
1. 소극적 자격요건		
가. 임원의 자격 요건 (지배구조법 제5조, 동법 시행령 제7조)	충족	결격사항 없음
나. 사외이사의 자격 요건 (지배구조법 제6조, 동법 시행령 제8조)	충족	결격사항 없음
2. 적극적 자격요건		
가. 전문성	충족	회계 전문가

나. 직무공정성	충족	당사와의 특별한 이해관계 없음. 전체 주주 및 금융소비자의 이익을 위하여 공정한 직무 수행
다. 윤리책임성	충족	고도의 윤리의식과 책임성 보유
라. 충실성	충족	이사회 및 이사회내위원회 활동을 위해 충분한 시 간과 노력을 할애하며 활동 실적이 우수함. 선임사외이사로서 직무에 충실하고 있음

(2) 사외이사 박영규

심사항목	충족여부	충족이유
1. 소극적 자격요건		
가. 임원의 자격 요건 (지배구조법 제5조, 동법 시행령 제7조)	충족	결격사항 없음
나. 사외이사의 자격 요건 (지배구조법 제6조, 동법 시행령 제8조)	충족	결격사항 없음
2. 적극적 자격요건		
가. 전문성	충족	금융 및 경영 전문가
나. 직무공정성	충족	당사와 특별한 이해관계 없음. 전체 주주 및 금융소비자의 이익을 위하여 공정한 직무 수행
다. 윤리책임성	충족	학교에 소속된 교수의 직분으로 고도의 윤리의식 과 책임성 보유
라. 충실성	충족	이사회 및 이사회내위원회 활동을 위해 충분한 시 간과 노력을 할애

(3) 사외이사 조성부

심사항목	충족여부	충족이유
1. 소극적 자격요건		
가. 임원의 자격 요건 (지배구조법 제5조, 동법 시행령 제7조)	충족	결격사항 없음
나. 사외이사의 자격 요건 (지배구조법 제6조, 동법 시행령 제8조)	충족	결격사항 없음
2. 적극적 자격요건		

가. 전문성	충족	경영 전문가
나. 직무공정성	충족	당사와 특별한 이해관계 없음. 전체 주주 및 금융소비자의 이익을 위하여 공정한 직무 수행
다. 윤리책임성	충족	고도의 윤리의식과 책임성 보유
라. 충실성	충족	이사회 및 이사회내위원회 활동을 위해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할애

(4) 사외이사 신선허

심사항목	충족여부	충족이유
1. 소극적 자격요건		
가. 임원의 자격 요건 (지배구조법 제5조, 동법 시행령 제7조)	충족	결격사항 없음
나. 사외이사의 자격 요건 (지배구조법 제6조, 동법 시행령 제8조)	충족	결격사항 없음
2. 적극적 자격요건		
가. 전문성	충족	법률 전문가
나. 직무공정성	충족	당사와 특별한 이해관계 없음. 전체 주주 및 금융소비자의 이익을 위하여 공정한 직무 수행
다. 윤리책임성	충족	고도의 윤리의식과 책임성 보유
라. 충실성	충족	이사회 및 이사회내위원회 활동을 위해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할애

마. 기부금등 지원내역

사외이사	기부받은 비영리법인 등		기부한 금융회사등	지원내역	
	법인등의 명칭	사외이사와 관계		선임 전	선임 후
해당사항 없음					

바. 사외이사 평가

(1) 평가 개요

당사는 사외이사의 임기를 신규 선임 시 2년, 연임 시 임기는 1년 이내로 최대 6년간의 연임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사외이사의 역량·자질 및 실적 등에 대해 이사회에서 결의한 방법에 의거하여 내부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평가의 객관성 확보 및 익명성 보장을 위해 외부업체에 위탁하여 평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2) 내부평가

(가) 내부평가 개요

- ① **평가 주체:** 사외이사의 연간 활동에 대한 평가는 익년도 1월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 ② **평가 기준:** 평가는 자기평가(본인평가), 이사회 평가(본인을 제외한 사외이사 전원에 의한 평가) 및 직원평가로 구성되며, 평가지표는 전문성, 직무공정성, 윤리책임성, 충실성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사외이사 개개인에 대한 종합의견을 기술하도록 하여 정성적인 평가요소도 반영하고 있습니다.
- ③ **평가 절차:** 사외이사 평가는 온라인을 통한 자기기입식 평가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 ④ **평가의 객관성 제고 장치:** 당사 이사회는 평가주체, 기준, 방법 등의 객관성 제고를 위하여 평가의 전 과정을 외부업체에 위탁을 통하여 사외이사 평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나) 내부평가 결과 및 개선방안

1) 총론

‘2024년도 사외이사 평가’는 자기평가(본인 평가), 이사회 평가(본인을 제외한 사외이사 전원에 대한 평가), 직원평가로 나누어 실시하였습니다. 2024년말 재임하고 있는 4명의 사외이사 전원이 사외이사 직무에 대한 기대 이상의 강점을 보이는 4등급 이상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전반적으로 평가대상 사외이사 4명의 경우 회사 및 그룹차원의 비전, 전략 및 문화에 대

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이사회 안건 논의 시 적극적인 의견 개진 및 심도 높은 논의가 가능한 인력으로 평가되었습니다. 또한 금융 전반에 대한 이해도, 경험, 경륜으로 회사의 의사결정에 도움을 주며 전문성 및 합리성을 바탕으로 이사회 효율적인 진행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정관, 지배구조 내부규범 등에 적시된 사외이사의 적극적 자격요건을 고려할 때 당사의 사외이사 전원은 사외이사직을 유지하기 위한 충분한 자격요건을 충족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2) 사외이사별 평가결과 및 개선방안

사외이사	평가결과				개선방안
	전문성	직무공정성	윤리·책임성	총실성	
이재은	5	5	5	5	-
박영규	5	5	5	5	-
조성부	4	4	4	5	-
신선경	4	5	4	5	

※ 평가등급 : 5등급: 매우 우수 / 4등급 : 우수 / 3등급 : 보통 / 2등급 : 부진 / 1등급 : 매우 부진

(3) 외부평가

당사는 사외이사에 대해 외부평가를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 선임사외이사 및 지원부서 활동내역

(1) 선임사외이사 활동 내역

당사 이사회는 매년 이사회 결의로 이사 중에서 이사회 의장을 선임하며 사외이사가 아닌 자를 이사회 의장으로 선임할 경우 이사회는 사외이사를 대표하는 선임사외이사를 선임하고 있습니다. 선임사외이사는 사외이사 전원으로 구성되는 사외이사 회의소집 및 주재, 사외이사가 그 직무를 수행할 때 필요한 자료나 정보를 이사회 의장이나 회사로부터 제출

받을 수 있도록 지원, 그 밖에 사외이사의 역할 및 책임 제고에 필요한 업무 등을 수행합니다.

당사는 이사회 의장을 대표이사가 역임하므로, 지배구조 내부규범 제5조에 의거하여 2024년 3월 28일 개최된 제29기 제5차 임시 이사회에서 이재은 사외이사를 선임사외이사로 선임하였습니다.

(2) 사외이사 지원부서의 활동내역

(가) 지원부서 현황

전략기획팀 (팀장 1명, 팀원 4명)

(나) 지원부서 수행 업무

당사 전략기획팀은 이사회의 원활한 활동을 지원하고 이사(사외이사 포함)에 대한 제반 업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 이사회 등의 회의 소집 및 집행 등을 위한 실무지원
- 이사회 등의 회의내용 기록 유지
- 이사회 등의 연간 운영계획 수립 지원
- 사외이사에 대한 당사 관련 경영정보 등의 보고, 제공 및 발송 지원
- 사외이사 직무수행에 필요한 요청사항에 대한 지원
- 이사 연수프로그램의 개발/소개 및 실무지원
- 이사회 및 이사의 각종 법규준수를 위한 지원
- 사외이사 및 이사회(이사회내위원회 포함)에 대한 평가업무 지원
- 기타 이사회 등의 지시사항 처리

아. 사외이사 재직기간 및 보수

(1) 사외이사 이재은

(가) 재직기간: 2021년 1월 15일~ 재직 중 (약 47개월)

(나) 보수 및 보수 외에 지급된 편익제공 현황:

항목		금액	산출내역
가. 보수총액		47,900,000	
	기본금	36,000,000	월 300만원
	상여금	-	
	기타수당	11,900,000	
나. 보수 이외 기타 편익		-	
	업무활동비		해당사항 없음
	건강검진 지원		해당사항 없음
	차량 제공		해당사항 없음
	사무실 제공		해당사항 없음
	기타 편익 제공		해당사항 없음

(2) 사외이사 박영규

(가) 재직기간: 2021년 1월 15일 ~ 재직중 (약 47개월)

(나) 보수 및 보수 외에 지급된 편익제공 현황:

항목		금액	산출내역
가. 보수총액		48,200,000	
	기본금	36,000,000	월 300만원
	상여금	-	
	기타수당	12,200,000	
나. 보수 이외 기타 편익		-	
	업무활동비		해당사항 없음
	건강검진 지원		해당사항 없음
	차량 제공		해당사항 없음
	사무실 제공		해당사항 없음
	기타 편익 제공		해당사항 없음

(3) 사외이사 조성부

(가) 재직기간: 2022년 3월 23일 ~ 재직중 (약 33개월)

(나) 보수 및 보수 외에 지급된 편익제공 현황:

항목		금액	산출내역
가. 보수총액		44,900,000	
	기본급	36,000,000	월 300만원
	상여금	-	
	기타수당	8,900,000	
나. 보수 이외 기타 편익		-	
	업무활동비		해당사항 없음
	건강검진 지원		해당사항 없음
	차량 제공		해당사항 없음
	사무실 제공		해당사항 없음
	기타 편익 제공		해당사항 없음

(4) 사외이사 신선경

(가) 재직기간: 2024년 3월 28일 ~ 재직중 (약 9개월)

(나) 보수 및 보수 외에 지급된 편익제공 현황:

항목		금액	산출내역
가. 보수총액		29,787,097	
	기본급	27,387,097	월 300만원
	상여금	-	
	기타수당	2,400,000	
나. 보수 이외 기타 편익		-	
	업무활동비		해당사항 없음
	건강검진 지원		해당사항 없음
	차량 제공		해당사항 없음
	사무실 제공		해당사항 없음
	기타 편익 제공		해당사항 없음

(5) 사외이사 조세훈

(가) 재직기간: 2020년 3월 24일~2024년 3월 28일 (48개월)

(나) 보수 및 보수 외에 지급된 편익제공 현황:

항목		금액	산출내역
가. 보수총액		16,709,677	
	기본금	8,709,677	월 300만원
	상여금	-	
	기타수당	8,000,000	
나. 보수 이외 기타 편익		-	
	업무활동비		해당사항 없음
	건강검진 지원		해당사항 없음
	차량 제공		해당사항 없음
	사무실 제공		해당사항 없음
	기타 편익 제공		해당사항 없음

자. 금융회사와 사외이사등이 소속한 기관과의 계약체결 내역

사외이사 성명	사외이사와의 관계	소속기관명 (소속기관 담당 직위)	계약체결 내용
해당사항 없음			

차. 최근 5년간 사외이사 선임 내역

성명	최초 선임일	임기 만료일	재임 기간	담당 위원회	직위	경력
디디에 뚜슈	'16. 02.03	'21. 01.15	71 개월	감사위('16.2월~'21.1월) 사추위('16.2월~7월) 보수위('16.2월~'17.3월) 위험관리위('16.8월~'21.1월)	-	BNPP AM APAC & Emerging 리스크 본부장

탁승훈	'17. 12.14	'20. 03.24	27 개월	감사위('17.12월~'20.3월) 임추위('17.12월~'20.3월) 보수위('17.12월~'20.3월) 위험위('17.12월~'20.3월)	선임사외이사('17.12월~'20.03.24) 감사위원장('18.3월~'20.03.24) 임추위원장('18.3월~'20.03.24) 보수위원장('18.3월~'20.03.24) 위험관리위원장('18.3월~'20.03.24)	前) 신한은행 압구정중앙지점 지점장
라케쉬 뱅게일	'19. 03.29	'21. 01.15	35 개월	감사위('19.3월~'21.1월) 임추위('19.3월~'21.1월) 보수위('19.3월~'21.1월)	-	BNPP AM Asia APAC D-CEO
조세훈	'20. 03.24	'24. 03.28	48 개월	감사위('20.3월~'24.3월) 임추위('20.3월~'22.3월) 보수위('20.3월~'22.3월) 위험위('20.3월~'24.3월)	선임사외이사('20.3월~'24.3월) 감사위 위원장('20.3월~'24.3월) 임추위 위원장('20.3월~'22.3월) 보수위 위원장('20.3월~'22.3월) 위험관리위 위원장('20.3월~'24.3월)	이룸투자자문 대표이사
이재은	'21. 01.15	재임중	47 개월	감사위('21.1월~재임중) 임추위('21.1월~재임중) 보수위('20.3월~재임중)	선임사외이사('24.3월~재임중) 감사위원장('24.3월~재임중) 임추위 위원장('22.11월~'24.3월)	홍익대학교 교수
박영규	'21. 01.15	재임중	47 개월	감사위('21.1월~재임중) 위험위('21.1월~재임중) 보수위('22.3월~재임중)	보수위 위원장('22.3월~재임중) 위험관리위 위원장('24.3월~재임중)	성균관대학교 교수
조성부	'22. 03.23	재임중	33 개월	감사위('24.3월~재임중) 임추위('22.3월~재임중) 보수위('24.3월~재임중) 내통위('24.12월~재임중)	임추위 위원장('24.3월~재임중)	연합뉴스·연합뉴스 TV 대표이사
신선경	'24. 03.28	재임중	9 개월	임추위('24.3월~재임중) 내통위('24.12월~재임중)	-	법무법인 리우 변호사

※ 보수위원회 신설 : 2015년 3월 30일

※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폐지 : 2016년 8월 1일

※ 위험관리위원회,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신설 : 2016년 8월 1일

※ 내부통제위원회 신설 : 2024년 12월 19일

5. 대표이사 경영승계

가. 대표이사 경영승계 내부규정

당사는 신한금융그룹의 자회사로서, 신한금융그룹은 신한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최고경영자후보추천위원회(舊 자회사경영관리위원회)에서 자회사 대표이사 승계계획 운영 등 그룹 내 자회사 지배구조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신한금융지주회사는 자회사최고경영자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2004년 5월 10일 자회사경영관리위원회규정을 제정하였습니다. 2012년에는 그룹 대표이사 회장의 경영승계 절차를 규정하는 '그룹 경영승계계획'과 연계하여 자회사 CEO 경영승계절차를 관장하는 종합적인 '자회사 경영승계계획'을 마련하였으며, 2014년 12월 24일 시행된 「금융회사 지배구조 모범규준」 상의 최고경영자 경영승계계획 내용을 반영하여, 2015년 2월 26일 이사회에서 자회사경영관리위원회 규정을 개정함으로써 자회사 대표이사 경영승계 과정 상의 리스크를 최소화하도록 하였습니다.

2020년 5월 21일에는 자회사 이사회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자회사 CEO의 책임경영을 지원하기 위해 자회사경영관리위원회가 담당해 온 자회사의 대표이사 아닌 경영진 후보인선 기준 및 심의 관련 기능을 자회사 이사회가 담당하도록 자회사경영관리위원회규정을 개정하였으며, 2021년 3월 25일에는 자회사경영관리위원회를 이사회내위원회에 편입하여 위원회 운영의 투명성을 더욱 강화하였습니다.

신한금융지주회사는 2023년 3월 23일 자회사경영관리위원회 및 자회사경영관리위원회 규정의 명칭을 '자회사최고경영자후보추천위원회' 및 '자회사최고경영자후보추천위원회규정'으로 변경하고, 자회사최고경영자 후보 추천이라는 본연의 기능에 보다 충실할 수 있도록 심의·결의 대상을 정비하였습니다. 2024년 7월 26일에는 2023년말 발표된 '은행지주은행의 지배구조에 관한 모범관행'을 반영하여 경영승계 관련 내규 체계와 승계절차 전반을 재점검하고, 승계절차의 안정성과 투명성, 공정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현재 신한금융지주회사는 경영승계를 포함한 지배구조 전반을 아우르는 '지배구조 내부규범'과 그룹 및 자회사 경영승계 절차의 운영원칙과 기본사항을 정한 '경영승계규정'을 기본으로 '자회사최고경영자후보추천위원회규정'과 '자회사 경영승계계획'으로 이어지는 내규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자회사최고경영자후보추천위원회규정과 자회사 경영승계계획에서는 자회사 대표이사의 자격요건, 자회사 경영승계 절차의 개시 및 종료 사유와 시기, 후보자 추천 및 경영승계 절차, 자회사 대표이사 후보군 선발 및 자격검증 관리방법, 비상승계계획 등을 상세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붙임> 신한금융지주회사 자회사최고경영자후보추천위원회규정

자회사최고경영자후보추천위원회규정

2004. 5. 10 제정
 2005. 6.29 개정(1)
 2009.11.12 개정(2)
 2010. 2.26 개정(3)
 2011.2.8 개정(4)
 2011.2.21 개정(5)
 2015.2.26 개정(6)
 2015.8.24 개정(7)
 2016.8.1 개정(8)
 2018.2.20 개정(9)
 2018.12.12 개정(10)
 2019.12.13 개정(11)
 2020.5.21 개정(12)
 2021.3.25 개정(13)
 2023.3.23 개정(14)
 2024.7.26 개정(15)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자회사최고경영자후보추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역할) 위원회는 이사회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 결의하며 회사의 지배구조가 투명하고 건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한다. (2021.3.25 신설)

제3조(구성 및 운영) 위원회는 대표이사 회장을 포함하여 3인 이상 5인 이내의 이사로 구성한다. 이 경우 총 위원의 과반수는 사외이사로 한다. (2010.2.26 시행) (2021.3.25 개정, 2024.7.26 개정)

제4조(위원장)

- ① 위원장은 대표이사 회장으로 한다. (2021.3.25 개정)
- ② 위원장이 부재중이거나 유고시에는 위원회에서 정한 순위에 따른 위원이 이를 대행한다. 다만, 위원회에서 별도로 순위를 정하지 아니한 경우 이사회에서 정한 이사회 의장 직무대행 순서에 따른 위원회 소속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소집)

-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 ② 위원회를 소집할 때에는 위원장이 일시, 장소 및 목적사항을 회일 7일전에 각 위원에게 통지한다. 그러나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고, 위원 전원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2021.3.25 개정)

제6조(결의사항 등)

- ① 위원회는 다음의 각호의 사항을 심의, 결의한다. (2023.3.23 개정)
 - 1. 자회사 대표이사의 자질 등 자격요건의 설정
 - 2. 자회사 대표이사 후보자 추천
 - 3. 자회사 대표이사 후보자 선정 및 후보자의 자격요건 충족 여부 검증 등 후보군 관리
 - 4. 자회사 대표이사 리더십 평가에 관한 사항
 - 5. (2023.3.23 삭제)
 - 6. 기타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대표이사 회장은 위원회에서 결의한 사항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③ 이사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1항 제1호의 사항에 대해 달리 결의할 수 있다. (2021.3.25 개정)

제7조(자회사 경영승계계획)

- ① 위원회는 대표이사 회장이 제안한 자회사 경영승계 계획의 적정성을 심의하여 자회사의 경영승계 계획을 수립하고, 연1회 이상 경영승계계획의 적정성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② 위원회는 자회사 대표이사 후보자 선정 및 자격요건 충족여부 검증 내용을 연1회 이상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③ 대표이사 회장은 위원회에서 수립된 자회사 경영승계계획에 따라 자회사 대표이사 후보군의 평가 결과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2023.3.23 개정)
- ④ 자회사 경영승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1. 자회사 대표이사 후보군 선정 기준과 절차
 - 2. 자회사 대표이사 후보군 육성 프로그램
 - 3. 자회사 대표이사 후보군 평가기준 및 평가방법
 - 4. 자회사 대표이사 승계 절차

제8조(육성후보군 선정 및 관리)

- ① 위원회는 매년 신한금융그룹 경영진 중에서 미래 자회사 대표이사 후보로서의 육성 대상이 되는 자(이하 “육성후보

군”이라 한다)를 선정한다. (2024.7.26 개정)

② 육성후보군의 소속회사 최고경영자는 위원회에서 선정한 육성후보군의 육성에 대한 책임을 진다. (2024.7.26 개정)

제9조(승계후보군 선정 및 관리)

① 위원회는 자회사 경영승계계획에 따라 적정 규모의 자회사 대표이사 경영승계 후보군(Long-List, 이하 “승계후보군”이라 한다)을 선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2024.7.26 개정)

② 승계후보군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임원의 자격요건과 경력 및 업무전문성, 도덕성 등 측면에서 위원회가 정한 최소 자격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2024.7.26 개정)

③ 위원회는 후보군 탐색 시 필요할 경우 외부 자문기관, 주주 및 이해관계자, 위원 등 회사 외부로부터의 추천을 활용할 수 있다. (2024.7.26 개정)

④ 위원회는 연1회 이상 승계후보군의 자격요건 충족 여부 등 적정성을 검증하여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2024.7.26 개정)

제10조(자회사 대표이사 후보 추천)

① 위원회는 도덕성, 신한가치 구현능력, 업무전문성, 조직관리 역량을 갖추고 비전을 공유하며, 공익성 및 건전 경영에 노력할 수 있는 자를 자회사 대표이사 후보로 추천하여야 한다. (2024.7.26 개정)

② 위원회는 충실한 심의를 위한 기간을 고려하여 승계절차 개시 시점을 결정하고, 자회사 대표이사의 임기만료 전에 후보추천을 완료한다. 다만 자회사 대표이사 유고 등 비상상황 발생 시에는 경영승계계획 상의 가속승계 절차를 따른다. (2024.7.26 개정)

③ 경영승계 절차가 개시되면 위원회는 승계후보군을 대상으로 자회사 최고경영자에게 요구되는 역량 및 요건의 충족여부를 검증하고, 소수의 자회사 대표이사 후보자(이하 “압축후보군”이라 한다)를 선정한다. 단, 승계후보군에 포함되지 않은 자를 자회사 최고경영자 후보 심의 대상에 포함하고자 하는 경우, 위원회는 추천자 및 사유를 공시하여야 한다. (2024.7.26 개정)

제11조(공시)

① 회사는 위원회가 자회사의 대표이사 후보를 추천하는 경우 해당 자회사로 하여금 주주총회 소집 통지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시하고, 주주총회 소집 통지시 공시사실 및 공시확인 방법 등을 알리도록 하여야 한다. (2023.3.23 개정, 2024.7.26 개정)

1. 자회사 대표이사 후보추천절차 개요
2. 자회사최고경영자후보추천위원회 위원의 명단 및 약력
3. 자회사 대표이사 후보 제안자 및 후보자와의 관계
4. 관련 법령에 따른 자격요건 충족여부 및 근거
5. 자회사 대표이사 후보자 추천 이유
6. 자회사 대표이사 후보자의 경력
7. 그 밖에 자회사 대표이사 후보자 추천과 관련하여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② 천재지변, 선임 예정자의 중대한 결격사유 또는 사고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여 선임이 지연되는 경우 회사는 해당 자회사로 하여금 그 사유와 선임시까지의 자회사 대표이사 대행자 및 운영계획, 자회사 대표이사 선임 일정 등을 공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2024.7.26 개정)

제12조(결의방법) ① 위원회의 결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2021.3.25 개정)

② 위원회는 위원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위원이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위원은 위원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③ 위원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이 경우 당해 위원은 재적위원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13조(관계인 출석 등)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회사 및 자회사의 경영진 및 관계직원에게 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할 것을 요구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외부인사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4조(의사록) 위원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한 의사록을 작성하고 출석한 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제15조(적용범위)

이 규정의 제7조부터 제11조까지에서 정한 사항은 자회사 중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설치 대상 회사에 적용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4. 5. 10부터 시행한다.

부 칙(1)

1.(시행일) 이 규정은 2005. 6. 29부터 시행한다.

부 칙(2)

1.(시행일) 이 규정은 2009 회계연도 결산기에 관한 정기 주주총회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3)

1.(시행일) 이 규정은 2009 회계연도 결산기에 관한 정기 주주총회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4)

1.(시행일) 이 규정은 2011. 2. 8부터 시행한다.

부 칙(5)

1.(시행일) 이 규정은 2011. 2. 21부터 시행한다.

부 칙(6)

1.(시행일) 이 규정은 2015.2.26부터 시행한다.

부 칙(7)

1.(시행일) 이 규정은 2015.8.24부터 시행한다.

부 칙(8)

1.(시행일) 이 규정은 2016.8.1부터 시행한다.

부 칙(9)

1.(시행일) 이 규정은 2018.2.20부터 시행한다. 단, 규정 제5조 제5항은 제주은행의 경우 2018년 정기 주주총회에서 관련 규정을 변경한 때로부터 적용한다.

부 칙(10)

1.(시행일) 이 규정은 2018.12.12부터 시행한다.

부 칙(11)

1.(시행일) 이 규정은 2019.12.13부터 시행한다.

부 칙(12)

1.(시행일) 이 규정은 2020.5.21부터 시행한다.

부 칙(13)

1.(시행일) 이 규정은 2021.3.25부터 시행한다.

부 칙(14)

1.(시행일) 이 규정은 2023.3.23부터 시행한다.

부 칙(15)

1.(시행일) 이 규정은 2024.7.26부터 시행한다.

나. 대표이사 후보추천 및 경영승계 절차

(1) 일반

신한금융지주회사는 자회사 경영승계계획을 상시 관리함으로써 투명하고 건전한 지배구조의 운영과 안정적 경영승계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회사최고경영자후보추천위원회는 자회사 경영승계 계획을 수립하고 연 1회 이상 적정성 점검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합니다. 자회사최고경영자후보추천위원회는 현임 자회사 대표이사, 육성후보군, 퇴임후보군 등 내부후보와 그룹에 소속되지 않은 외부 후보를 포함하여 자회사 최고경영

자 '승계후보군'을 정기적으로 선정하며, 후보군 탐색 시 필요할 경우 주주, 이해관계자 및 외부 자문기관 등 회사 외부로부터의 추천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회사최고경영자후보추천위원회는 자회사 대표이사에게 요구되는 자격요건과 법률요건 등을 고려하여 자회사 대표이사 후보군을 선정하고, 승계시점에 각 자회사 별로 요구되는 전략적 역할에 대한 고려를 바탕으로 자회사 대표이사 후보군을 심의합니다. 한편, 은행 자회사의 경우 자회사 임원후보추천위원회가 제안하는 은행장 후보의 자격요건을 접수하고, 이를 반영하여 심의요건을 결정합니다.

금융회사인 자회사의 대표이사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가 정하는 임원의 자격에 관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동법 및 시행령은 미성년자 · 피성년후견인 · 피한정후견인,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동법 또는 금융관계법령에 따라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금융관계법령에 따른 영업의 허가 · 인가 · 등록 등이 취소된 법인 또는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적기시정조치 · 행정처분을 받은 금융회사의 임직원 또는 임직원이었던 사람으로서 해당 조치가 있었던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동법 또는 금융관계법령에 따라 임직원 제재조치를 받은 사람으로서 조치의 종류별로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금융회사의 공익성 및 건전 경영과 신용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등일 경우에는 임원이 될 수 없으며 임원이 된 후에 이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직을 상실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자회사최고경영자후보추천위원회규정 제10조에 따라 자회사최고경영자후보추천위원회는 도덕성, 신한가치 구현능력, 업무전문성, 조직관리 역량을 갖추고 회사의 비전을 공유하며, 공익성 및 건전 경영에 노력할 수 있는 자를 자회사 대표이사 후보로 추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회사최고경영자후보추천위원회는 자회사 대표이사 임기만료 전까지 후보추천을 완료하

며, 충실한 심의에 필요한 충분한 기간을 고려하여 승계절차 개시 시점을 결정합니다. 단, 은행 자회사의 경우 현임 은행장의 임기만료 3개월 전까지 승계절차를 개시합니다. 자회사최고경영자후보추천위원회가 자회사 대표이사 후보를 추천하면, 금융회사인 자회사의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대표이사 후보에 대하여 관계법규 및 내규에서 정한 자격기준 적합 여부 등을 검토하여 해당 자회사의 주주총회에 추천하며, 추천된 대표이사 후보는 해당 자회사의 주주총회 및 이사회 결의를 통하여 대표이사로 선임됩니다.

또한, 신한금융지주회사는 지속가능 경영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내부 경영진을 대상으로 자회사 대표이사 육성후보군을 선정하여 미래의 자회사 CEO 후보로 양성하고 있습니다. 금융업에 대한 통찰력, 전사 관점의 의사결정, 전략실행 · 추진력, 리더십 등 다양한 요소에 대한 개발 프로그램이 시행되고 있으며, 자회사최고경영자후보추천위원회는 육성후보군의 경영성과 및 개발활동의 결과를 정기적으로 심의 · 평가합니다. 후보군에 대한 평가 결과는 자회사 대표이사 후보 추천 과정에서 중요한 요소로 고려되고 있습니다.

(2) 비상계획

자회사 대표이사가 불의의 사고, 갑작스러운 건강 상 이유 등으로 그 직무를 더 이상 수행할 수 없게 되는 경우, 자회사최고 경영자후보추천위원회규정 제10조에 따라 경영승계 계획 상의 절차를 빠르게 진행하는 가속승계 프로세스를 통해 자회사 대표이사를 추천하도록 합니다. 또한, 동 규정에 따라 천재지변, 선임 예정자의 중대한 결격사유 또는 사고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여 선임이 지연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선임시까지의 대표이사 대행자 및 회사 운영계획, 자회사 대표이사 선임 일정 등을 공시하여야 합니다.

다. 대표이사 자격충족 여부 및 근거

(1) 소극적 요건

- 지배구조법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 지배구조 내부규범 제35조

(2) 금융회사가 정한 자격요건

당사 지배구조 내부규범에서 정한 최고경영자 자격요건은 도덕성, 신한가치 구현 능력, 업무전문성, 조직관리 역량을 갖추고, 회사의 비전을 공유하며, 공익성 및 건전 경영에 노력할 수 있는 자입니다.

라. 대표이사 후보추천 및 경영승계 내역

(1) 대표이사 후보추천 및 승계 내역

당사는 공정하고 투명한 최고경영자 선정을 위하여 지배구조 내부규범에 최고경영자 후보추천절차를 정하고 있습니다. 당사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지주회사의 자회사최고경영자후보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최고경영자 대표이사 후보자에 대하여 관계법규에서 정한 자격기준 적합여부를 검토하여 주주총회에 추천합니다. 지주회사 자회사최고경영자후보추천위원회는 회사, 주주 및 기타 이해 관계자들의 이익에 부합하는 자를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에 따라 최고경영자 후보로 추천하며,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주주, 이해관계자 및 외부 자문기관 등 회사 외부로부터의 추천을 활용하여 후보를 추천합니다.

2023년 12월 26일 개최된 제28기 제2차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조재민 후보를 최고경영자 대표이사 후보로 결의하여 동일 일자에 개최된 제28기 임시 주주총회에 추천하였습니다. 주주총회에서 이사로 선임된 조재민 이사는 동일 일자에 개최된 제28기 제10차 임시 이사회에서 대표이사로 선임되었습니다.

(2) 대표이사 승계 관련 주요 심의·의결 결과

2023년 12월 26일 개최된 제28기 제2차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조재민 후보를 최고경영자 대표이사 후보로 임시 주주총회에 추천할 것을 결의하였습니다. 해당 안건은 재적위원 3명 중 3명 출석 및 3명의 찬성으로 가결되었습니다.

마. 대표이사 후보군 관리현황

신한금융지주회사 자회사최고경영자후보추천위원회는 자회사 경영승계계획에 따라 내부후보와 그룹에 소속되지 않은 외부후보를 포함한 자회사 대표이사 '승계후보군'을 정기적으로 선정하고, 자회사최고경영자후보추천위원회규정 제7조에 따라 대표이사 후보군의 선정 및 자격요건 충족여부 검증 내용을 연 1 회 이상 이사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승계절차가 개시되면 위원회는 승계후보군을 대상으로 자회사 최고경영자에게 요구되는 역량 및 요건의 충족여부를 검증하여 소수의 압축후보군을 선정하고, 압축후보군 중에서 최종 후보를 추천합니다.

<자회사 대표이사 후보군 현황>

- 공시시점 기준 현재 승계후보군 현황

(2024 년도 제 4 회 자회사최고경영자후보추천위원회, 2024.9.10)

내부 후보군(명)	외부 후보군		합계(명)
	인원	추천경로	
67	33	외부 전문기관	100

※ 위 후보군은 출신 및 소속회사를 불문하고 자회사 경영승계계획 적용 자회사의 대표이사 후보 공통 POOL 로 활용함

<자회사최고경영자후보추천위원회규정 제10조 제3항에 따른 공시 대상>

성명	소속/직위	추천자	추천사유
박창훈	신한카드 본부장	자회사최고경영자 후보추천위원회	그룹 내외부 차세대 인재 발탁(검토)을 통한 조직 역동성 제고
유태현	우리카드 전무		
장호식	신한은행 본부장		
채수웅	신한은행 본부장		

바. 이사회 의 대표이사 경영승계계획 적정성 점검 내역

신한금융지주회사는 자회사최고경영자후보추천위원회규정에 따라 경영승계계획의 적정성을 심의하여 자회사 경영승계 계획을 수립하고, 연1회 이상 경영승계계획의 적정성을 신

한금융지주회사 이사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당사 이사회는 2024년 11월 19일 개최된 제29기 제8차 정기 이사회에서 신한금융지주 회사의 '그룹 자회사 경영승계계획 및 육성후보군'에 대해 보고받아 대표이사 경영승계계획의 적정성을 점검하였습니다.

사. 대표이사 승계업무 지원부서 운영 현황

신한금융지주회사는 자회사 대표이사 경영승계 관련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신한리더십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한리더십센터는 팀장과 팀원 총 10 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경영승계 계획 운영 등 경영리더 육성 및 관리, 경영진 성과 보상 및 평가, 그룹 인사정책 방향 수립 및 실행, 그룹 기업문화 방향성 수립 및 전파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신한리더십센터는 지배구조 내부규범 제 37 조에 따라 상시적인 대표이사 후보군 관리 및 평가·검증 지원, 대표이사 후보자에 대한 평가업무 지원, 그 밖에 대표이사 경영승계 지원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한리더십센터는 자회사최고경영자후보추천위원회 규정 제 7 조에 따라 동 위원회가 경영승계계획 적정성과 대표이사 후보자 선발 및 자격요건 충족 여부 등을 검증한 결과를 연 1 회 이사회에 보고함에 있어 실무 지원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대표이사 승계업무 지원부서 운영현황>

- 부서명 : 신한리더십센터
- 직원수 : 총 10명
- 운영내역

일자	운영내역	비고
2024.3.4	2023년 자회사 CEO 리더십 평가 실무 지원 2024년 경영진 리더십 평가체계 수립 실무 지원 2024년 자회사 경영승계 육성후보군 선정 실무 지원	제1회 자회사최고경영자 후보추천위원회

2024.4.26	2023년 자회사 경영승계 육성후보군 평가 심의 실무 지원	제2회 자회사최고경영자 후보추천위원회
2024.7.26	자회사최고경영자후보추천위원회 규정 개정 실무 지원	제3회 자회사최고경영자 후보추천위원회
2024.9.10	자회사 경영승계계획 개정 실무 지원 자회사 경영승계계획 적정성 점검 실무 지원 자회사 대표이사 승계후보군 선정 실무 지원 자회사 대표이사 후보 심의 실무 지원	제4회 자회사최고경영자 후보추천위원회
2024.10.10	자회사 대표이사 후보 심의 실무 지원	제5회 자회사최고경영자 후보추천위원회
2024.11.7	자회사 대표이사 후보 심의 실무 지원	제6회 자회사최고경영자 후보추천위원회
2024.11.15	2024년 자회사 대표이사 리더십 평가 실무 지원 자회사 대표이사 후보 심의 실무 지원	제7회 자회사최고경영자 후보추천위원회
2024.12.3	자회사 대표이사 후보 심의 실무 지원	제8회 자회사최고경영자 후보추천위원회
2024.12.5	자회사 대표이사 후보 심의 실무 지원	제9회 자회사최고경영자 후보추천위원회

6. 신한금융지주회사 자회사최고경영자후보추천위원회

가. 역할

신한금융지주회사는 자회사 대표이사의 자격요건 설정, 대표이사 후보자 추천, 자회사 CEO 리더십 평가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해 대표이사 회장을 포함한 3인 이상 5인 이내의 이사(총 위원의 과반수는 사외이사)로 자회사최고경영자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하여 상시 운영하고 있습니다.

나. 구성

자회사최고경영자후보추천위원회는 위원장 포함 총 5명으로 구성되고 있습니다. 2024년 3월 26일에 대표이사 회장과 4명의 사외이사를 위원으로 선임하였으며, 자회사최고경영자후보추천위원회규정 제4조에 따라 대표이사 회장이 위원장을 담당합니다.

<2024.3 정기 주주총회 이전>

성명	상임/사외/비상임	직위	선임일	임기만료일
진옥동	사내	위원장	2023.3.23	2024.3.26
성재호	사외	위원	2023.3.23	2024.3.26
이윤재	사외	위원	2023.3.23	2024.3.26
곽수근	사외	위원	2023.3.23	2024.3.26
배훈	사외	위원	2023.3.23	2024.3.26

<2024.3 정기 주주총회 이후>

성명	상임/사외/비상임	직위 등	선임일	임기만료일
진옥동	사내	위원장	2024.3.26	2025.3월 정기 주주총회일
곽수근	사외	위원	2024.3.26	2025.3월 정기 주주총회일
배훈	사외	위원	2024.3.26	2025.3월 정기 주주총회일
윤재원	사외	위원	2024.3.26	2025.3월 정기 주주총회일
이용국	사외	위원	2024.3.26	2025.3월 정기 주주총회일

다. 활동내역 및 평가

(1) 활동내역 개요

2024년 자회사최고경영자후보추천위원회는 총 9회 개최되었으며, 기간 중 부의된 안건은 총 16개로 결의안건은 14개, 보고안건은 2개입니다. 14개의 결의안건은 모두 가결되었습니다.

2024년 9월부터 12월까지 제4~9회의 여섯 차례 자회사최고경영자후보추천위원회를 통해 신한은행, 신한카드, 신한투자증권, 신한라이프, 신한캐피탈, 제주은행, 신한저축은행, 신한자산신탁, 신한DS, 신한펀드파트너스, 신한리츠운용, 신한벤처투자, 신한EZ손해보험 등 총 13개사의 대표이사 후보를 추천하였습니다.

(2) 회의 개최내역

(가) 2024년도 제1회 자회사최고경영자후보추천위원회 : 2024.3.4 (월)

[안건통지일 : 2024.2.26 (월)]

항목	이사별 활동내역					가결여부
1. 이사 성명	진옥동	성재호	이윤재	곽수근	배훈	
2. 참석 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보고안건 없음)	해당사항 없음					
4. 결의안건						
가. 2023년 자회사 CEO 리더십 평가의 건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나. 2024년 자회사 CEO 리더십 평가체계 수립의 건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다. 2024년 자회사 경영승계 육성후보군 선정의 건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결의 제1호 안건으로 2023년 자회사 CEO리더십 평가의 건을 심의 의결하였으며, 결의 제2호 안건으로 2024년 자회사 CEO 리더십 평가체계 수립의 건을 심의 · 의결하였습니다.

결의 제3호 안건으로는 2024년 자회사 경영승계 육성후보군 선정의 건을 심의하여, 자회사 경영승계계획 적용 대상 자회사의 부사장 및 부행장 이상 경영진 전원(총 34명)을 2024년 자회사 경영승계 육성후보군으로 선정하였습니다.

(나) 2024년도 제2회 자회사최고경영자후보추천위원회 : 2024.4.26 (금)

[안건통지일 : 2024.4.19 (금)]

항목	이사별 활동내역					가결여부
1. 이사 성명	진옥동	곽수근	배훈	윤재원	이용국	
2. 참석 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가. 자회사 경영승계계획 개선(안)		특이 의견 없음				
4. 결의안건						
가. 2023년 자회사 경영승계 육성후보군 평가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보고안건으로 2023년 발표된 '은행지주 · 은행의 지배구조에 관한 모범관행'과 2023년 이후 자회사최고경영자후보추천위원회에서 내부적으로 논의해왔던 개선 방향성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자회사 경영승계계획 개선안 등을 위원회에 보고하였습니다. 위원회는 경영승계절차의 운영 원칙과 기본사항을 규정하는 '경영승계규정' 제정에 따른 자회사 경영승계절차 관련 내부 규정 체계 정비, 내 · 외부 후보를 포함한 승계후보군 정기 선정 절차 운영, 은행 자회사 경영승계 관련 자회사 임원후보추천위원회의 역할 확대 등 자회사 경영승계계획을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였으며, 후속 논의를 통해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도출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결의안건으로 2023년 자회사 경영승계 육성후보군 평가 심의의 건을 통해 전년도 자회사 경영승계 육성후보군에 대한 평가결과를 확정하였습니다. 육성후보군에 대한 평가는 후보의 소속회사 보수위원회에서 확정된 성과평가 결과, 다면역량평가, 자회사 CEO로서의 적합성에 대한 소속회사 CEO의 서술형 평가 등으로 구성됩니다.

(다) 2024년도 제3회 자회사최고경영자후보추천위원회 : 2024.7.26 (금)

[안건통지일 : 2024.7.19 (금)]

항목	이사별 활동내역					가결여부
1. 이사 성명	진옥동	곽수근	배훈	윤재원	이용국	
2. 참석 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가. 자회사최고경영자후보추천위원회규정 개정안 보고		특이 의견 없음				
4. 결의안건						
결의안건 없음		-	-	-	-	

보고안건으로 제2회 자회사최고경영자후보추천위원회에 보고된 자회사 경영승계계획 개선(안)을 바탕으로 마련된 자회사최고경영자후보추천위원회규정 개정(안)을 위원회에 보고하였습니다. 규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승계후보군 정기 선정 및 관리 프로세스 도입, 후보군 선정 · 관리부터 최종후보 추천으로 이어지는 승계절차 전반의 명확화, 경영승계규정과 연계한 조문 체계 정비 등 입니다.

자회사최고경영자후보추천위원회규정 개정(안)은 자회사최고경영자후보추천위원회에 원안대로 접수되었으며, 동일자 개최된 이사회에서 결의되었습니다.

(라) 2024년도 제4회 자회사최고경영자후보추천위원회 : 2024.9.10 (화)

[안건통지일 : 2024.9.3 (목)]

항목	이사별 활동내역					가결여부
----	----------	--	--	--	--	------

1. 이사 성명	진옥동	곽수근	배훈	윤재원	이용국	
2. 참석 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가. 2023년 자회사 CEO 리더십 평가체계 변경 보고	특이 의견 없음					
4. 결의안건						
가. 자회사 경영승계계획 개정의 건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나. 자회사 경영승계계획 적정성 점검의 건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다. 자회사 대표이사 승계후보군 선정의 건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라. 자회사 대표이사 후보 추천의 건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결의 제1호 안건으로 자회사 경영승계계획 개정의 건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위원회는 2023년부터 논의해 온 자회사 경영승계 계획의 개선 방향성과 ‘은행지주·은행의 지배구조에 관한 모범관행’을 종합하여 자회사 경영승계계획 개선 방향성을 도출하였으며, 앞서 7월 제·개정된 ‘경영승계규정’ 및 ‘자회사최고경영자후보추천위원회규정’과의 정합성을 고려하여 자회사 경영승계계획을 개정하였습니다.

결의 제2호 안건으로 그룹 경영승계계획 적정성 점검의 건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위원회는 제1호 안건을 통해 개정된 자회사 경영승계계획이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 및 이를 영한 당사 지배구조내부규범 등 내·외규를 충실히 반영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하고, 자회사 경영승계계획에서 정한 절차가 적정하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확인하였습니다. 위원회는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자회사 최고경영자 경영승계계획이 안정적인 경영 승계를 통한 경영의 연속성 확보 및 자회사의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목적에 부합하여 적정하게 수립되어 있다”고 판단하였으며, 이를 동일자 개최된 2024년도 제7회 임시이사회에 보고하였습니다.

결의 제3호 안건으로 자회사 대표이사 회장 승계후보군 선정의 건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위원회는 개정된 자회사 경영승계계획을 바탕으로 외부후보군 33명을 포함하여 총 100명의 자회사 대표이사 승계후보군을 선정하였습니다.

결의 제4호 안건으로 자회사 대표이사 후보 추천의 건을 부의하였으며, 이를 통해 자회사 경영승계계획에 따른 자회사 승계절차를 개시하였습니다.

(마) 2024년도 제5회 자회사최고경영자후보추천위원회 : 2024.10.10 (목)

[안건통지일 : 2024.10.3 (목)]

항목	이사별 활동내역					가결여부
1. 이사 성명	진옥동	곽수근	배훈	윤재원	이용국	
2. 참석 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보고안건 없음)		해당사항 없음				
4. 결의안건						
가. 자회사 대표이사 후보 추천의 건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결의안건으로 자회사 대표이사 후보 추천의 건을 부의하여, 신한은행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서 제안한 ‘신한은행장 자격 요건(안)’을 접수하고, 이를 참고하여 신한은행장에 대한 ‘전략적 요구역량’을 설정하여 신한은행장 후보에 대한 심의기준을 확정 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제4회 자회사최고경영자후보추천위원회에서 선정된 승계후보군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여 신한은행장 압축후보군(1차)를 선정 하였습니다.

(바) 2024년도 제6회 자회사최고경영자후보추천위원회 : 2024.11.7 (목)

[안건통지일 : 2024.10.31 (목)]

항목	이사별 활동내역					가결여부
1. 이사 성명	진옥동	곽수근	배훈	윤재원	이용국	
2. 참석 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보고안건 없음)		해당사항 없음				
4. 의결안건						
가. 자회사 대표이사 후보 추천의 건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결의안건으로 자회사 대표이사 후보 추천의 건을 부의하여, 신한은행장 압축후보군(1차)에 대한 추가 심의 진행 후 신한은행장 압축후보군(2차)을 선정하였으며, 제주은행 임원후보추천위원회가 제출한 제주은행장 자격요건을 접수하고, 이를 참고하여 제주은행장 후보 심의기준을 확정하였습니다. 한편 신한투자증권 김상태 대표이사 사장이 사임 의사를 표시함에 따라 경영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자회사 경영승계계획 상 비상승계계획에 따라 가속승계절차를 개시하였습니다.

(사) 2024년도 제7회 자회사최고경영자후보추천위원회 : 2024.11.15 (금)

[안건통지일 : 2024.11.8 (금)]

항목	이사별 활동내역					가결여부
1. 이사 성명	진옥동	곽수근	배훈	윤재원	이용국	
2. 참석 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보고안건 없음)		해당사항 없음				
4. 의결안건						
가. 2024년 자회사 대표이사 리더십 평가의 건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나. 자회사 대표이사 후보 추천의 건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결의 제1호 안건으로 2024년도 제1회 자회사최고경영자후보추천위원회에서 수립한 '자회사 CEO 리더십 평가체계'에 따라 2024년 자회사 대표이사 리더십 평가의 건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결의 제2호 안건으로 자회사 대표이사 후보 추천의 건을 부의하여, 신한은행장 압축후보군(3차)를 선정하였으며, 2024년말부터 2025년초까지 임기가 도래하는 자회사 및 신한투자증권의 대표이사 압축후보군을 선정하였습니다.

(아) 2024년도 제8회 자회사최고경영자후보추천위원회 : 2024.12.3 (화)

※ 자회사최고경영자후보추천위원회규정 제5조에 따라 안건(소집)통지 생략

항목	이사별 활동내역						가결여부
1. 이사 성명	진옥동	곽수근	배훈	윤재원	이용국		
2. 참석 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보고안건 없음)		해당사항 없음					
4. 의결안건							
가. 자회사 대표이사 후보 추천의 건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결의안건으로 자회사 대표이사 후보 추천의 건을 부의하여, 신한카드 압축후보군을 선정하였습니다.

(자) 2024년도 제9회 자회사최고경영자후보추천위원회 : 2024.12.5 (목)

[안건통지일 : 2024.11.28 (화)]

항목	이사별 활동내역					가결여부
1. 이사 성명	진옥동	곽수근	배훈	윤재원	이용국	
2. 참석 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보고안건 없음)		해당사항 없음				
4. 의결안건						
가. 자회사 대표이사 후보 추천의 건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결의안건으로 자회사 대표이사 후보 추천의 건을 부의하여, 9월 10일 자회사 경영승계절차 개시 이후 위원회를 통하여 선정된 자회사 별 최종 압축후보군에 대하여 자회사 경영승계계획에 따른 ‘그룹 공통 자격요건’과 회사별 ‘전략적 요구역량’을 기준으로 후보 심의를 진행하였고, 회사별 대표이사 최종 후보자를 추천하였습니다. 대표이사 후보 추천 대상 자회사는 신한은행, 신한카드, 신한투자증권, 신한라이프, 신한캐피탈, 제주은행, 신한저축은행, 신한자산신탁, 신한DS, 신한펀드파트너스, 신한리츠운용, 신한벤처투자, 신한 EZ손해 보험 등 총13개사입니다.

(3) 평가

자회사최고경영자후보추천위원회는 신한금융지주회사 지배구조 내부규범 제8조(이사회운영실적 등의 평가)에 의거 연1회 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결의 및 보고 안건의 적정성, 경영정보의 제공수준, 위원회의 역할 등에 대하여 평가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 운영에 참고하고 있습니다.

2024년도 자회사최고경영자후보추천위원회 평가 결과 위원회의 운영 및 역할 수행 정도는 우수한 수준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7. 감사위원회

가. 역할(권한과 책임)

(1) 총괄

당사 감사위원회는 경영진이 합리적 경영판단을 할 수 있도록 경영진의 업무처리에 대해 적법성 감독뿐 아니라 적정성 감독을 수행합니다. 동 업무 수행을 위해 구체적으로 회사 내 모든 정보에 대한 요구권, 관계자의 출석 및 답변 요구, 실사, 감사결과 위법·부당한 사항에 대한 시정과 관련징계 요구, 기타 감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의 요구 등의 방법으로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감사위원회는 경영전문가, 회계전문가, 리스크전문가 등으로 구성하고 필요시에는 외부전문가의 조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합니다.

(2) 구체적 역할

(가) 이사 및 집행임원의 업무집행 감독

① 이사회 등 안건에 대한 감독

당사 감사위원회는 이사의 직무집행을 감사하고, 주주총회 안건에 대해 조사를 실시하여 주주총회에 그 의견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이에 따라 감사위원회는 정기 주주총회에 부의될 감사보고서 등에 대하여 2024년 2월 27일 의결하고, 2024년 3월 28일 정기 주주총회 부의안에 대하여 의결을 거쳐 주주총회에 감사위원회의 의견을 진술하였습니다.

② 경영진의 업무집행에 대한 감독

당사 감사위원회는 경영진에게 업무집행에 대해 업무보고 및 자료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고 관련 법률 및 정관에 반하는 업무집행에 대해 처리 중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24년도 중 고유재산 시재 및 재무감사, 준법, 업무, 경영, IT 감사등 일상감사 및 수시감사를 실시하였으며, 감사결과에 따라 각 해당 담당자에게 개선을 요청하였으며 개선내용에 대해 사후관리를 진행하였습니다.

(나) 외부감사인 선임 승인 및 감독

감사위원회는 회사의 외부감사인 선임에 대한 승인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2024년 5월 14일 개최된 제2차 정기 감사위원회에서 전기 외부감사인의 감사활동에 대한 평가에 대해 의결하고, 2024년 10월 18일 개최된 제3차 임시 감사위원회에서 외부감사인 선정기준 및 절차를 의결하였으며, 이후 선정기준에 따라 2024년 11월 19일 제4차 정기 감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외부감사인으로 삼일회계법인을 선정하였습니다.

(다) 상임감사위원 관련 사항

감사위원회는 감사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사부서의 부서장에게 위임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감사부서의 부서장은 위임받은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또한, 감사인은 매 감사 종료 후 감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정기적으로 감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 연간감사계획에 의한 세부감사계획, 실시, 결과보고 등 내부감사업무 수행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
- 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확인
- 감사실시 등 내부감사 업무 통할
- 기타 감사위원회의 결의로 위임한 사항

(라) 재무제표 검토 등

감사위원회는 회계감사를 위하여 회사로부터 받은 재무제표·연결재무제표 및 동 부속명세서를 감사부서에 위임하여 회계감사기준 등에 따라 검토하고, 감사의견을 표명한 감사보고서를 작성합니다. 검토 결과 2024년도 재무제표 및 영업보고서 등은 관계법령 및 정관에 따라 재무상태, 경영성과 및 회사의 상황을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표이사는 사업연도 마다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서를 작성하여 이사회 및 감사위원회에게 대면보고를 하고 있으며, 감사위원회는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하여 독립적인 관점에서 평가를 수행하고, 평가 결과를 문서로 작성하여 이사회에 사업연도마다 보고하고 있습니다.

(마) 기타

감사위원회는 감사인(감사부서장)으로부터 정기적으로 감사결과를 보고 받고 있으며 준법감시인으로부터 컴플라이언스 모니터링 시스템에 의한 주기적인 점검 및 상시 감시업무에 대해 그 처리결과를 보고 받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감사인(감사 부서장)은 내부통제시스템 평가보고를 포함한 세부 감사실시 내역 및 감사결과, 내부감사업무 수행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 감사결과 조치사항 등을 감사위원회에 정기적으로 보고하고 있으며, 준법감시인은 컴플라이언스 모니터링 시스템에 의한 주기적인 점검 및 상시 감시업무, 기타 관계법령 등에서 정한 업무에 대해 감사위원회에 정기적으로 보고하고 있습니다.

나. 구성

(1) 총괄

당사 감사위원회는 3인 이상 5인 이내의 이사로 구성되며, 위원 중 3분의 2 이상은 사외이사로 구성한다는 감사위원회 규정에 따라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원회의 위원 중 1인 이상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이어야 하며 위원의 임기는 3년 이내로 하고 있습니다.

2024년말 기준 당사의 감사위원회는 총 3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 구성원

성명	상임/사외/비상임	직위	선임일 (최초선임일/횟수)	임기 만료일
이재은	사외이사/비상임	위원장	2024.03.28 (2021.01.15/3회)	2025년 개최 정기 주총
박영규	사외이사/비상임	위원	2024.03.28 (2021.01.15/3회)	2025년 개최 정기 주총

조성부	사외이사/비상임	위원	2024.03.28 (2024.03.28/1회)	2025년 개최 정기 주총
조세훈	사외이사/비상임	위원	2023.03.22 (2020.03.24/3회)	2024.03.28

다. 활동내역 및 평가

(1) 활동내역 개요

2024년에는 모든 감사위원의 활발한 참여 하에 총 8회(정기 4회, 임시 4회)의 감사위원회가 개최되어, 결의안건에 대한 심의 및 의결을 수행하였으며, 경영진의 업무처리에 대한 적법성 및 적정성에 대해 보고 받고 점검하였습니다.

감사위원회는 개최 전 의안을 감사위원들에게 공유하여 사전에 검토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안건에 대한 사전 설명을 통해 감사위원들의 이해를 돕고 있어, 다양한 전문적 배경을 지닌 위원들이 감사위원회에서 활발한 토의가 가능하였으며, 그 결과 지난해 12건의 결의안건을 가결하고, 20건의 보고안건을 검토하였습니다.

(2) 회의 개최내역

제29기 제1차 임시 감사위원회 : 2024년 2월 14일 오후 3:00 ~ 3:42

항목	위원별 활동내역			가결여부
1. 감사위원 성명	조세훈	이재은	박영규	-
2. 참석여부	참석	참석	참석	-
3. 보고안건				
1. 2023년도 경영진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				
2. 감사업무 보고				
4. 결의안건				
제1호 2024년 감사계획 승인의 건	찬성	찬성	찬성	가결
제2호 감사부서장 업무성과 평가의 건	찬성	찬성	찬성	가결

제29기 제1차 정기 감사위원회 : 2024년 2월 27일 오후 3:00 ~ 3:48

항목	위원별 활동내역			가결여부
1. 감사위원 성명	조세훈	이재은	박영규	-
2. 참석여부	참석	참석	참석	-
3. 보고안건				
1.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에 대한 내부감사부서 평가 결과 2. 외부감사인인 재무제표 관련 보고(삼정회계법인) 3. 결산감사업무 보고 4. 컴플라이언스 중요사항 보고				
4. 결의안건				
제1호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에 대한 감사위원회 평가보고서	찬성	찬성	찬성	가결
제2호 감사보고서	찬성	찬성	찬성	가결

제29기 제2차 임시 감사위원회 : 2024년 3월 28일 오후 4:00 ~ 4:21

항목	위원별 활동내역			가결여부
1. 감사위원 성명	조세훈	이재은	박영규	-
2. 참석여부	참석	참석	참석	-
3. 보고안건				
1. 감사업무 보고				
4. 결의안건				
제1호 내부통제시스템에 대한 평가보고서	찬성	찬성	찬성	가결
제2호 제28기 정기주주총회 부의안에 대한 의견 진술의 건	찬성	찬성	찬성	가결

제29기 제2차 정기 감사위원회 : 2024년 5월 14일 오후 2:20 ~ 3:07

항목	위원별 활동내역			가결여부
1. 감사위원 성명	이재은	박영규	조성부	-
2. 참석여부	참석	참석	참석	-
3. 보고안건				

1. 2024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계획 보고 2. 외부감사인의 1분기 재무제표 감사결과 및 2024년 감사계획 보고(삼덕회계법인) 3. 회계감사인의 집합투자재산 회계감사 통보내용 보고 4. 감사업무 보고 5. 컴플라이언스 중요사항 보고				
4. 결의안건				
제1호 감사위원장 선임의 건 ^{주1)}	-주)	찬성	찬성	가결
제2호 전기 외부감사인의 감사활동에 대한 평가	찬성	찬성	찬성	가결

주) 본인 심의 의결권 제한

주1) 사외이사 이재은 위원장으로 선임

제29기 제3차 정기 감사위원회 : 2024년 8월 26일 오후 3:00 ~ 3:34

항목	위원별 활동내역			가결여부
1. 감사위원 성명	이재은	박영규	조성부	-
2. 참석여부	참석	참석	참석	-
3. 보고안건				
1. 외부감사인의 2024년 반기 재무제표 감사결과 보고(삼덕회계법인) 2. 컴플라이언스 중요사항 보고 3. 비감사 서비스제공 계약 보고 4. 감사업무 보고				

제29기 제3차 임시 감사위원회 : 2024년 10월 18일 오후 3:00 ~ 3:32

항목	위원별 활동내역			가결여부
1. 감사위원 성명	이재은	박영규	조성부	-
2. 참석여부	참석	참석	참석	-
3. 결의안건				
제1호 외부감사인 선정기준 및 절차의 승인	찬성	찬성	찬성	가결

제29기 제4차 정기 감사위원회 : 2024년 11월 19일 오후 2:30 ~ 3:14

항목	위원별 활동내역			가결여부
1. 감사위원 성명	이재은	박영규	조성부	-
2. 참석여부	참석	참석	참석	-
3. 보고안건				

1. 2024년 내부회계관리제도 중간평가 결과 보고 2. 외부감사인 3분기 재무제표 감사결과 (삼덕회계법인) 3. 컴플라이언스 중요사항 보고 4. 감사업무 보고				
4. 결의안건				
제1호 외부감사인 선정의 건 ^{주)}	찬성	찬성	찬성	가결

주) 외부감사인으로 삼일회계법인 선정

제29기 제4차 임시 감사위원회 : 2024년 12월 19일 오전 10:23 ~ 10:35

항목	위원별 활동내역			가결여부
1. 감사위원 성명	이재은	박영규	조성부	-
2. 참석여부	참석	참석	참석	-
3. 결의안건				
제1호 내부회계관리규정 개정 승인의 건	찬성	찬성	찬성	가결
제2호 신문고 운영 지침 개정의 건	찬성	찬성	찬성	가결

(3) 평가

감사위원회는 지배구조 내부규범 제9조(이사회내위원회) 제4항에 의거 연1회 이사회내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결의 및 보고 안건의 적정성, 경영정보의 제공수준, 이사회내위원회의 역할 등에 대하여 평가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 운영에 참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24년도 이사회 및 이사회내위원회에 대한 평가를 2025년 1월에 외부업체에 위탁하여 실시하였습니다. 평가 등급은 5등급으로 구분되며, 감사위원회는 동 평가에서 5등급(매우 적정)을 받았습니다.

구체적 평가항목에는 위원회 개최 빈도의 적정성, 위원회 회의시간의 적정성, 위원회 안건의 범위·깊이 적정성, 당사로부터의 적기에 충분한 정보수령 여부 등이 포함됩니다. 추후 당사는 매년 초 전년도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실태를 점검하는 평가를 정기적으로 수행할 계획입니다.

라. 감사보조조직 등

감사보조조직으로 감사위원회 산하 감사실이 있으며 2024년 12월말 기준으로 감사부서장(실장)외 2인의 감사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일자	대상	보고 및 지원내용
2024.02.14	감사위원회	2023년도 경영진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 감사업무 보고 2024년 감사계획 보고 감사부서장 업무성과 평가의 보고
2024.02.27	감사위원회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에 대한 내부감사부서 평가 결과 보고 외부감사인의 재무제표 관련 보고 결산감사업무 보고 감사업무 보고 컴플라이언스 중요사항 보고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에 대한 감사위원회 평가보고서 작성 보고 감사보고서 작성 보고
2024.03.28	감사위원회	내부통제시스템에 대한 평가보고서 작성 제28기 정기주주총회 부의안에 대한 의견 진술 작성 감사업무 보고
2024.05.14	감사위원회	감사위원장 선임 지원 전기 외부감사인의 감사활동에 대한 평가 2024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용계획 보고 외부감사인의 1분기 재무제표 감사결과 및 2024년 감사계획 보고 회계감사인의 집합투자재산 회계감사 통보내용 보고 감사업무 보고 컴플라이언스 중요사항 보고
2024.08.26	감사위원회	외부감사인의 2024년 반기 재무제표 감사결과 보고 비감사 서비스제공 계약 보고 컴플라이언스 중요사항 보고 감사업무 보고
2024.10.18	감사위원회	외부감사인 선정기준 및 절차 보고

2024.11.19	감사위원회	2024년 내부회계관리제도 중간평가 결과 보고 외부감사인의 3분기 재무제표 감사결과 보고 컴플라이언스 중요사항 보고 감사업무 보고 외부감사인 선정의 건 보고
2024.12.19	감사위원회	내부회계관리규정 개정의 건 보고 신문고 운영 지침 개정의 건 보고

8. 위험관리위원회

가. 역할(권한과 책임)

(1) 총괄

위험관리위원회는 이사회의 위임을 받아 회사의 고유재산과 집합투자재산의 운용 및 기타 경영상 발생할 수 있는 제반 리스크의 효율적인 관리 감독과 그에 따른 제반 정책의 심의·의결을 수행하며, 총 위원의 과반수를 사외이사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2) 구체적 역할

(가) 위험관리의 기본방침 및 전략 수립

당사 리스크관리의 기본 방침(철학)은 자산의 건전성을 유지하고 고객의 이익을 보호하며 회사경영의 안정성 및 효율성을 제고함에 있어 리스크와 수익의 균형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당사 위험관리위원회는 위험관리규정에 명시된 리스크관리 철학을 바탕으로 회사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인식·측정·감시·통제하는 등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는 체계와 전략을 수립하고 이를 종합적으로 관리합니다.

(나) 부담가능한 위험수준 결정

당사 위험관리위원회는 회사의 리스크를 적정수준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최소영업자본액비율 및 리스크 유형별 한도를 설정하고 있으며, 그 관리 현황과 리스크관리 실무를 담당하는 리스크관리실무위원회 주요 의결사항을 매 분기 보고받고 있습니다.

(다) 적정투자한도 및 손실허용한도 승인

당사 위험관리위원회는 회사의 적정 투자한도 및 손실 허용한도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라) 위험관리기준의 제정 및 변경

회사의 고유재산과 집합투자재산의 운용 및 기타 경영상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리스크를

인식·측정·감시·통제하는 데 필요한 제반 원칙과 내용을 규정한 「고유자산 리스크관리규정」과 「집합투자자산 리스크관리업무규정」 등 리스크 관련 주요규정의 제정 및 변경 사항을 심의·의결하고 있습니다.

(마) 기타

당사 위험관리위원회는 그 외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심의·결의하고 결의된 사항을 이사회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나. 구성

(1) 총괄

당사 위험관리위원회는 위험관리위원회규정에 따라 2인 이상 5인 이내의 이사로 구성하되, 총 위원의 과반수를 사외이사로 구성하고 있으며, 이 경우 위원 중 1인 이상은 금융회사 또는 상법상 회사의 금융, 회계 또는 재무 분야에서 종사한 경험이 있는 자로 하고 있습니다. 2024년도말 기준으로 당사 위험관리위원회는 총 3명중 2명이 사외이사로 구성되어 회사 경영전반에 걸친 리스크관련 사안에 대해 실질적으로 견제하고 있으며, 금융, 회계에 대한 전문성을 지닌 2명의 사외이사를 선임하여 전문성에 기반한 견제 및 심의, 결의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2) 구성원

성명	상임/사외/비상임	직위	선임일 (최초선임일/횟수)	임기 만료일
박영규	사외이사	위원장	2024.03.28 (2021.01.15/4회)	2025년 개최 정기 주총
이재은	사외이사	위원	2024.03.28 (2024.03.28/1회)	2025년 개최 정기 주총
조재민	상임	위원(대표이사)	2024.01.01 (2024.01.01/1회)	2025.12.31
조세훈	사외이사	위원	2023.03.00 (2020.03.24/3회)	2024.03.28

다. 활동내역 및 평가

(1) 활동내역 개요

당사 위험관리위원회는 분기 1회 소집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2024년에는 총 4회의 위험관리위원회가 개최되었고, 위험관리위원회 위원 전원이 참석하였습니다.

(2) 회의 개최내역

제1차 정기 위험관리위원회 : 2024년 3월 28일 [안건 통지일 : 2024년 3월 22일]

항목	위원별 활동내역			가결여부
1. 위원 성명	조재민	조세훈	박영규	-
2. 참석여부	참석	참석	참석	-
3. 보고안건				
1. 고유재산 위험분석 보고				
2. 리스크관리실무위원회 주요 결의 및 보고사항 보고				
4. 심의안건				
1. 시딩투자 총한도 설정 심의				
2. 최소영업자본액비율한도 설정 심의				

제2차 정기 위험관리위원회 : 2024년 5월 14일 [안건 통지일 : 2024년 5월 10일]

항목	위원별 활동내역			가결여부
1. 위원 성명	조재민	박영규	이재은	-
2. 참석여부	참석	참석	참석	-
3. 보고안건				
1. 고유재산 위험분석 보고				
2. 리스크관리실무위원회 주요 결의 및 보고사항 보고				
4. 결의안건				
1. 위험관리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주1)}	찬성	- ^{주)}	찬성	가결
2. 고유재산 리스크관리규정 개정의 건	찬성	찬성	찬성	가결

주) 본인 심의 의결권 제한

주1) 박영규 사외이사 위원장으로 선임

제3차 정기 위험관리위원회 : 2024년 7월 24일 [안건 통지일 : 2024년 7월 22일]

항목	위원별 활동내역			가결여부
1. 위원 성명	조재민	박영규	이재은	-
2. 참석여부	참석	참석	참석	-
3. 보고안건				
1. 고유재산 위험분석 보고				
2. 리스크관리실무위원회 주요 결의 및 보고사항 보고				

제4차 정기 위험관리위원회 : 2024년 11월 19일 [안건 통지일 : 2024년 11월 15일]

항목	위원별 활동내역			가결여부
1. 위원 성명	조재민	박영규	이재은	-
2. 참석여부	참석	참석	참석	-
3. 보고안건				
1. 고유재산 위험분석 보고				
2. 리스크관리실무위원회 주요 결의 및 보고사항 보고				
4. 결의안건				
1. 고유재산 리스크관리규정의 개정에 관한 건	찬성	찬성	찬성	가결
2. 집합투자재산 리스크관리업무규정 개정의 건	찬성	찬성	찬성	가결

(3) 평가

위험관리위원회는 지배구조내부규범 제9조(이사회내위원회) 제4항에 의거 연1회 이사회내 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결의 및 보고 안건의 적정성, 경영정보의 제공수준, 이사회내위원회의 역할 등에 대하여 평가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 운영에 참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024년도 이사회 및 이사회내위원회에 대한 평가는 2025년 1월에 외부업체에 위탁하여 실시하였습니다. 평가 등급은 5등급으로 구분되며, 위험관리위원회는 동 평가에서 5등급(매우 적정)을 받았습니다. 구체적 평가항목에는 위원회 개최 빈도의 적정성, 위원회 회의 시간의 적정성, 위원회 안건의 범위·깊이 적정성, 당사로부터의 적기에 충분한 정보수령 여부 등이 포함됩니다. 추후 당사는 매년 초 전년도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실태를 점검하는 평가를 정기적으로 수행할 계획입니다.

9. 내부통제위원회

가. 역할(권한과 책임)

(1) 총괄

당사 내부통제위원회는 임원 등이 내부통제 관리조치와 보고를 적절하게 수행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평가하고 개선조치를 요구하는 등 이사회의 대표이사 내부통제 총괄 관리의무 감독을 지원합니다. 또한 회사의 내부통제 기본방침과 전략수립, 준법정신을 중시하는 조직문화의 정착방안 등 제반 사항을 심의·의결합니다.

(2) 구체적 역할

(가) 임원·대표이사 (총괄)관리조치 점검·평가·개선조치 요구

내부통제위원회는 임원과 대표이사가 책무구조도에서 부여한 자신의 책무와 관련한 이행 여부 점검, 미흡사항의 시정·개선, 임직원의 교육·연수·훈련 등 총괄적인 관리의무를 다 하고 있는지 평가하고 필요 시 개선조치를 요구함으로써 이사회의 충실한 내부통제 감독 수행을 지원합니다.

(나) 내부통제의 기본방침 및 전략수립

내부통제위원회는 개정 지배구조법이 이사회에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 정책의 수립·감독 역할을 부여함에 따라 금융당국 검사방향 등을 고려, 당사 내부통제의 방향성과 전략을 심의·의결합니다.

(다) 임직원 직업윤리와 준법정신을 중시하는 조직문화의 정착방안 마련

내부통제위원회는 임직원이 업무수행 시 법규를 준수하고 경영을 건전하게 하며, 이해관계자 등을 보호하기 위한 윤리·준법 중시 조직문화의 정착방안을 심의·의결합니다.

(라) 지배구조내부규범 마련 및 변경, 내부통제기준 제·개정

내부통제위원회는 지배구조법 제22조의2에 따라 지배구조내부규범의 마련 및 변경, 내부

통제기준의 제·개정에 대해 심의·의결합니다.

(마) 기타

내부통제위원회는 금융위원회 등 외규에서 요구하는 사항, 타 규정 등에서 정하는 사항, 기타 이사회 또는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해 심의·의결합니다.

나. 구성

(1) 총괄

당사 내부통제위원회는 3인 이상 5인 이내의 이사로 구성되며, 위원의 과반수는 사외이사입니다. 위원은 최근 내부통제 관리감독 이슈 등을 고려하여 법률 전문가를 포함하여 선임하였습니다.

2024년말 기준 당사의 내부통제위원회는 총 3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 구성원

성명	상임/사외/비상임	직위	선임일 (최초선임일/횟수)	임기 만료일
신선경	사외이사/비상임	위원	2024.12.19. (2024.12.19/1회)	2026년 개최 정기 주총
조성부	사외이사/비상임	위원	2024.12.19. (2024.12.19/1회)	2025년 개최 정기 주총
고유선	기타비상무이사/비상임	위원	2024.12.19. (2024.12.19/1회)	2025.12.31.

* 위원장은 2025년 3월 4일 내부통제위원회에서 선임 예정

다. 활동 내역 및 평가

(1) 활동내역 개요

2024년 7월 3일 시행 개정 지배구조법에 따라 2024년 12월 19일 이사회 결의로 내부

통제위원회를 이사회 내 위원회로 신설하였습니다.

(2) 회의 개최내역

2024년 개최 회의는 없습니다.

(3) 평가

내부통제위원회는 지배구조 내부규범 제9조(이사회내위원회) 제4항에 의거 연1회 이사회 내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결의 및 보고 안건의 적정성, 경영정보의 제공수준, 이사회내위원회의 역할 등에 대하여 평가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 운영에 참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24년도 이사회 및 이사회내위원회에 대한 평가를 2025년 1월에 외부업체에 위탁하여 실시하였으나, 내부통제위원회는 2024년 12월 19일 이사회에서 신설된 위원회로 당해 개최된 바 없어 평가대상이 되지 않았습니다.

구체적 평가항목에는 위원회 개최 빈도의 적정성, 위원회 회의시간의 적정성, 위원회 안건의 범위·깊이 적정성, 당사로부터의 적기에 충분한 정보수령 여부 등이 포함됩니다. 추후 당사는 매년 초 전년도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실태를 점검하는 평가를 정기적으로 수행할 계획입니다.

9. 감독당국 권고사항 및 개선계획

당사는 2024년도에 감독당국으로부터 권고사항 및 개선계획을 요구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제2절] 보수체계 연차보고서

1. 보수위원회

가. 총괄

당사는 보수체계가 회사의 성과와 이에 따른 리스크 구조와 조화를 바탕으로 금융회사로서의 영속성에 문제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설계·운영되도록 하는 것을 철학으로 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보수위원회는 이사회내위원회로서 회사의 주요 보수정책을 상기 철학이 구현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끌 수 있도록 그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보수위원회 관련 내부규정으로 보수위원회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보수위원회는 당사 이사회규정 제 10 조 제 1 항을 그 근거로 하여 2015 년 3 월부터 운영되어왔습니다.

위원의 임기는 1 년을 원칙으로 하며, 사외이사인 위원은 연속하여 2 년을 초과 재임할 수 없습니다. 다만, 임기만료 시점의 불일치, 재임 제한시 위원회 구성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보수위원회규정 제 9 조에 의거하여 위원회의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한 의사록을 작성 보존토록 하고 있습니다.

나. 구성

(1) 총괄

보수위원회의 충실한 역할 구현을 위해 당사 보수위원회규정 제 3 조 및 제 4 조에 의거 2 인 이상 5 인 이내의 이사로 구성하되 사외이사인 위원을 위원장으로 하고 총 위원의 과반수를 사외이사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024 년 말 기준으로 당사의 보수위원회는 총 3 인(박영규, 조성부, 고유선)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중 2 인의 위원이 사외이사이고, 박영규 사외이사가 위원장으로 있어 보수위원회 구성의 독립성 요건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균관대학교 경영학과 교수인 박영규 사외이사는 금융전문가로서 보수 관련 재무적 내용 및 회사의 리스크 관리 측면이 심도 있게 다루어 질 수 있는 구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2) 구성원

성명	상임/사외/비상임	직위	선임일 (최초선임일/횟수)	임기 만료일
박영규	사외이사	위원장	2024.03.28 (2022.03.23/3회)	2025 개최 정기 주주총회일
조성부	사외이사	위원	2024.03.28 (2024.03.28/1회)	2025 개최 정기 주주총회일
고유선	비상임	위원	2024.03.28 (2024.03.28/1회)	2025.12.31
조재민	상임	위원(대표이사)	2023.03.22 (2022.01.03/3회)	2024.03.28

다. 권한과 책임

(1) 총괄

보수위원회규정에 의거하여 당사 보수위원회는 해당 내용에 대한 전문적이고 독립적인 의사결정을 지원받기 위해 경영진 및 관계직원에 대해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필요시 회사에 외부기관의 자문용역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자회사의 성과보수체계를 결정하고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2) 보수의 결정 및 지급방식에 관한 사항 심의·의결

당사 보수위원회는 2024년 3월 28일 개최된 제 29 제 1 차 보수위원회에서 다음 내용을 심의하였습니다.

- 보수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 2023 년도 경영진 등 성과평가 및 연간성과급 지급(안) 확정 의 건
- 2024 년도 경영진 등 성과평가 및 보수체계(안) 확정 의 건
- 2024 년도 경영진 등 보수 및 수당 결정 의 건
- 2023 년도 보수체계 설계, 운영의 적정성 평가 의 건
- 2023 년도 보수체계 연차보고서의 작성 및 공시에 관한 사항

(3) 보수지급에 관한 연차보고서의 작성 및 공시에 관한 사항 심의·의결

당사는 2016 년 8 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보수위원회 규정에 보수체계 연차보고서의 작성 및 공시에 관한 사항을 결의 사항으로 포함하였습니다.

동 규정을 근거로 '2023 년도 보수체계 연차보고서 작성 및 공시에 관한 사항'을 2024 년 3 월 28 일 개최된 제 29 기 제 1 차 보수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였습니다.

2024 년도 보수체계 연차보고서는 2025 년 3 월 25 일 개최 예정인 보수위원회에서 심의 할 예정입니다.

특히 '보수체계 연차보고서'는 익년도 정기주주총회일 20 일전부터 당사 및 금융투자협회 등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시하거나, 성과보수에 관한 사항을 기간 이내에 공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성과보수를 의결하는 이사회 등이 개최된 날의 익월 15 일까지 추가로 공시할 계획입니다.

(4) 보수체계의 설계·운영 및 그 설계·운영의 적정성 평가 등에 관한 사항 심의·의결

당사 보수위원회는 2024 년 3 월 28 일 개최된 제 29 기 제 1 차 보수위원회에서 회사의 보수체계가 지배구조 내부규범을 준수하고 있는지를 점검하기 위해 다음의 주요 항목에 대해 운영 현황을 리뷰하고 적정 여부를 평가하였습니다.

- 보수위원회의 구성과 업무
- 보상제도의 설계 원칙 준수
- 변동보상 제도의 운영 및 성과평가 지표

보수위원회 구성의 적정성, 지배구조 내부규범에서 정한 주요 업무 수행 여부, 보상의 설계 원칙 준수 여부, 리스크 관리 및 준법감시, 성과보수제도 운영, 성과평가 지표 등을 집중 심의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당사는 보수위원회가 경영진으로부터 독립적으로 보수정책을 수립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으며, 당사 지배구조 내부규범에서 정한 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하고 있다는 것 등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5) 보수정책에 대한 의사결정 절차와 관련된 사항 심의·의결

당사는 2016년 8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개정된 보수위원회규정에 보수정책에 대한 의사결정과 관련된 소집방법, 결의방법, 주요현황을 포함하는 의사결정 절차 사항을 심의하였습니다.

보수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한 경우 수시로 소집될 수 있으며, 위원회를 소집할 때에는 위원장이 일시, 장소 및 목적사항을 회일 7일전에 각 위원에게 통지한다고 정하였습니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으며, 위원 전원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위원회의 결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하며 위원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며, 이 경우 당해 위원은 재적위원 수에 산입하지 아니하기로 하였습니다.

(6) 금융회사의 보수체계와 재무상황 및 위험과의 연계성 및 이 법규 준수 여부에 대한 상시점검

당사 보수위원회는 2024 년 3 월 28 일 개최된 제 29 기 제 1 차 보수위원회에서 상기 내용을 점검하였습니다.

현재 당사 임원 등의 보수체계가 회사 전체의 재무상황 특히 손익규모 및 자본의 규모 등에 비추어 매우 적절한 수준임을 확인하였으며, 위험수준에 대해서도 크게 노출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성과보수의 원칙, 설계 및 조정, 이연지급, 성과보수의 지급형태 및 방식, 현금보수 지급, 보수체계 재조정 등 보수체계 관련 법규 전반에 관해 내규 및 운용에서 미준수 사항이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7) 금융회사의 보수체계가 이 법규를 준수하고 있는지 등을 점검하기 위하여 연차보수평가를 경영진으로부터 독립적으로 실시

당사 보수위원회는 2024 년 3 월 28 일 개최된 제 29 기 제 1 차 보수위원회에서 연차보수평가를 독립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회사의 보수정책 및 운영이 보수체계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이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이 연차보수평가에 정확하게 반영되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8) 보수위원회 보수정책의 적용 범위

당사 보수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 하고 있습니다.

- 금융투자업무 담당자(지배구조 내부규범 제 2 조의 금융투자업무 담당자를 말한다. 이하 동일), 지주회사 보수위원회에서 심의한 회사의 경영진에 대한 평가 및 보수체계 결정에 관한 사항
- 금융투자업무 담당자, 지주회사 보수위원회에서 심의한 회사의 경영진에 대한 평가 및 보수안의 확정에 관한 사항
- 보수체계 연차보고서(지배구조 내부규범 제 2 조의 보수체계 연차보고서를 말한다)의 작성 및 공시에 관한 사항
- 금융투자업무 담당자, 지주회사 보수위원회에서 심의한 회사의 경영진에 관한 보수체계 설계·운영의 적정성 평가 등에 관한 사항

- 회사의 보수 정책에 대한 의사결정 절차와 관련된 사항
- 회사의 위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 또는 파생상품의 설계·판매·운용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 중 위원회의 심의·의결이 필요한 대상자의 결정
- 지주회사 보수위원회가 위원회에 위임한 사항
- 주주총회에서 위임 받은 범위 내 사외이사 보수의 결정
- 기타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9) 임원, 금융투자업무담당자 등에 대한 변동보수 대상자의 결정

당사는 2016년 3월 30일에 개최한 제1차 보수위원회에서 당시 지배구조 내부규범에서 정한 특정업무 종사자의 범위 및 변동보상 대상자를 경영진운영규정에 따른 경영진으로 하며, 추후 본부장 포함 여부를 검토하기로 하였습니다. 2016년 8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당사는 보수위원회규정 제6조에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서 정의하는 임원을 변동보상의 대상으로 우선 결정하기로 하였습니다.

해당 내용은 현재까지도 유효하게 적용되어 있으며 해당 범주에 따라 2024년 12월말 기준 임원은 대표이사 1명, 사장 1명, 부사장 2명, 전무 2명 등 총 6명(준법감시인, 위험관리책임자, 금융소비자보호총괄책임자 제외)이며, 금융투자업무담당자는 현재 그 범위를 결정하기 위해 검토 중입니다. 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2024년 12월말 기준>

분류	인원수	직명
임원	6	대표이사, 사장, 부사장, 전무
금융투자업무담당자	검토중	-

라. 보수위원회 활동내역 및 평가

(1) 의사결정 절차

보수위원회는 위원장(박영규 사외이사)이 위원회를 소집하도록 되어 있으며, 회의일 7 일 전에 각 위원에게 일시, 장소, 목적 사항 등을 통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 전원의 동의 시 소집절차 생략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회의일 통지 후 회사내 보수위원회 지원 부서를 통해 각 위원에게 별도의 사전설명 절차를 통해 보수위원회 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아울러 위원회의 결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하며, 2024 년도 결의사항 중 별도 반대의견은 없었습니다.

(2) 활동내역 개요

당사는 2024 년 1 월 1 일부터 2024 년 12 월 31 일까지의 기간 동안 총 1 번의 보수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참석위원과 결의안건 그리고 결의 여부는 아래 개최내역으로 상세 기술하였습니다.

(3) 회의 개최내역

(가) 제 1 차 보수위원회

2024년 3월 28일 오후 4:20 [안건통지일 : 2024년 3월 22일]

항목	위원별 활동내역			가결여부
1. 위원 성명	박영규	이재은	조재민	-
2. 참석여부	참석	참석	참석	-
3. 보고안건 : 없음				
4. 의결안건				
제1호 안건 보수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주1)}	-주)	찬성	찬성	가결
제2호 안건 2023년도 경영진 등 성과평가 및 연간성과급 지급(안) 확정의 건	찬성	찬성	-주)	가결
제3호 안건 2024년도 경영진 등 성과평가 및 보수체계(안) 확정의 건	찬성	찬성	-주)	가결

제4호 안건 2024년도 경영진 등 보수 및 수당 결정의 건	찬성	찬성	-주)	가결
제5호 안건 2023년도 보수체계 설계·운영의 적정성 평가의 건	찬성	찬성	찬성	가결
제6호 안건 2023년도 보수체계 보수체계 연차보고서의 작성 및 공시에 관한 사항	찬성	찬성	찬성	가결

주) 본인 심의 의결권 제한

주 1) 박영규 사외이사 위원장으로 선임

(4) 평가

보수위원회는 당사 지배구조 내부규범 제9조(이사회내위원회) 제4항에 의거 연1회 이사회 내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결의 및 보고 안건의 적정성, 경영정보의 제공수준, 이사회내위원회의 역할 등에 대하여 평가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 운영에 참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024년도 이사회 및 이사회내위원회에 대한 평가는 2025년 1월에 외부업체에 위탁하여 실시하였습니다. 평가 등급은 5등급으로 구분되며, 보수위원회는 동 평가에서 4등급(적정)을 받았습니다.

구체적 평가항목에는 위원회 개최 빈도의 적정성, 위원회 회의시간의 적정성, 위원회 안건의 범위·깊이 적정성, 당사로부터의 적기에 충분한 정보수령 여부 등이 포함됩니다. 추후 당사는 매년 초 전년도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실태를 점검하는 평가를 정기적으로 수행할 계획입니다.

2. 보수체계

가. 주요사항

(1) 성과측정 및 성과와 보수의 연계방식

(가) 회사 전체 또는 중요 사업부에 대한 주요 성과측정 지표

당사는 회사 전체 성과 측정시 수익성 지표(영업순이익, 영업이익경비율 등), 외형 지표(시장 지위, 특정 채널 판매액 등), 고객자산운용성과(유형별 운용 수익률 등)를 주요 측정 지표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나) 개인에 대한 주요 성과측정 지표

경영진의 경우 업적 평가(그룹 KPI 달성도, 회사 KPI 달성도, 담당업무 KPI 달성도, 담당 업무 전략과제 등) 및 상급자·동료·하급자 대상 다면평가 등 역량평가 점수를 그 평가 지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 회사 전체 및 개인 성과측정 결과와 개인 보수의 연계방법

경영진의 경우 회사 전체에 대한 성과측정 지표로 전항 영업순이익, 영업이익경비율 등 재무성과, 고객자산운용성과 등의 지표를 활용하며, 개인 성과측정 지표로서 해당 경영진의 개별 담당업무 KPI 및 비계량부문의 전략과제 이행률 등을 통해 이를 개인 성과보수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2) 성과보수 이연 및 조정, 환수, 지급확정 기준

(가) 성과보수액 중 즉시지급과 이연지급에 대한 정책

2024년 12월 말 기준으로 당사는 직원 성과급 재원 중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산출된 지급금액 중 대부분을 현금으로 일시 지급하며, 일부 주식으로 4년간 이연지급하고 있습니다.

특히 경영진은 2015년부터 경영진의 변동보상에 주식연계상품으로 운영되는 장기 성과급 제도를 도입하였고, 4년간의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일괄 이연지급할 계획입니다. 장기성과급은 부여 이후 4년간의 평균 성과에 의해 최종 지급 수량이 결정되고, 지급 시점의 신한금융지주회사의 주가에 따라 지급 금액이 확정됩니다. 따라서 당사 장기성과급 구조상 지급 이전에 손실이 발생하거나 목표에 미달할 경우 장기 보상 전체 금액이 조정될 수 있고, 신한금융지주회사의 가치가 훼손되어 주가가 하락할 경우에도 자연히 보상금액이 조정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지배구조 내부규범 제 53 조 등에서 재무 성과가 목표에 미달하거나 손실이 발생한 경우 경영진 등의 성과보상 규모가 조정될 수 있도록 이를 명문화 하고 있습니다.

(나) 이연된 보수액 또는 지급된 보수액에 대한 조정 및 환수정책

당사는 지배구조 내부규범 제 13 조 제 5 항에 따라 임원 및 직원에 대하여 보상의 일정비율 이상을 성과보상으로 일정기간 이상 이연지급 하여야 합니다. 특히, 임원 및 금융투자 업무 담당자는 담당 업무의 투자성 정도, 투자성의 존속기간 등을 고려하여 성과보상의 일정비율 이상을 3 년 이상 이연하여 지급할 예정입니다.

특히 임원의 경우 개인 성과 달성률에 따라 현금 또는 주식 부여수량이 조정되며, 단기 성과보수의 경우 보수위원회에서 정한 달성률 구간에 따라 성과급 지급 비율을 차등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기보상의 경우 다음의 사유에 따라 환수 되거나 유보될 수 있습니다.

주요 환수 사유

- 본인의 귀책사유로 퇴임한 경우
- 관련법령에 따라 금융감독기관의 해임권고 등으로 해임되거나 면직될 경우
- 장기 보상을 타인에게 양도 또는 이전한 경우
- 장기 보상을 본인 또는 타인을 위하여 담보로 제공한 경우
- 장기 보상이 압류된 경우
- 고의 또는 과실로 회사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나 손해를 초래할 경우

- 금융감독기관의 감봉 또는 문책경고 이상의 제재를 받은 경우

주요 유보 사유

- 업무와 관련하여 형사재판을 받는 경우
- 관련 법령에 따라 금융감독기관의 제재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 보수위원회에서 해당 경영진 등에 대해 지급의 유보가 필요하다고 결정한 경우

(다) 이연보수액 중 지급확정과 지급미확정의 결정 기준

당사는 2015년부터 경영진의 변동보상에 주식연계상품으로 운영되는 장기 성과급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4년간의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일괄 이연 지급할 계획입니다. 장기성과급은 부여 이후 4년간의 평균 성과에 의해 최종 지급 수량이 결정되고, 지급 시점의 신한금융지주회사 주가에 따라 지급 금액이 확정됩니다.

(3) 현금과 주식 등 기타 보수간의 배분을 결정하는 기준

(가) 전체 보수액 중 고정보수액과 변동보수액의 배분을 결정하는 기준 및 근거

전체 보수액 중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에 포함되거나 일반직원과 유사하게 월정액으로 지급되는 기본연봉은 기본급 및 활동수당 등으로 분류하고, 임원 및 금융투자업무담당자 성과평가에 의해 지급되는 성과급 등 업무 성과에 따라 결정되는 인센티브는 성과보수액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성과보수 비율은 전체 보수액 중 직무의 특성, 업무책임의 강도, 해당 업무의 투자성, 시장 보상 비율 등을 고려하여 산정하고 있습니다.

(나) 성과보수의 지급형태(현금, 주식, 주식연계상품 등)

성과보수의 지급형태는 현금보수(임직원 단기성과급)와 주식보수(임원 장기성과급, 직원 ESOP)로 구별하여 운용하고 있습니다.

(다) 성과보수액 중 현금과 주식 등 기타 보수간의 배분을 결정하는 기준 및 근거

당사는 임원의 경우, 변동 보상을 연간 성과에 따라 변동되는 현금 보상인 연간성과급과 4 년간 회사 장기성과 및 지급시점 주가수준에 따라 변동되는 주식 보상으로 구분하여 지급합니다.

연간성과급은 회사 성과, 손익규모의 증감, 개인별 업적평가 등급에 따라 성과급 Pool 산정 및 배분을 하며, 장기성과급은 매년 직위별 기본급의 일정 비율의 수량을 부여한 뒤 4 년간 회사 성과 및 주가, 손익규모 증감 등에 따라 그 수량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직원은 변동 보상을 연간 성과에 따라 변동되는 현금 보상인 연간성과급과 주식 보상인 ESOP 로 구분하여 지급합니다. 직원 변동 보상은 회사 KPI 실적에 따라 산정되며 현금 및 ESOP 로 구성됩니다.

(라) 성과보수액 중 즉시지급과 이연지급의 배분을 결정하는 기준 및 근거

임원의 경우 성과보수액 중 연간성과급은 연간 성과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재원으로 익년도에 현금으로 일시 지급하며, 장기 성과급은 4 년간의 회사의 장기성과를 고려하여 지급하는 성과 연동형 주식 보상 제도로 운영 하고 있습니다.

(4) 일반직원의 보수체계

(가) 성과주의 문화 정착을 위한 보수제도

당사는 성과주의 문화 정착 및 일반 직원의 회사에 대한 주인의식 함양 그리고 성과공유라는 취지 하에서 ESOP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회사의 성과급 중 일부를 당사 주식으로 전체 직원에게 지급하고 있으며, 매년 직원의 전체 현금 보상 Pool 의 일부분을 ESOP 로 배분하고 있습니다.

(나) 임금체계의 합리화

당사는 보수위원회에서 정한 경영진 등 이외 직원의 경우 그 직무가치를 고려하여 회사 손익의 일정 부분을 재원으로 한 성과급을 직원들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5) 외부전문가의 자문내역

당사는 보수위원회규정 제 8 조에 의거하여 보수위원회 위원들에게 외부자문 요청에 대한 권한을 부여하고 있으나, 2024 년의 경우 별도의 요청이 없어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6) 보수 관련 보험의 활용 내역

당사는 지배구조 내부규범 제 59 조에 의거하여 회사 임직원들은 보수체계의 리스크 연계성을 훼손시킬 수 있는 개인적 위험회피 전략 또는 보수 관련 보험의 활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7) 보수체계상 주요 변경 사항

당사는 2017 년 12 월 14 일 이사회 결의에 의거하여 기존 보수위원회 규정을 일부 개정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주주총회에서 위임 받은 범위 내에서 사외이사 보수를 결의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위원회 명칭을 기존 보상위원회에서 보수위원회로 변경 하였습니다. 이후 보수체계상 주요 변경 사항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나. 보수 세부사항

(1) 임직원 총보수

당사는 임직원 총보수 관련하여 추후 보수위원회 결의 후 연차보고서를 통해 공시할 예정입니다.

(2) 직급별 보수총액 및 성과보수액

당사는 직급별 보수총액 및 성과보수액 관련하여 추후 보수위원회 결의 후 연차보고서를 통해 공시할 예정입니다.

다. 임원 및 금융투자업무담당자 보수 세부사항

(1) 보수의 구분 (해당년도 발생액 기준)

당사는 임원 및 금융투자업무담당자 보수 관련하여 추후 보수위원회 결의 후 연차보고서를 통해 공시할 예정입니다.

(2) 성과보수의 형태 (해당년도 발생액 기준)

당사는 임원 및 금융투자업무담당자 성과보수의 형태 관련하여 추후 보수위원회 결의 후 연차보고서를 통해 공시할 예정입니다.

(3) 이연보수액의 보수의 구분 (해당년도말 누적액 기준)

당사는 임원 및 금융투자업무담당자 이연보수액 보수 구분 관련하여 추후 보수위원회 결의 후 연차보고서를 통해 공시할 예정입니다.

(4) 이연보수액의 형태별 구분 (해당년도말 누적액 기준)

당사는 임원 및 금융투자업무담당자 이연보수액 형태별 구분 관련하여 추후 보수위원회 결의 후 연차보고서를 통해 공시할 예정입니다.

(5) 이연보수액의 보수의 구분 (해당년도말 누적액 기준을 발생년도별로 구분)

당사는 임원 및 금융투자업무담당자 이연보수액 보수 구분 관련하여 추후 보수위원회 결의 후 연차보고서를 통해 공시할 예정입니다.

(6) 이연보수의 조정

당사는 임원 및 금융투자업무담당자 이연보수 조정 관련하여 추후 보수위원회 결의 후 연차보고서를 통해 공시할 예정입니다.

(7) 퇴직자에 대한 퇴직보수

당사는 퇴직자에 대한 퇴직보수 관련하여 추후 보수위원회 결의 후 연차보고서를 통해 공시할 예정입니다.

첨부 가. (1) 신한자산운용(주) 정관

정 관

개 정 : [2009. 1. 02]
개 정 : [2009. 6. 12]
개 정 : [2010. 6. 30]
개 정 : [2012. 4. 15]
개 정 : [2012. 6. 21]
개 정 : [2015. 3. 03]
개 정 : [2016. 8. 01]
개 정 : [2017. 3. 31]
개 정 : [2019. 3. 29]
개 정 : [2021. 1. 15]
개 정 : [2021. 3. 17]
개 정 : [2021. 9. 15]
개 정 : [2023. 7. 20]
개 정 : [2023.12.26]
개 정 : [2024.12.19]

제 1 장 총 칙

제 1 조 (상호) 이 회사는 “신한자산운용 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라 한다. 영문으로는 “Shinhan Asset Management Co., Ltd.”라 표기한다.

제 2 조 (사업의 목적) ① 회사는 다음의 사업을 영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투자자문업무
2. 투자일임업무
3. 투자매매업무(인수업 포함)
4. 투자중개업무
5. 집합투자업무
6. 회사가 집합투자업자로서 관련 법령상 영위할 수 있는 업무
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집행사원으로서의 업무
8.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프로젝트 금융회사의 자산관리업무
9. 제1호 내지 제8호의 업무에 부수되는 업무

② 회사는 인·허가권자의 인·허가를 얻거나 필요한 등록, 신고, 보고 등을 완료하여 다른 사업을 영위할 수 있다.

제 3 조 (본점 및 지점의 소재지) ① 회사는 본점을 서울특별시에 둔다.

② 회사는 필요에 따라 이사회결의로 국내외에 지점, 영업소, 출장소를 둘 수 있다.

제 4 조 (공고방법) 회사의 공고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shinhanfund.com>)에 게재한다. 다만, 전산장애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를 할 수 없는 때에는 서울특별시 내에서 발행되는 매일경제신문에 게재한다.

제 2 장 주 식

제 5 조 (발행예정주식의 총수)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삼천육백만(36,000,000)주로 한다.

제 6 조 (일주의 금액) 회사가 발행하는 주식 일주의 금액은 오천(5,000)원으로 한다.

제 7 조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회사가 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는 육백만(6,000,000)주로 한다.

제 8 조 (주식 및 주권의 종류) ① 회사가 발행할 주식은 기명식 보통주식으로 한다.

② 회사가 발행할 주권의 종류는 일(1)주권, 오(5)주권, 십(10)주권, 오십(50)주권, 일백(100)주권, 오백(500)주권, 일천(1,000)주권, 일만(10,000)주권, 일십만(100,000) 주권의 9종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주주가 서면으로 요청하는 경우 기타 단위로 주권을 발행할 수 있다.

제 9 조 (신주인수권) ① 회사의 주주는 신주발행에 있어서 그가 소유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주주 이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선진 금융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③ 주주가 신주인수권을 포기 또는 상실하거나 신주배정에서 단주가 발생하는 경우에 그 처리방법은 제20조에 따른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

④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제20조에 따른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한다.

제 10 조 (명의개서 등) 주식의 명의개서, 질권의 등록 또는 말소, 신탁재산의 표시 또는 말소, 주권의 발행, 신고의 접수 및 기타 주식에 관한 업무절차는 회사에서 정하는 사규에 의한다.

제 11 조 (주주 등의 주소, 성명 및 인감 또는 서명 등 신고) ① 주주와 등록질권자는 그 성명, 주소 및 인감 또는 서명 등을 회사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서 신고한 사항의 변동이 생긴 경우에도 같다.

제 12 조 (기준일)

① 회사는 매 사업연도말일 최종의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에서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한다.

② 회사는 임시주주총회의 소집 기타 필요한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3월을 경과하지 아니하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권리에 관한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하거나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할 수 있으며,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주명부의 기재변동의 정지와 기준일의 지정을 함께할 수 있다. 회사는 이를 2주간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 3 장 주 주 총 회

제 13 조 (종류 및 소집시기) ① 회사의 주주총회는 정기주주총회와 임시주주총회로 한다.

② 정기주주총회는 매 사업연도의 종료일로부터 3월 이내에, 임시주주총회는 필요에 따라 소집한다.

제 14 조 (소집권자) 주주총회는 대한민국의 법령(이하 “법령”이라 한다)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대표이사가 소집한다.

제 15 조 (소집통지 및 공고) 주주총회를 소집함에는 그 일시, 장소 및 회의의 목적사항을 총회일 2주간 전에 주주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팩시밀리, 전자우편)으로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단, 주주전원이 서면 또는 전자문서(팩시밀리, 전자우편)으로 동의하는 경우 위 기간을 단축하거나 통지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제 16 조 (소집지) 주주총회의 장소는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 17 조 (의 장) ① 주주총회의 의장은 대표이사로 한다. 대표이사가 수인인 경우 그 중 이사회에서 정한 자를 의장으로 한다

② 대표이사의 유고 시에는 이사회가 정하는 바에 따른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 18 조 (주주의 의결권) 주주의 의결권은 1주마다 1개로 한다.

제 19 조 (의결권의 대리행사) ① 주주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대리인은 주주총회 개시 전에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 20 조 (정족수 및 결의방법) 주주총회의 결의는 법령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한다.

제 21 조 (서면에 의한 의결권의 행사) ① 주주총회의 소집을 결정하기 위한 이사회 결의에서 서면결의를 하기로 결정하는 경우에는, 주주는 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② 회사는 제1항의 경우 총회의 소집통지서에 주주의 의결권 행사에 필요한 서면과 참고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주주는 제2항의 서면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회의일 전일까지 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 22 조 (주주총회의 의사록) 주주총회의 의사는 그 경과의 요령과 결과를 의사록에 기재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 회사에 비치한다.

제 4 장 이사 · 이사회 · 감사위원회

제 23 조 (이사의 수) ① 회사의 이사는 5인 이상 10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 사외이사는 전체이사수의 과반수가 되도록 한다. 다만, 사외이사의 사임 등의 사유로 본 요건에 합치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발생일 이후 최초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일에 요건에 합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 24 조 (이사 및 감사위원회의 위원의 선임) 이사 및 감사위원회의 위원은 제20조에 따라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다만, 사외이사, 대표이사 및 감사위원회 위원 후보자는 임원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제 25 조 (이사의 임기) ① 이사의 임기는 3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주총회의 결정에 따르며 연임될 수 있다. 다만, 사외이사의 임기는 2년 이내로 하되 연임시 임기는 1년 이내로 하고, 6년을 초과 재임할 수 없으며 회사 또는 지주회사 및 지주회사의 자회사 등에서 사외이사로 재직한 기간을 합산하여 9년을 초과 재임할 수 없다.
② 전항의 임기는 그 임기 중의 최종 사업연도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의 종결 시까지 그 임기를 연장한다.

제 26 조 (사외이사의 자격요건)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전문성과 식견을 갖춘 사외이사를 선임한다.
1. 사외이사로서 직무 수행에 필요한 금융, 경제, 경영, 회계 및 법률, 소비자보호, 정보기술 등 금융회사의 금융업 영위와 관련된 분야에 관한 충분한 실무경험이나 전문지식을 보유하였는지 여부
2. 사외이사로서 특정한 이해관계에 얽매이지 않고 전체 주주 및 금융소비자의 이익을 위하여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
3. 사외이사로서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한 윤리의식과 책임성을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
4. 사외이사로서의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는데 필요한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할애할 수 있는지 여부
②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법규에서 사외이사로의 선임을 금지하고 있는 자는 회사의 사외이사가 될 수 없다.

제 27 조 (이사의 보선) 이사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처음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이를 선임한다. 다만, 법정수를 결하지 않은 경우에는 선임하지 않을 수 있다. 신규로 선임된 이사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제 28 조 (대표이사의 선임) 대표이사는 지주회사 자회사최고경영자후보추천위원회 및 회사 임원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쳐 이사회에서 선임한다.

제 29 조 (대표이사의 직무) ① 대표이사는 회사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2명 이상의 대표이사가 선임되는 경우 각자 대표로 한다.
② 대표이사의 유고 시에는 이사회가 정하는 바에 따른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 30 조 (이사의 보고의무) 이사는 회사에 현저하게 손해를 미칠 염려가 있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감사위원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 31 조 (이사회의 구성과 소집) ① 이사회는 이사로 구성하며 회사업무의 중요사항을 결의한다.
② 대표이사는 매 분기 1회 이상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하며, 각 이사는 필요한 경우 수시로 이사회 개최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이사회는 이사회 의장, 대표이사 또는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 이사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이사가 적어도 이사회 개최일의 7일전에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 소집한다. 그러나, 동 기간은 모든 이사의 (우편, 팩시밀리, 전자우편에 의한) 서면동의에 의하여 단축 또는 생략할 수 있다.
④ 이사회의 시기와 장소는 대표이사가 정한다.

⑤ 이사회는 화상회의를 포함한 법령에서 허용하는 어떠한 형식으로도 소집될 수 있다.

제 32 조 (이사회 내 위원회) ① 이사회는 이사회 내 위원회로서 주요 사안별로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하여 2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된 다음 각호의 위원회를 두어 상시적으로 운영한다. 이 경우 총 위원의 과반수는 사외이사로 하며, 이사회는 그 결의로 다른 위원회를 추가적으로 설치할 수 있다.

1. 감사위원회
2. 임원후보추천위원회
3. 보수위원회
4. 위험관리위원회
5. 내부통제위원회

② 제1항의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은 법령, 지배구조 내부규범 및 이사회가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 33 조 (이사회 의장) 이사회는 매년 이사회 결의로 이사 중에서 이사회 의장을 선임한다. 사외이사가 아닌 자를 이사회 의장으로 선임할 경우 이사회는 사외이사를 대표하는 선임사외이사를 선임한다.

제 34 조 (이사회 결의방법) ① 이사회 결의는 법령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의 과반수로 한다.

② 이사회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이사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③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 결의한다

1. 경영목표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4. 해산·영업양도 및 합병 등 조직의 중요한 변경에 관한 사항
5. 내부통제기준 및 위험관리기준의 제정·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 5의2.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 정책의 수립 및 감독에 관한 사항
6. 최고경영자의 경영승계 등 지배구조 정책 수립에 관한 사항
7. 대주주·임원 등과 회사 간의 이해상충 행위 감독에 관한 사항
8. 기타 이사회에서 정한 사항

제 35 조 (이사회 의사록) ① 이사회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 회사에 비치한다.

제 36 조 (이사의 보수) ① 이사의 보수 한도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하고, 구체적인 이사의 보수지급 방법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② 이사인 경영진의 퇴직금의 지급은 주주총회 결의를 거친 퇴직금 지급에 관한 규정에 의한다.

제 37 조 (감사위원회의 구성) ① 제31조 제1항 제 1호에 따라 설치되는 감사위원회는 3인 이상 5인 이내의 이사로 구성하되, 이 경우 총 위원의 3분의 2 이상을 사외이사로 구성한다.

② 감사위원 중 1인 이상은 관계법령이 정하는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로 한다.

- ③ 감사위원회는 그 결의로 사외이사 중에서 감사위원회를 대표할 위원장을 선임하여야 한다.
- ④ 위원의 사임 등의 사유로 제 1항에 정한 요건에 합치되지 않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 발생일 이후 최초 소집되는 정기 주주총회에서 감사위원회의 구성이 그 요건에 합치되도록 할 수 있다.

제 38 조 (감사위원회의 역할) ① 감사위원회는 이사의 직무집행을 감사한다.

- ② 감사위원회는 이사가 주주총회에 제출할 의안 및 서류를 조사하여 주주총회에 그 의견을 진술하여야 한다.
- ③ 감사위원회는 회사의 외부감사인을 선정한다.
- ④ 감사위원회는 필요하면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이유를 서면으로 이사회 소집권자에 제출하여 이사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 ⑤ 제4항의 청구를 하였는데도 이사회 소집권자가 지체없이 이사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면 그 청구한 감사위원회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 39 조 (외부감사인의 선임) 회사는 감사위원회가 선정한 외부감사인을 선임하며, 그 사실을 선임한 이후에 소집되는 정기총회에 보고하거나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에게 통지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

제 40 조 (결의방법) 감사위원회는 감사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 감사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의한다.

제 41 조 (주요업무집행책임자의 임면 등) 회사는 전략기획, 재무관리, 위험관리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업무로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법규에서 정하는 주요업무를 집행하는 자를 업무집행책임자로 선임하는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임면하며, 그 임기는 이사회에서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 5 장 회 계

제 42 조 (사업연도) 회사의 사업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 43 조 (재무제표와 영업보고서의 작성, 비치 등) ① 회사의 대표이사는 정기주주총회 회일의 6주간 전에 다음 각호의 서류와 그 부속명세서 및 영업보고서를 작성하여 감사위원회의 감사를 받아야 하며, 다음 각호의 서류와 영업보고서를 정기주주총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대차대조표
2. 손익계산서
3. 그 밖에 회사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를 표시하는 것으로서 상법시행령으로 정하는 서류

② 회사가 상법시행령에서 정하는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회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각호의 서류에 연결재무제표를 포함한다.

③ 감사위원회는 제1항의 서류를 받은 날로부터 4주간 내에 감사보고서를 대표이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대표이사는 제1항 및 제2항의 서류와 감사보고서를 정기주주총회 회일의 1주간 전부터 회사에 5년간 비치하여야 한다.

⑤ 대표이사는 제1항 각호의 서류에 대한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지체 없이 대차대조표와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 44 조 (이익금의 처분) 회사는 매 사업연도말의 미처분이익잉여금을 다음과 같이 처분 한다.

1. 이익준비금
2. 기타 법정적립금
3. 배당금
4. 임의적립금
5. 차기이월액
6. 기타의 이익잉여금 처분액

제 45 조 (이익배당) ① 이익의 배당은 금전과 주식으로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배당은 주주총회에서 결의하며 매 사업연도말 현재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등록된 질권자에게 지급한다.

③ 이익의 배당은 주주총회가 결의하는 경우 새로이 발행하는 주식으로써 할 수 있다. 단, 주식에 의한 배당에 관련된 주식의 총액면가는 당해 사업연도에 주주에게 배당할 이익배당총액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제 46 조 (중간배당) ① 회사는 이사회가 정하는 날 현재의 주주에게 상법 제462조의3에 의한 중간배당을 할 수 있다. 단, 중간배당은 금전으로 한다.

② 제1항의 중간배당은 이사회결의로 하되, 그 결의는 제1항의 기준일 이후 45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 중간배당은 직전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액을 한도로 한다.

1. 직전 사업연도의 자본금의 액
2. 직전 사업연도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3. 직전 사업연도의 정기주주총회에서 이익으로 배당하거나 또는 지급하기로 정한 금액
4. 직전 사업연도까지 정관의 규정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특정목적을 위해 적립한 임의준비금
5. 중간배당에 따라 당해 사업연도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

④ 사업연도 개시일 이후 제1항의 기준일 이전에 신주를 발행한 경우(준비금의 자본전입, 주식배당의 경우 등)에는 중간배당에 관해서는 당해 신주는 직전 사업연도말에 발행된 것으로 본다.

제 47 조 (배당금지청구권의 소멸시효) ① 배당금의 지급청구권은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② 제1항의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인한 배당금은 회사에 귀속한다.

제 6 장 보 칙

제 48 조 (규 정) 회사는 이사회결의를 얻어 회사의 업무집행에 필요한 중요한 규정을 채택할 수 있다.

제 49 조 (상법 및 금융투자업 관련법령의 적용) 본 정관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지 않은 사항과 해석상 이견이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대한민국 상법과『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 (2009. 1. 2.)

1. (시행일) 본 정관 개정안은 주주총회에서 결의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경과규정) 제2조의 규정은 회사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업무단위에 대한 등록 및 인가가 발효된 날부터 시행하며, 그 때까지는 본 개정 전 정관(2005. 6. 30.자 신한 비엔피파리바 투자신탁운용주식회사의 것) 제2조에 정한 바에 따른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09년 6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0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6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단, 제38조의 경우 2013년 4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5년 3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3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3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21년 1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21년 3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21년 9월 15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규정) 제2조의 규정은 회사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업무단위에 대한 등록이 발효된 날부터 시행하며, 그 때까지는 본 개정 전 정관(2021.03.17자) 제2조에 정한 바에 따른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23년 7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23년 12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24년 12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이사회 규정

제정 2009.01.02
개정 2009.06.12
개정 2010.06.30
개정 2012.06.21
개정 2012.12.18
개정 2014.09.25
개정 2015.03.03
개정 2016.08.01
개정 2017.03.31
개정 2018.02.27
개정 2021.03.17
개정 2021.12.27
개정 2022.05.12
개정 2023.12.26
개정 2024.12.19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정관에서 정한 이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사회에 관한 사항은 법령이나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구성)

이사회는 이사 전원으로 구성한다.

제4조(경영진의 정의)

이 규정에서 경영진이란 지배구조내부규범 제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역할)

- ① 이사회는 회사의 경영전략 및 경영목표를 수립하고 그 이행 여부를 감독 한다.
- ② 이사회는 회사경영의 건전성을 위하여 리스크관리 등 내부통제시스템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하고, 이를 위한 내부통제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 ③ 이사회는 대표이사의 내부통제등 총괄 관리의무의 이행을 감독한다.

④ 이사회는 경영진이 자금세탁방지과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를 위해 설계·운영하는 내부통제 정책을 감독하고 자금세탁방지과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와 관련한 경영진과 감사위원회의 평가 및 조치결과에 대하여 검토 및 승인한다.

제 6조(선임 및 해임)

<삭제>

제7조(이사회 의장)

- ① 이사회는 매년 이사회 결의로 이사 중에서 이사회 의장을 선임한다. 사외이사가 아닌 자를 이사회 의장으로 선임할 경우 이사회는 사외이사를 대표하는 선임사외이사를 선임한다.
- ② 이사회 의장이 부재 중이거나 유고 시에는 이사회에서 정하는 순위에 따른 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③ 선임사외이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한다.
 1. 사외이사 전원으로 구성되는 사외이사회의의 소집 및 주재
 2. 사외이사가 그 직무를 수행할 때 필요한 자료나 정보를 이사회 의장, 회사로부터 제출 받을 수 있도록 지원
 3. 그 밖에 사외이사의 역할 및 책임 제고에 필요한 업무

제8조(이사의 권한 및 의무)

- ① 이사는 이사회를 통하여 회사경영에 관한 의사결정에 참여하며, 이사회 및 이사회내위원회의 구성원으로서 경영진에 대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 ② 이사는 주주전체의 이익보호 및 회사경영의 건전성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③ 이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써 법령과 정관에 따라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 ④ 이사가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회사 또는 제3자에 대하여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그 내용에 따라 회사 또는 제3자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 ⑤ 이사는 회사에 현저하게 손해를 미칠 염려가 있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감사위원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 ⑥ 이사는 재임중뿐만 아니라 퇴임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회사의 영업상 비밀을 누설하거나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이사 등과 회사간의 거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자기 또는 제 3자의 계산으로 회사와 거래를 하기 위하여는 미리 이사회에서 해당 거래에 관한 중요성을 밝히고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이사회의 승인은 이사 3분의 2 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하고, 그 거래의 내용과 절차는 공정하여야 한다.

1. 이사 또는 상법 제542조의 8 제2항 제6호에 따른 주요주주
2. 제1호의 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3. 제1호의 자의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진 회사 및 그 자회사
5.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가 제4호의 회사와 합하여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진 회사

제10조(이사회내위원회)

- ① 이사회는 감사위원회, 보수위원회,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위험관리위원회, 내부통제위원회를 설치함으로써 이사회의 원활한 활동을 지원하게 할 수 있으며, 기타 필요한 위원회는 이사회 결의에 따라 설치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각 위원회의 위원은 별도로 정하는 바가 없으면 이사회에서 선임한다.
- ③ 각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은 별도로 정하는 위원회 규정에 따른다.
- ④ 제14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위원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11조(소집)

- ① 정기 이사회는 매 분기 1회 소집하며, 임시 이사회는 이사회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이사의 요청이 있을 때에 소집권자가 소집의 일시와 장소를 지정하여 소집한다.
- ② 제1항의 소집권자는 이사회 의장, 대표이사 또는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 이사가 있는 때는 그 이사로 한다.
- ③ 이사회를 소집함에는 그 소집목적에 기재한 소집통지서를 우편, 팩시밀리 전송, 전자메일 등 송수신의 확인이 가능한 방법으로 이사회 개최일 7일 전에 각 이사에 발송하여야 한다.
- ④ 이사 전원의 우편, 팩시밀리, 전자우편에 의한 서면동의가 있는 때에는 이 조의 소집절차를 단축 또는 생략할 수 있다.

제12조(의안의 배부)

- ① 이사회의 의안은 회의 개최 최소 5일전에 전 이사에 배부되어야 하며, 위원회의 의안은 회의 개최 최소 5일전에 위원회 각 구성원 및 기타 위원회 참석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 ② 의안의 배부 방식은 직접 전달하거나 팩스 송신, 전자메일 송신 등 송수신이 확인되는 방법으로 한다.
- ③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제 1항의 기간을 단축하거나 의안의 발송을 생략할 수 있다.

제13조(결의사항 등)

- ①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포함한 회사의 중요사항에 대해 심의하고 결의 한다. 다만 관계법령 및 정관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권한 중 일부를 이사회내의 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 1. 주주총회에 관한 사항
 - A. 주주총회의 소집에 관한 사항
 - B. 주주총회에 부의 할 안건에 관한 사항
 - 2. 정관 및 중요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 A. 정관
 - B. 이사회규정, 이사회내 위원회 규정
 - C. 지배구조 내부규범, 경영진운영규정, 경영진평가 및 보수규정, 경영진퇴직위로금규정, 내부통제기준, 내부회계관리규정, PS운영규정
 - D. 기타 이사회 결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중요 규정
 - 3. 자본금 및 주식에 관한 사항
 - A. 신주의 발행
 - B. 준비금, 잉여금, 적립금의 자본 전입
 - C. 실권주 및 단주 처리에 관한 사항
 - 4. 경영의 기본에 관한 사항
 - A. 경영의 기본 방침 및 계획에 관한 사항
 - B. 이사, 경영진 및 직원의 보수를 포함한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 C. 경영진의 평가지표 및 성과목표에 관한 사항
 - D. 조직·인사·급여에 관한 기본체계의 결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 E. 점포의 이전 및 폐쇄
- F. 자본시장법상의 신규사업에의 진출
- G. 전략기획·재무관리 담당 경영진, 위험관리책임자 및 준법감시인의 임면에 관한 사항
- H. 위원회의 설치, 개폐 및 그 위원들의 선임 및 해임
- I. 지배구조 정책 수립에 관한 사항
- 5. 중요한 계약 등에 관한 사항
 - A. 업무용 동산, 부동산의 취득, 처분의 경우
 - B. 1건당 직전분기말 자기자본의 100분의 1을 초과하는 중요한 계약의 체결
 - C. <삭제>
 - D. 해산, 영업양도 및 합병 승인
 - E. 기타 중요자산의 운용에 관한 사항
- 6. 이사 등에 관한 사항
 - A. 사외이사의 평가방법 및 평가절차
 - B. 상법 제398조에 따른 이사 등과 회사 간의 거래에 관한 사항
 - C. 이사회 의장 직무대행 순위의 결정
 - D. 대표이사 직무대행의 결정
 - E. 대표이사의 선임 및 해임
- 7. 기타 사항
 - A. 감독기관의 인·허가 또는 금융기관의 자금차입
 - B. <삭제>
 - C. 주주총회의 서면에 의한 의결권 행사에 관한 사항
 - D. 회사의 내부통제제도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 가. 내부통제 정책의 수립 및 감독에 관한 사항
 - 나. 대표이사가 마련한 책무구조도에 관한 사항
 - E. 회사의 위험관리기준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 가. 위험관리 정책의 수립 및 감독에 관한 사항
 - F. 감사위원회를 제외한 이사회내 위원회가 결의한 사항 중 재결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G. 대표이사가 특별히 이사회 결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H. 기타 법령 또는 정관에 의하여 이사회 결의가 필요한 사항
- ② 대표이사 및 이사회 산하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사회에 보고 하여야 한다.
 - 1. 이사회 결의사항의 집행결과 및 그 실적
 - 2. 이사회내 위원회의 활동결과와 그 실적분석
 - 3. 다른 규정에서 이사회 보고사항으로 정한 사항
 - 4. 경영성과, 분석 및 현황
 - 5. 대표이사의 내부통제등 관리조치의 내용 및 결과와 관리조치 수행 중 알게 된 내부통제에 대한 중요사항 등
 - 6. 기타 이사회 의장 또는 대표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③ 제 1항에도 불구하고 이사회가 각 이사회내위원회 규정의제, 개정을 통해 권한 위임을 한 사항은 해당 이사회내위원회의 권한으로 한다.

제14조(결의방법)

- ① 이사회 결의는 법령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며,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 ②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해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 ③ 이사회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이사는 그 이해관계를 이사회에 밝혀야 하며 당해 결의에 관하여 이사회가 행하는 심의나 표결에 참가할 수 없다. 이 경우 당해 이사는 출석한 이사의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15조(의사록)

- ① 이사회 의사진행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 ② 의사록에는 이사의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 본사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16조(관계자의 출석)

이사회와 각 위원회의 의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경영진 및 관계직원에게 이사회에 출석하여 진술할 것을 요구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회의의 구성원이 아닌 자를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7조(사외이사에 대한 정보의 제공)

사외이사가 이사회 활동을 위해 외부기관의 법률, 회계, 경영 관련 자문 등을 요청하는 경우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18조(보수 등)

이사회 이사 중 경영진이 아닌 이사에 대하여 이사회내위원회 참여도 등 활동실적에 상응한 보수(수당 포함)를 적정하게 지급하여야 하며, 업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여비, 자료수집비 등 별도의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제정)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09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09년 6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0년 6월 30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6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12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4년 09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5년 03월 0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08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03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0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21년 03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21년 1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22년 5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23년 12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24년 12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지배구조 내부규범

제 정: [2015. 03. 03]
개 정: [2016. 08. 01]
개 정: [2016. 09. 22]
개 정: [2017. 03. 31]
개 정: [2017. 12. 14]
개 정: [2018. 03. 29]
개 정: [2018. 11. 01]
개 정: [2019. 02. 14]
개 정: [2020. 03. 24]
개 정: [2020. 06. 16]
개 정: [2021. 01. 15]
개 정: [2021. 03. 17]
개 정: [2021. 09. 15]
개 정: [2022. 05. 12]
개 정: [2024. 01. 01]
개 정: [2024. 12. 19]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범은 신한자산운용(이하 “회사”라 한다)의 임원의 자격요건, 이사회의 구성 및운영, 내부통제제도 등 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기본 사항을 정함으로써 회사의 건전한 경영과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기하고 금융소비자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범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그룹”이라 함은 신한금융지주회사(이하 “지주회사”라 한다)와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라 신한금융지주회사에 편입된 자회사등을 말한다.
2. “자회사”라 함은 회사가 100%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SHINHAN ASSET MANAGEMENT (HONG KONG) LIMITED 를 말한다.
3. “금융회사”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를 말한다.
 - 가. 「은행법」, 「한국은행법」, 「한국산업은행법」, 「한국수출입은행법」,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라 인가를 받아 설립된 은행 및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협은행,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신용사업 부문(이하 “은행”이라 한다)
 - 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투자업자 및 종합금융회사(이하 “금융투자업자”라 한다)

- 다.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이하 “보험회사”라 한다)
- 라.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이하 “상호저축은행”이라 한다)
- 마.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이하 “여신전문금융회사”라 한다)
- 바.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금융지주회사(이하 “금융지주회사”라 한다)
4. “상법상 회사”란「상법」제169조의 회사(「상법」규정을 준용하는 특별법에 의한 회사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5. “임원”이란 이사, 감사, 집행임원(「상법」에 따른 집행임원을 둔 경우로 한정한다) 및 업무집행책임자를 말한다.
 6. “이사”란 사내이사, 사외이사 및 그 밖에 상시적인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이사(이하 “비상임이사”라 한다)를 말한다.
 7. “사외이사”란「상법」제382조 제3항의 사외이사를 말한다.
 8. “겸직 비상임이사”란 그룹의 상근 임직원을 겸직하는 비상임이사를 말한다.
 9. “업무집행책임자”란 이사가 아니면서 사장·부사장·전무·상무·이사 등 업무를 집행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인정될 만한 명칭을 사용하여 회사 및 자회사등의 업무를 집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10. “최고경영자”란 대표이사 사장 또는 이에 준하는 역할과 지위를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
 11. “이사회등”이란 상법 제390조에 따른 이사회 및 같은 법 제393조의2에 따른 ‘이사회내 위원회’를 말한다.
 12. “경영진”이란 임원 중에서 사장, 부사장, 전무를 말한다.
 13. “금융투자업무 담당자”란 금융회사의 위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 또는 파생상품의 설계 · 판매 · 운용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으로서 보수위원회가 심의 · 의결 대상으로 결정한 사람을 말한다.
 14. “성과보수”란 성과에 연동(連動)하여 미리 정해진 산정방식에 따른 보수를 의미한다.
 15. “지배구조 연차보고서”란 회사가 제60조 제1항에 따라 회사의 지배구조 정책 및 지배구조 운영 등에 관하여 매년 작성하여 공시하는 보고서를 말한다.
 16. “보수체계 연차보고서”란 회사가 제60조 제2항에 따라 회사의 임직원의 보수지급에 관하여 매년 작성하여 공시하는 보고서를 말한다.
 17. “준법감시인”이란 회사의 내부통제기준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내부통제기준을 위반하는 경우 이를 조사하는 등 내부통제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2장 이사회 및 이사회내위원회

제1절 이사회

제3조(이사의 구성)

- ① 회사는 다양한 분야에서 이사로서의 업무 수행에 적절한 경험이나 지식을 갖추고 그룹의 창업 정신을 계승·발전시킬 수 있는 자들이 포함될 수 있도록 이사회를 구성하여야 하며, 이사회가 전문성에서 특정한 공통의 배경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직업군 등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등 편중되지 않게 구성되도록 노력한다.
- ② 이사회는 5인 이상 10인 이하의 이사로 구성하며, 이 중 사외이사는 이사 총수의 과반수로 한다.
- ③ 이사가 사임·사망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제2항에서 정한 인원수를 결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최초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해당 요건에 충족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이사의 권한 및 책임)

- ①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 결의한다.

1. 자회사를 포함한 경영계획의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규정의 제개정시 이사회의 결의가 필요하다고 이사회규정에 명시된 중요 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3.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4. 조직의 중요한 변경 및 계약에 관한 사항
 5. 회사의 지배구조 정책 및 원칙 전반에 관한 사항
 6. 대주주·임원 등과 회사 간 이해상충 행위의 감독에 관한 사항
 7. 회사의 내부통제제도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8. 회사의 위험관리기준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9.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 정책의 수립 및 감독에 관한 사항
 10. 최고경영자 경영승계계획의 수립·평가 및 상시적인 최고경영자후보군 관리에 관한 사항
 11. 회사의 책무구조도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 ②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이사회 결의사항의 집행결과 및 그 실적
 2. 이사회내 위원회의 활동결과와 그 실적분석
 3. 다른 규정에서 이사회 보고사항으로 정한 사항
 4. 경영성과, 분석 및 현황
 5. 내부통제등 관리조치의 내용 및 결과와 관리조치 수행 중 알게 된 내부통제에 대한 중요사항 등
 6. 기타 이사회 의장 또는 대표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③ 이사회는 주주 및 금융소비자의 정당한 이익과 회사의 장기적 발전을 위해 노력한다.
- ④ 이사회는 대표이사의 내부통제등 총괄 관리의무의 이행을 감독한다.
- ⑤ 이사회가 각 이사회내위원회 규정의 「결의사항 등」의 제·개정을 통해 권한 위임을 한 사항은 해당 이사회내위원회의 권한으로 한다.

제5조(이사회 의장 및 선임사외이사)

- ① 이사회는 매년 이사회 결의로 이사 중에서 이사회 의장을 선임한다. 사외이사가 아닌 자를 이사회 의장으로 선임할 경우 이사회는 사외이사를 대표하는 선임사외이사를 선임한다.
- ② 선임사외이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한다.
1. 사외이사 전원으로 구성되는 사외이사회의 소집 및 주재
 2. 사외이사가 그 직무를 수행할 때 필요한 자료나 정보를 이사회 의장, 회사로부터 제출 받을 수 있도록 지원
 3. 그 밖에 사외이사의 역할 및 책임 제고에 필요한 업무

제6조(이사회 소집)

- ① 이사회는 정기 이사회와 임시 이사회로 구분하며 정기이사회는 분기 1회, 임시 이사회는 필요한 경우 수시로 소집한다.
- ② 이사회는 의장, 대표이사 또는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 이사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이사가 소집하며, 회일 7일 전에 각 이사에게 통지한다. 그러나 동 기간은 모든 이사의 (우편, 팩시밀리, 전자우편에 의한) 서면동의에 의해 단축 또는 생략할 수 있다.

제7조(이사회 결의방법)

- ① 이사회는 법령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며,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의한다.
- ② 이사회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이사는 그 이해관계를 이사회에 밝혀야 하며 당해 결의에 관하여 이사회가 행하는 심의나 표결에 참가할 수 없다. 이 경우 당해 이사는 출석한 이사의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8조(이사회 운영실적 등의 평가)

이사회는 연1회 이사회 운영과 관련하여 결의 및 보고 안건의 적정성, 경영정보의 제공수준, 이사회의 역할 등에 대하여 평가하고, 그 결과를 이사회 운영에 참고하며, 평가와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2절 이사회내위원회

제9조(이사회내위원회)

- ① 회사는 이사회내위원회로서 다음 각 호의 위원회를 상시적으로 운영한다.
 1. 감사위원회
 2. 임원후보추천위원회
 3. 보수위원회
 4. 위험관리위원회
 5. 내부통제위원회
- ② 이사회내위원회는 해당 위원회 결의로 위원 중 1인을 위원장으로 선임한다. 다만, 제1항 각호 중 감사위원회,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위험관리위원회, 보수위원회의 위원장은 사외이사인 위원에 한한다.
- ③ 이사회내위원회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해당 위원회를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다만, 위원회 구성 후 최초로 소집되는 위원회는 이사회 의장이 소집한다.
- ④ 이사회내위원회는 연1회 해당 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결의 및 보고 안건의 적정성, 경영정보의 제공수준, 위원회의 역할 등에 대하여 평가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 운영에 참고하며, 평가와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10조(감사위원회의 구성 및 업무)

- ① 감사위원회는 3인 이상 5인 이내의 이사로 구성하되, 총 위원(이하 이 조에서 “감사위원”이라 한다)의 3분의 2이상을 사외이사로 한다. 이 경우 감사위원 중 1인 이상은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로 한다.
- ② 감사위원의 사임·사망 등의 사유로 감사위원의 수가 제1항에 따른 구성요건에 미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최초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제1항에 따른 구성요건을 만족하도록 조치한다.
- ③ 감사위원 후보는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다. 이 경우 위원 총수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④ 감사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1명 이상에 대해서는 다른 이사와 분리하여 선임하여야 한다.
- ⑤ 감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이사 및 경영진의 업무 감독
 2. 외부감사인 선정 및 해임 요청
 3. 그 밖에 감사업무와 관련하여 정관 또는 내규에서 정하는 사항

제11조(임원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업무)

- ①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3인 이상 5인 이내의 이사로 구성한다. 이 경우 총 위원의 과반수는 사외이사로 한다.
- ② 위원장은 위원회 결의로 사외이사인 위원 중 1인을 선임한다.

- ③ 위원장이 부재중이거나 유고시에는 위원회에서 정한 순위에 따른 위원이 이를 대행한다. 다만, 위원회에서 별도로 순위를 정하지 아니한 경우 이사회에서 정한 이사회 의장 직무대행 순서에 따른 위원회 소속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④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 1. 대표이사 후보 추천에 관한 사항
 - 2. 사외이사 후보 추천에 관한 사항
 - 3. 감사위원 후보 추천에 관한 사항
- ⑤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제4항 사외이사 후보군 관리 내역을 연 2회 이상 이사회에 보고한다.
- ⑥ 임원후보추천위원회의 위원은 본인이 스스로를 임원으로 추천하지 못하며, 본인을 임원 후보로 추천하는 이사회등의 결의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제12조 (위험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업무)

- ① 위험관리위원회는 2인 이상 5인 이내의 이사로 구성하되, 총 위원의 과반수를 사외이사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 중 1인 이상은 금융회사 또는 상법상 회사의 금융, 회계 또는 재무 분야에서 종사한 경험이 있는 자로 한다.
- ② 위험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 1. 리스크관리의 기본방침 및 전략수립
 - 2. 회사의 부담 가능한 리스크 수준의 결정
 - 3. 적정투자한도 또는 손실허용한도 승인
 - 4. 리스크관리규정의 제정 및 개정
 - 5. 리스크관리 조직 구조 및 업무분장에 관한 사항
 - 6. 리스크관리 정보시스템의 운영에 관한 사항
 - 7. 각종 한도의 설정 및 한도 초과에 승인에 관한 사항
 - 8. 그 밖에 이사회 및 위험관리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3조 (보수위원회의 구성 및 업무)

- ① 보수위원회는 2인 이상 5인 이내의 이사로 구성한다. 이 경우 총 위원의 과반수는 사외이사로 한다.
- ② 보수위원회 위원 중 1인 이상은 금융회사 또는 상법상 회사의 금융, 회계 또는 재무 분야에서 종사한 경험이 있는 자로 한다.
- ③ 보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 1. 금융투자업무 담당자, 업무집행책임자(제2조의 업무집행책임자를 말하며 이 조에 한하여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는 제외한다.), 경영진의 평가 및 보수체계 결정에 관한 사항
 - 2. 금융투자업무 담당자, 업무집행책임자, 경영진의 평가 및 보수안의 결정에 관한 사항
 - 3. 보수체계 연차보고서의 작성 및 공시에 관한 사항
 - 4. 금융투자업무 담당자, 업무집행책임자, 경영진의 보수체계 설계·운영의 적정성 평가 등에 관한 사항
 - 5. 회사의 보수 정책에 대한 의사결정 절차와 관련된 사항
 - 6. 금융투자업무 담당자의 결정
 - 7. 주주총회에서 위임 받은 범위 내 이사 보수의 결정
 - 8. 기타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④ 회사는 임직원이 과도한 위험을 부담하지 아니하도록 보수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 ⑤ 회사는 임원 및 직원(최하위 직급의 직원 및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간제 근로자

또는 단시간 근로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대하여 보수의 일정비율 이상을 성과보수로 일정기간 이상 이연(移延)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성과에 연동하는 보수의 비율, 이연 기간 등 세부 사항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부합하여야 한다.

1. 보수 중 성과보수의 비율은 성과평가와 연동하고, 그 비율은 책임의 정도, 직무의 특성, 담당 업무의 투자성(「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른 투자성을 말한다. 이하 같다) 등에 따라 달리 할 것
2. 경영진 및 금융투자업무 담당자, 업무집행책임자는 담당 업무의 투자성 정도, 투자성의 존속기간 등을 고려하여 성과보수의 100분의 40 이상에 대하여 3년 이상 이연하여 지급할 것. 다만, 담당업무의 투자성 존속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에는 투자성의 존속기간 수준으로 이연 기간을 축소할 수 있다.
3. 제2호에 따라 성과보수를 이연 지급할 경우에는 초기에 지급되는 부분이 기간별 균등배분한 수준보다 작도록 할 것
4. 경영진 및 금융투자업무 담당자, 업무집행책임자의 성과보수의 일정 비율 이상은 회사의 장기 성과와 연계될 수 있는 형태로 지급할 것

제14조 (내부통제위원회의 구성 및 업무)

- ① 내부통제위원회는 2인 이상 5인 이내의 이사로 구성하되, 총 위원의 과반수를 사외이사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사외이사로 한다.
- ② 내부통제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내부통제의 기본방침 및 전략 수립
 2. 임직원의 직업윤리와 준법정신을 중시하는 조직문화의 정착방안 마련
 3. 지배구조 내부규범의 마련 및 변경
 4. 내부통제기준의 제정 및 개정
 5.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임원과 대표이사의 관리조치와 보고 수행 적정성에 대한 점검·평가 및 미흡한 사항에 대한 개선 등 필요한 조치 요구
 6. 그 밖에 이사회 및 내부통제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5조(이사회내위원회 위원의 연임 제한)

사외이사는 보수위원회 및 그 밖에 이사회가 정하는 이사회내위원회에 연속하여 2년을 초과하여 재임할 수 없다. 다만, 임기만료시점의 불일치, 재임 제한 시 이사회내위원회의 구성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장 이사 및 최고경영자

제1절 이사

제16조(이사의 선임 및 퇴임)

- ① 사외이사는 임원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자 중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 ② 회사는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독립성 요건을 갖추고 다양한 분야로부터 금융경력과 전문성을 가진 사외이사가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한다.
- ③ 사내이사는 지주회사 자회사최고경영자후보추천위원회 및 회사 임원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주주총회에서

선임한 이사 중에서 이사회에서 선임한다.

- ④ 감사위원은 임원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 ⑤ 비상임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 ⑥ 주주총회는 이사가 이사로서 신분을 유지하는데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임할 수 있으며, 이사는 사임, 임기만료, 주주총회의 해임결의 등의 사유에 의하여 퇴임한다.

제17조(이사의 자격요건)

-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전문성과 식견을 갖춘 사외이사를 선임한다.
 - 1. 사외이사로서 직무 수행에 필요한 금융, 경제, 경영, 소비자 보호, 정보기술, 회계 및 법률 등 금융회사의 금융업 영역과 관련된 분야에 관한 충분한 실무경험이나 전문지식을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
 - 2. 사외이사로서 특정한 이해관계에 얽매이지 않고 전체 주주 및 금융소비자의 이익을 위하여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
 - 3. 사외이사로서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한 윤리의식과 책임성을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
 - 4. 사외이사로서의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는데 필요한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할애할 수 있는지 여부
- ② 회사 외의 2개 이상의 다른 주권상장법인의 사외이사, 비상임이사 또는 비상임감사로 재임 중인 사람은 사외이사로 선임할 수 없다.
- ③ 사내이사의 자격요건은 본 규범 제35조를 따른다.
- ④ 비상임이사는 회사의 공익성 및 건전경영과 신용질서를 해칠 우려가 없는 자이어야 한다.

제18조(이사후보 추천절차)

- ①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회사 및 주주 등의 이익에 부합하는 자를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에 따라 이사 후보로 추천한다.
- ②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이사 예비후보자가 관련 법령 및 이 규범에서 정하는 자격요건을 충족하는지를 공정하게 검증한 후 이사 후보로 추천한다.
- ③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사외이사 후보군 발굴시 필요할 경우 주주, 이해관계자 및 외부 자문기관 등 회사 외부로부터의 추천을 최대한 활용한다.
- ④ 임원후보추천위원회가 사외이사의 재선임을 위해 후보를 추천하는 경우에는 후보 추천서에 제24조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 및 임원후보추천위원회의 검토보고서를 첨부한다.

제19조(사외이사 후보추천 내역의 공시)

임원후보추천위원회가 사외이사 후보를 추천한 경우 회사는 주주총회 소집 통지일(통지에 갈음하여 공고하는 경우에는 공고일을, 소집절차를 생략하는 경우에는 주주총회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시하고, 주주총회 소집 통지 시 공시사실 및 공시확인 방법 등을 안내한다.

- 1. 사외이사후보 추천절차 개요
- 2. 임원후보추천위원회의 위원 명단 및 약력
- 3. 사외이사 후보 및 그 제안자와의 관계(회사의 사외이사이거나 사외이사이었던 자를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할 때에는 과거 해당 사외이사 후보 제안자를 모두 포함)
- 4. 사외이사 후보자와 회사 및 자회사(그 임원 및 대주주 포함)와의 관계
- 5. 관계법령 및 제16조에 따른 자격요건 충족 여부 및 근거
- 6. 사외이사 후보자 추천 이유

7. 사외이사 후보자의 경력
8. 그 밖에 사외이사 후보자 추천과 관련하여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제20조(이사의 임기)

- ① 이사의 임기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주주총회에서 정하며, 연임될 수 있다.
 1. 사외이사 : 2년 이내로 하되 연임 시 임기는 1년 이내
 2. 사내이사 및 비상임이사 : 3년 이내
- ② 제1항의 임기는 그 임기 중의 최종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종결시까지로 한다.
- ③ 이사가 재임하기 위해서는 이사 재임기간 동안의 제23조에 의한 평가 결과를 고려하여야 한다.
- ④ 사외이사는 6년을 초과 재임할 수 없으며, 회사 또는 지주회사 및 지주회사의 자회사 등에서 사외이사로 재직할 기간을 합산하며 9년을 초과 재임할 수 없다. 다만, 임기 중의 해당연도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의 종결시까지 재임함에 따라 재임기간이 해당연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1조(사외이사의 역할)

사외이사는 이사회등의 구성원으로서 회사, 주주 및 금융소비자 등 이해관계자의 장기적인 이익을 위하여 경영이 적법하고 건전하게 이루어지도록 한다.

제22조(이사의 자료요청권 등)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때 필요한 자료나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23조(이사의 책임)

- ① 이사는 이사회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이사회등이 회사, 주주 및 금융소비자 등 이해관계자에 장기적으로 이익이 되는 의사결정을 하도록 노력하며, 이를 위해 이사회등의 의안을 사전에 충실히 검토한다.
- ② 사외이사는 제1항의 책임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하여 이사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연간 일정시간 이상을 이사회등에의 참여에 할애한다.
- ③ 이사는 재임기간 뿐만 아니라 퇴임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회사 및 자회사의 영업상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 ④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을 위반하거나 임무를 소홀히 하여 회사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회사 또는 제3자에 대해 민·형사상의 책임을 부담한다.
- ⑤ 회사는 매년 임원배상책임보험을 갱신하여 이사 재임시의 활동에 대해 퇴직 후에도 통상적인 책임보험 혜택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한다.
- ⑥ 회사가 제5항에 따라 가입·갱신하는 임원배상책임보험은 사외이사의 자기부담액을 배상책임액의 20% 이상으로 한다. 다만, 자기부담액의 최대 한도는 1억원으로 한다.
- ⑦ 사외이사 또는 그 배우자, 직계혈족, 배우자의 직계혈족(이하 이 항에서 “사외이사등”이라 한다)이 수탁자·임직원이거나 최근 2년 이내에 수탁자·임직원이었던 대학 그 밖의 비영리법인(이하 “비영리법인등”이라 한다)이 회사(그룹이 설립한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로부터 기부금(이에 준하는 혜택을 포함하되 사외이사로 최초 선임되기 이전에 회사가 회원·사원 등으로 참여한 비영리법인등의 정관 등에 근거하여 제공하는 기부금·출연금 등은 제외한다. 이 항에서 “기부금등”이라 한다)을 받는 경우 해당 사외이사는 그 사실을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회 소집의 지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후 지체없이 보고해야 한다.

1. 사외이사가 회사의 사외이사로 최초 선임된 경우 선임 이후 최초로 개최되는 이사회에 과거 2년간의 기부금등을 보고할 것
2. 사외이사가 선임된 이후 사외이사등이 비영리법인등의 수탁자·임직원이 되는 경우 수탁자·임직원이 된 후 최초로 개최되는 이사회에 과거 2년간의 기부금등을 보고할 것

제24조(이사에 대한 평가)

- ① 회사는 사외이사의 활동내역을 기초로 매년 사외이사에 대해 공정한 평가를 실시한다.
- ② 회사는 지배구조 연차보고서를 통해 제1항에 따른 평가 실시 여부와 그 결과를 공시한다.
- ③ 회사는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를 정기주주총회에 보고한다.
- ④ 사내이사에 대한 평가는 본 규범 제41조를 따른다.
- ⑤ 비상임이사에 대한 평가는 사외이사의 평가를 따른다. 다만, 겸직 비상임이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5조(이사의 보수)

- ① 이사회는 사외이사의 이사회내위원회 참여도 등 활동실적에 상응한 보수체계를 수립한다.
- ② 사외이사의 보수는 기본 수당, 직책 수당, 회의 수당, 참가 수당 등으로 구성하며, 회사의 경영성과와 연동하여 지급하지 아니한다.
- ③ 사내이사의 보수는 본 규범 제42조를 따른다.
- ④ 비상임이사의 보수는 사외이사의 보수를 따른다. 다만, 겸직 비상임이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6조(사외이사 지원부서의 운영)

- ① 회사는 사외이사 관련업무를 담당하고, 임원후보추천위원회를 지원하기 위해 경영관리 담당 부서가 사외이사 지원부서로서 역할을 수행한다.
- ② 경영관리 담당 부서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제5조 제2항에 따른 선임사외이사의 업무 지원
 2. 제11조에 따른 임원후보추천위원회의 업무 지원
 3. 제27조 및 제28조에 따른 경영정보 등의 보고, 제공 및 발송 지원
 4. 사외이사에 대한 평가·검증 업무 지원
 5. 그 밖에 사외이사의 역할과 책임 수행을 위해 필요한 업무 지원
- ③ 경영관리 담당 부서는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 주기적으로 제2항 제2호 중 사외이사 후보 추천과 관련한 업무 추진 현황을 보고한다.

제27조(이사에 대한 정보의 제공)

- ① 회사는 이사가 회사와 자회사등의 경영실태를 적기에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회사와 자회사등의 업무집행상황 등 경영정보를 정기적으로 보고하거나 제공한다.
- ② 이사가 경영정보의 보고 또는 제공을 이사회 의장 또는 선임사외이사를 통해 요구하는 경우 회사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이에 응한다.
- ③ 회사는 이사회등의 회의자료를 회일 2주일 전까지 발송하여 해당 이사회등에 참여하는 사외이사가 회의 안건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정관 또는 이사회규정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간을 단축하거나 발송을 생략할 수 있다.

제28조(이사에 대한 자문용역의 제공)

회사는 이사가 회사와 자회사등에 대한 이사회등의 활동을 위해 외부기관의 법률, 회계, 경영 관련 자문 등을 요청하는 경우 이를 제공한다.

제29조(이사에 대한 교육)

- ① 회사는 신임 이사에 대하여 회사의 전략, 금융, 회계, 위험관리 등에 대한 교육 또는 연수를 실시한다. 단,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업무보고 등으로 교육 또는 연수를 대신할 수 있다.
 - 1. 회사 또는 자회사의 임직원이거나 임직원이었던 자 중에서 선임된 경우
 - 2. 다른 금융기관의 재직 경력 등으로 업무 전문성을 인정받아 선임된 경우
- ② 회사는 이사를 위한 교육 또는 연수프로그램을 마련·운영한다.

제2절 최고경영자

제30조(최고경영자의 자격)

도덕성, 신한가치 구현 능력, 업무전문성, 조직관리 역량을 갖추고, 회사의 비전을 공유하며, 공익성 및 건전 경영에 노력할 수 있는 자를 최고경영자로 선임한다.

제31조(최고경영자 경영승계 원칙)

- ① 최고경영자 경영승계에 관한 사항은 지주회사 자회사최고경영자후보추천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② 제1항의 내부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 1. 경영승계계획의 수립 및 변경
 - 2. 최고경영자의 최소 자격요건
 - 3. 경영승계 절차의 개시사유 및 개시결정 시기
 - 4. 최고경영자 후보자 추천절차 및 경영승계 절차
 - 5. 최고경영자 후보군 선발 및 자격검증 등 관리 방법
 - 6. 최고경영자 사고 등 비상상황 발생 시 대행자 선정, 신임 후보 선임 등 비상계획
 - 7. 그 밖에 최고경영자 선임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 ③ 이사회는 경영승계계획의 적정성을 점검하고 지주회사 자회사최고경영자후보추천위원회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 ④ 회사는 소속 경영승계 육성후보군 선정, 평가 및 개발활동 결과를 연 1회 이사회에 보고한다.

제32조(최고경영자 경영승계 지원)

경영관리 담당 부서는 임원후보추천위원회의 최고경영자 경영승계 관련 업무를 지원한다.

제33조(최고경영자 후보자 추천절차)

- ① 회사의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지주회사의 자회사최고경영자후보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최고경영자 후보자에 대하여 관계법규와 이 규범 제29조에서 정한 자격기준 적합여부를 검토하여 주주총회에 추천한다.
- ② 지주회사 자회사최고경영자후보추천위원회는 회사, 주주 및 기타 이해 관계자들의 이익에 부합하는 자를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에 따라 최고경영자 후보로 추천하며,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주주, 이해관계자 및 외부 자문기관 등 회사 외부로부터의 추천을 활용할 수 있다.

제34조(최고경영자 추천 관련 공시)

지주회사의 자회사최고경영자후보추천위원회 및 회사의 임원후보추천위원회가 최고경영자를 추천하는 경우에는 회사가 주주총회 소집 통지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시한다.

1. 최고경영자후보추천절차 개요
2. 지주회사 자회사최고경영자후보추천위원회 및 회사의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위원의 명단 및 약력
3. 최고경영자 후보 제안자 및 후보자와의 관계
4. 관계법령에 따른 자격요건 충족여부 및 근거
5. 최고경영자 후보자 추천이유
6. 최고경영자 후보자의 경력
7. 그 밖에 최고경영자 후보자 추천과 관련하여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제35조(책임경영체제 확립)

- ① 회사는 경영진의 임기를 상당 기간으로 하고 경영진(등기 임원 제외)의 선임과 해임을 이사회에 결의에 의하거나 이사회에 보고를 하는 등 중장기적 관점의 경영 및 책임경영 체제를 확립한다.
- ② 회사는 능력에 근거한 경영진의 선임, 역할의 명확화, 필요한 권한의 위임 등을 통하여 책임경영 여건을 조성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경영진의 임면을 위한 평가기준 및 절차, 해임 및 퇴임사유 등은 경영진운영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장 경영진에 관한 사항

제1절 경영진의 자격요건

제36조(경영진의 자격요건)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경영진이 되지 못한다.
 1.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5. 이 법 또는 금융관계법령에 따라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받은 금융회사의 임직원 또는 임직원이었던 사람으로서 해당 조치가 있었던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가. 금융관계법령에 따른 영업의 허가·인가·등록 등의 취소
 - 나.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제10조 제1항에 따른 적기시정조치
 - 다.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제14조 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
 7.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또는 금융관계법령에 따라 임직원 제재조치(퇴임 또는 퇴직한 임직원이 경우 해당 조치에 상응하는 통보를 포함한다)를 받은 사람으로서 조치의 종류별로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회사의 공익성 및 건전경영과 신용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정하는 사람
- ② 대표이사는 도덕성, 신한가치 구현 능력, 업무전문성, 조직관리 역량을 갖추고, 회사의 비전을 공유하며, 공익성 및 건전 경영에 노력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 ③ 대표이사 아닌 경영진은 도덕성을 갖추고, 업무전문성, 조직관리 역량을 통해 회사의 건전한 경영성과 창출을 위해 노력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 ④ 경영진은 직무구조도에서 정하는 자신의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한 전문성, 업무경험, 정직성 및 신뢰성을 갖춘 사람이어야 한다.

제2절 경영진의 권한과 책임

제37조(권한과 책임)

- ① 대표이사는 회사를 대표하고 이사회 결의 사항을 집행하며 다음 각호의 역할을 담당한다. 2명 이상의 대표이사가 선임되는 경우 각자 대표로 한다.
 1. 이사회 의장으로서 이사회 운영(사장이 이사회 의장으로 선임된 경우에 한한다)
 2. 주주, 관련기관 등 회사의 이해관계인과의 의사교류 원활화를 위한 역할
 3. 회사 업무 전반의 총괄 및 이해관계인과의 조정 역할
 4. 내부통제등의 전반적 집행 및 운영 등 내부통제 총괄 관리의무 수행 역할
 5. 기타 이사회 및 위원회가 요청하는 역할
- ② 대표이사 아닌 경영진은 대표이사의 업무를 보좌하고 소관업무 일체를 관장하며, 자신의 직무와 관련하여 내부통제등이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관리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③ 경영진은 이사회와 이사회내의 각 위원회 및 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사항에 대하여 성실히 보고 하여야 한다.
- ④ 경영진이 법령 또는 정관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회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제3절 경영진의 선임과 해임과 관한 기준 및 절차

제38조(경영진의 선임 및 해임)

- ① 대표이사는 지주회사 자회사 최고경영자후보추천위원회 및 회사 임원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과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쳐 이사회에서 선임한다.
- ② 대표이사 아닌 경영진은 지주회사 사전협의를 거쳐 전략기획·재무관리 담당 경영진은 이사회에서 선임하며, 그 밖의 경영진은 대표이사가 선임한다.
- ③ 경영진을 선임할 때에는 자질, 업적, 역량 등을 감안하여 경영진으로서의 역할 수행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자를 경영진으로 선임하여야 한다.
- ④ 이사회는 경영진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에도 경영진 직위에서 해임을 결의할 수 있다.
 1. 법규, 정관, 내규, 위임계약서에 명시된 의무의 위반 등으로 인하여 경영진의 직무를 수행하기에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회사와 경영진간에 체결된 위임계약서에서 해임 사유로 정하고 있는 경우

제39조(업무대행자 선임 등)

- ① 대표이사 유고 시에는 이사회가 정하는 바에 따른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② 전략기획, 재무기획, 리스크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경영진의 유고 시에는 이사회가 정하는 바에 따른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 외의 경영진의 유고 시에는 대표이사가 정하는 바에 따른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0조(임기)

대표이사의 임기는 이사의 임기에 따르며 대표이사 아닌 경영진의 임기는 2년 이내로 한다.

제4절 경영진 및 그 후보자들에 대한 교육제도

제41조(경영진 등에 대한 교육 및 평가 활용)

- ① 회사는 경영진 및 그 후보자들에 대하여 전략, 리더십 등 업무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② 회사는 경영진 후보자들에 대한 평가제도를 운영하며, 그 평가결과를 경영진 선임시 고려한다.

제5절 경영진에 대한 성과평가 및 보수지급 방법에 관한 사항

제42조(경영진의 성과평가)

- ① 경영진에 대한 평가는 보수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다.
- ② 경영진에 대한 평가는 계량적인 평가 외에 정성적인 평가를 병행하며, 담당업무 성과 외에 회사등 조직 단위의 업무성과와 연동하여 평가할 수 있다.
- ③ 경영진에 대한 평가결과는 보수의 지급이나 재선임 또는 해임시에 활용한다.

제43조(경영진의 보수)

- ① 경영진의 보수는 보수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다.
- ② 경영진의 보수는 연봉(기본급, 단기성과급)과 활동수당으로 하며, 보수와는 별도로 성과연동형 장기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제5장 감사위원회

제44조(기본원칙)

- ① 감사위원회는 감사를 공정하게 수행하고 직무상 취득한 기밀을 정당한 이유 없이 누설하거나 도용하지 않는다.
- ② 감사위원회는 직무수행에 있어 관계법령에 따라 사실과 증거에 의하여 직무를 수행하며, 감사사항에 대하여는 충분한 기록과 입증자료를 확보한다.

제45조(감사위원회의 권한 등)

- ① 감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갖는다.
 - 1. 회사의 모든 정보에 대한 제공 요구
 - 2. 관계자의 출석 및 답변요구
 - 3. 창고, 금고, 장부 및 물품의 봉인

4. 회계관계 거래처에 대한 조사자료 징구
 5. 그 밖에 감사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의 요구
- ② 경영진은 감사위원회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중요한 경영활동에 관한 정보를 사전 또는 사후적으로 공유한다.
 - ③ 감사위원회는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의 조력을 구할 수 있다.

제46조(감사보조조직)

- ① 감사위원회에는 효율적이고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감사업무 담당 부서를 둔다.
- ② 감사업무 담당 부서는 감사위원회의 감사업무를 보조한다.
- ③ 회사는 효율적 감사를 위하여 적절한 인력으로 감사 업무 담당 부서를 운영한다.
- ④ 회사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사위원회의 업무 내용을 적은 보고서를 금융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7조(상근감사위원)

- ① 감사위원회는 감사위원회의 업무 중 일부를 위임받아 수행하는 상근감사위원을 둘 수 있다.
- ② 감사위원회는 감사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상근감사위원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 상근감사위원은 위임받은 사항에 대한 감사 등의 결과를 감사위원회에 보고한다.
 1. 감사위원회 직무규정에 따른 일상감사 사항
 2. 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확인
 3. 감사실시 등 내부감사 업무 통할
 4. 그 밖에 감사위원회의 결의로 위임한 사항

제48조(이사회에 대한 보고)

- ① 감사위원회는 매년 1회 이상 감사실시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한다.
- ② 감사위원회는 임원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를 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이사회 및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9조(감사위원회에 대한 보고)

- ① 상근감사위원은 위임받은 사항 및 주요 업무수행과정에서 보고 받은 사항 중 중요사항에 대해 그 결과를 감사위원회에 보고한다.
- ② 준법감시인은 내부통제기준의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내부통제기준을 위반하는 경우 이를 조사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조사결과를 감사위원회에 보고할 수 있다.

제6장 보수위원회 및 보수체계 등

제50조(기본원칙)

- ① 보수위원회는 회사의 보수관행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하며, 보수체계가 리스크 구조와 조화를 이루도록 한다.
- ② 회사는 임직원이 과도한 위험을 부담하지 아니하도록 보수체계를 마련하여야 하며, 과도한 성과보수 지급으로 회사 및 자회사의 자본적정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한다.
- ③ 회사는 건전한 성과주의 문화가 정착되도록 다양한 성과 연계 보수제도를 도입하는 등 합리적으로 임직원의

보수제도를 설계하고 운영한다.

제51조(보수위원회 활동의 서류 보존)

회사는 보수위원회의 설치·운영 내역과 리스크관리 및 준법감시부서의 관리·감시활동내역을 서류로 보존한다.

제52조(보수와 리스크관리 및 준법감시)

- ① 회사는 풍부한 경험과 충분한 자격을 갖춘 자가 리스크관리 및 준법감시 담당자로 채용·유지될 수 있도록 한다.
- ② 회사는 리스크관리 및 준법감시 부서가 회사의 보수 관련 리스크를 적절히 관리·통제할 수 있도록 독립성과 권한을 부여하고, 리스크 관리 및 준법감시 업무가 이해상충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시 대상이 되는 분야의 성과와는 독립적인 기준에 근거하여 보수 지급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제53조(성과보수의 원칙, 설계 및 조정)

- ① 회사의 경영진, 금융투자업무 담당자, 업무집행책임자(제2조의 업무집행책임자를 말하며, 이 조에 한하여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는 제외한다.)의 보수 중 성과보수 비율은 성과평가와 연동하고, 그 비율은 책임의 정도, 직무의 특성, 담당업무의 투자성(「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 따른 투자성을 말한다. 이하 같다) 등에 따라 달리한다.
- ② 회사의 경영진, 금융투자업무 담당자, 업무집행책임자에 대한 보수의 상당부분을 성과보수로 하고, 리스크 요인 등을 감안한 성과에 따라 보수 지급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 ③ 회사는 재무성과가 목표에 미달하거나 손실이 발생한 경우 회사의 경영진, 금융투자업무 담당자, 업무집행책임자의 성과보수 규모가 조정될 수 있도록 보수제도를 설계한다.

제54조(이연지급)

- ① 회사의 경영진, 금융투자업무 담당자, 업무집행책임자(제2조의 업무집행책임자를 말하며, 이 조에 한하여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는 제외한다.)에 대한 성과보수는 담당 업무의 투자성 정도, 투자성의 존속기간 등을 고려하여 성과보수의 100분의 40 이상에 대하여 3년 이상 이연지급한다. 다만, 투자성 존속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에는 투자성의 존속기간 수준으로 이연기간을 축소할 수 있다.
- ② 회사는 단기 실적에 따른 성과보수를 지급할 경우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직원에 대해 성과보수의 일정비율 이상을 일정기간 이상 이연하여 지급한다.
- ③ 이연지급 시 이연기간 중 초기에 지급되는 부분이 기간별 균등 배분한 수준 보다 작도록 한다.
- ④ 이연지급 기간 중 담당 업무와 관련하여 금융회사에 손실이 발생한 경우 이연지급 예정인 성과보수를 실현된 손실규모를 반영하여 재산정한다.

제55조(성과보수의 지급형태 및 방식)

- ① 회사는 회사의 경영진, 금융투자업무 담당자, 업무집행책임자(제2조의 업무집행책임자를 말하며, 이 조에 한하여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는 제외한다.)의 성과보수 중 상당부분을 주식 또는 주식연계상품 등 회사의 장기성과와 연동될 수 있는 형태로 지급한다.
- ② 회사는 주식 또는 주식연계 상품에 대하여 부여시점 이후 최소 일정 기간 동안 지급이 유보될 수 있도록 한다.
- ③ 회사는 장기성과와 연동될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장기보수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 ④ 성과보수 지급의 기준이 되는 재무제표가 오류 또는 부정 등으로 인하여 정정되는 경우 기지급된 성과보수는 정정내용을 반영하여 조정한다.

제56조(현금보수 지급 등)

- ① 이연지급된 보수 중 주식 및 주식연계상품 등의 방식으로 지급되는 부분을 제외한 잔여 부분은 점진적으로 지급이 확정되는 현금보수로 지급될 수 있다.
- ② 지급확정기간 중 회사는 재무성과가 목표에 미달하거나 손실이 발생한 경우 지급 미확정 부분을 재무성과나 손실규모 등을 반영하여 조정한다.

제57조(보수체계 재조정)

회사의 안전을 위한 정부의 특별한 개입이 있는 경우, 회사는 정부의 조치에 따라 보수체계를 건전한 리스크관리 및 장기성장과 연계되도록 재조정할 수 있다.

제58조(보장형 상여 및 과도한 퇴직 관련 보수의 제한)

- ① 회사는 보장형 상여를 운영하지 않는다. 다만, 예외적으로 신규 임직원을 고용하는 경우 최소의 보장형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으나 그 기간은 1년으로 한정한다.
- ② 회사는 과도한 퇴직 관련 보수로 회사의 장기적인 가치창출 및 리스크관리의 건전성을 훼손하여서는 안된다.

제59조(개인적 리스크회피 전략 등 금지)

회사 임직원들은 보수체계의 리스크 연계성을 훼손할 수 있는 개인적 리스크회피 전략 또는 보수 관련 보증을 활용하여서는 안된다.

제60조(성과평가 지표)

- ① 회사는 단기적인 외형확대 경쟁을 지양하고, 장기 성과와 수익성, 건전성이 중요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성과평가 지표를 마련하고, 평가의 객관성 제고를 위해 계량화되지 않은 평가지표를 과도하게 반영하지 않는다.
- ② 회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참고하여 경영진의 성과평가 지표를 설정하며, 계량화되지 않은 평가지표에 대해서는 객관적인 평가체계를 마련한다.
 1. 단기적인 외형 및 자산 확대 경쟁을 지양하고 건전성 및 수익성 관련 지표를 반영
 2. 수익성 지표를 사용할 경우 비경상적인 요인들은 제외하고, 가능한 범위내에서 위험을 감안한 수익성 지표를 반영
 3. 재무적 지표 이외에 비재무적 지표로서 장기적 성장 잠재력 확충을 위한 다양한 지표를 반영
 4. 회사의 성과를 장기간에 걸쳐 측정·평가하고 장기성과의 지급 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이연지급 성과보수 제도를 활용
 5. 내부목표 달성 외에도 가능한 범위 내에서 금융회사간 비교 가능한 성과지표를 반영

제6장 공시

제61조(정기공시)

-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지배구조 연차보고서를 작성한다. 지배구조연차보고서 작성에 대한 구체적인 항목 및 방법은 회사가 속한 관련 협회 등의 장이 정하는 지배구조 연차보고서 작성 기준에 따른다.
 1. 회사의 지배구조 정책(지배구조 내부규범 등) 및 지배구조 현황

2. 이사회, 이사회내위원회 등에 관한 다음의 각 목의 사항
 - 가. 이사회, 이사회내위원회 등의 역할, 책임 및 운영에 관한 기준
 - 나. 이사에 대한 직무평가 기준
 - 다. 이사회, 이사회내위원회, 부의장이 있는 경우 부의장, 선임 사외이사가 있는 경우 선임 사외이사, 그 밖의 구성원 명단 및 경력
 - 라. 이사회, 이사회내위원회, 회의개최 횟수 및 이사들의 개인별 참석 현황
 - 마. 최고경영자를 이사회 의장으로 선임한 경우에는 그 선임 이유
3. 사외이사후보추천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 가. 임원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 권한과 책임
 - 나. 임원후보추천위원회의 명단 및 약력
 - 다. 사외이사 후보의 자격요건, 후보추천 절차, 사외이사 업무수행 평가방식 등 사외이사 선임기준
 - 라. 사외이사 후보자 및 그 제안자와의 관계(회사의 사외이사이거나 사외이사이었던 자를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할 때에는 과거 해당 사외이사 후보 제안자를 모두 포함)
 - 마. 사외이사 후보와 회사 및 자회사(그 임원 및 대주주 포함)와의 관계
 - 바. 법에 따른 사외이사 자격요건 충족 여부 및 근거
 - 사. 사외이사 후보자 추천 이유 및 사외이사 후보자의 경력
 - 아. 사외이사 재임여부 및 평가결과
 - 자. 사외이사 후보군 관리현황
 - 차. 임원후보추천위원회가 이사회에 사외이사 후보군 추천과 관련하여 보고한 내용
 - 카. 경영관리 담당 부서가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 사외이사 후보군관리 업무와 관련하여 주기적으로 보고한 내용
 - 타. 그 밖에 이사회가 정한 사외이사후보추천 관련 사항
4. 사외이사의 활동에 관한 사항으로 다음 각 목의 사항
 - 가. 이사회 및 이사회내위원회의 회의일시, 보고안건을 포함한 안건내용, 사외이사 개인별 이사회내위원회 참석 및 찬성 여부
 - 나. 사외이사에 대한 임원배상책임보험 가입 여부 및 현황
 - 다. 사외이사에 대하여 제공한 회사의 전략, 금융, 회계, 위험관리 등에 대한 교육 및 연수 실시 현황
 - 라. 관련 법령에 따른 사외이사의 자격요건 유지 여부
 - 마. 사외이사 또는 그 배우자, 직계혈족, 배우자의 직계혈족(이하 이 호에서 “사외이사등”이라 한다)이 수탁자·임직원이거나 최근 2년 이내에 수탁자·임직원이었던 대학 그 밖의 비영리법인에 대한 기부금 등의 제공내역
 - 바. 사외이사의 활동내역을 근거로 한 평가 개요 및 평가 결과
 - 사. 사외이사 지원부서 지정 및 운용현황
 - 아. 사외이사 개인별 재직기간
 - 자. 사외이사 개인별 보수 총액 및 내역
 - 차. 사외이사 개인별 보수 외에 지급된 편익 제공 현황
 - 카. 회사와 사외이사등 소속 기관과의 계약체결 내역
 - 타. 최근 5년간 사외이사 선임 내역
5. 최고경영자 경영승계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 가. 지주회사 자회사최고경영자후보추천위원회 규정

- 나. 최고경영자 후보 추천절차 개요
 - 다. 관계법령에 따른 자격요건 충족여부 및 근거
 - 라. 최고경영자 경영승계절차가 진행된 경우 내역
 - 마. 최고경영자 후보군 관리 내역
 - 바. 이사회와 최고경영자 경영승계계획 적정성 점검 내역
 - 사. 최고경영자 경영승계 지원부서 지정 및 운영현황
 - 6. 지주회사 자회사최고경영자후보추천위원회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 가. 지주회사 자회사최고경영자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 권한과 책임
 - 나. 지주회사 자회사최고경영자후보추천위원회의 명단 및 약력
 - 다. 최고경영자 후보의 자격요건, 후보추천 절차 등 최고경영자 선임 기준
 - 라. 최고경영자 후보자와 제안자와의 관계
 - 마. 법에 따른 최고경영자 자격 요건 충족 및 근거
 - 바. 최고경영자 후보자 추천 이유 및 최고경영자 후보자의 경력
 - 7. 감사위원 후보 추천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 가. 임원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 권한과 책임
 - 나. 임원후보추천위원회의 명단 및 약력
 - 다. 감사위원 후보의 자격요건, 후보추천 절차, 감사위원 업무 수행 평가방식 등 감사위원 선임 기준
 - 라. 감사위원 후보자 및 그 제안자와의 관계
 - 마. 법령에 따른 감사위원 자격요건 충족 여부 및 근거
 - 바. 그 밖에 이사회가 정한 감사위원 후보 추천 관련 사항
 - 8. 감사위원회 활동내역
 - 9. 위험관리위원회 활동 내역
 - 10. 내부통제위원회 활동 내역
 - 11. 지배구조와 관련한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의 권고·지시한 사항 및 회사의 개선 내용 또는 계획
 - 12. 그 밖에 정관이 정하는 지배구조 관련 주요사항
- ② 회사는 다음 각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보수체계 연차보고서를 작성한다. 보수체계 연차보고서 작성에 대한 구체적인 항목 및 방법은 회사가 속한 관련 협회 등의 장이 정하는 보수체계 연차보고서 작성 기준에 따른다.
- 1. 보수위원회의 구성, 권한 및 책임을 포함한 회사의 보수체계 의사결정 절차
 - 2. 성과측정 및 위험 조정 기준, 성과와 보수의 연계성, 이연, 지급확정 및 환수기준, 현금과 주식, 그 밖에 보수간의 배분을 결정하는 기준 등을 포함한 보수 체계의 주요 특성
 - 3. 회계연도 중 보수액(기본급 및 성과보수를 구분하고 대상 임직원수를 포함한다)
 - 4. 성과보수 금액 및 지급형태(현금, 주식, 주식연계상품 및 기타로 구분한다)
 - 5. 이연된 성과보수(지급이 확정된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을 구분한다)
 - 6. 이연된 성과보수 중 해당 회계연도에 지급된 금액
 - 7. 회계연도 중 지급된 퇴직 관련 보수금액, 해당 임직원 수 및 1인 기준 최고 지급액
 - 8. 회계연도 중 임직원에게 지급된 보수금액, 직급별 보수액 및 성과보수액
- ③ 지배구조 연차보고서 및 보수체계 연차보고서는 익년도 정기주주총회일 20일 전부터 해당 회사 및 관련 협회 등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 내용을 공시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회 등이 직전년도에 발생한 성과보수에 관한 사항을 제1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지배구조 연차보고서를 통해 공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직전년도 성과보수는 이를 결의하는 이사회 등이 개최된 날의 익월 15일까지 추가로 공시한다.

제62조(수시공시)

- ① 회사는 임원을 선임하거나 해임(사임 포함)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없이 회사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한다.
- ② 회사는 제14조의 단서에 해당되는 경우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공시한다.

제63조(주주총회)

- ① 회사는 사외이사 관련 주주총회 안건 상정 시 사외이사후보추천 등 성격이 상이한 안건들을 포괄하여 하나의 안건으로 상정하여서는 아니되고 개별 안건으로 상정하여야 한다.
- ② 이사회 의장, 이사회내위원회 위원장은 정기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주주들의 질의에 답변한다.
- ③ 회사는 주주총회가 종료된 후 발행주식 총수, 의결권행사 주식수, 안건별 찬·반 주식수 비율 등을 회사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한다.

제64조(공시방법)

이 규범에 따른 공시는 회사 및 한국금융투자협회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한다.

제7장 내부통제 및 리스크관리 등

제65조(내부통제체제)

- ① 회사는 법령을 준수하고, 경영을 건전하게 하며, 주주 및 이해관계자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준수하여야 할 기준 및 절차(이하 “내부통제기준”이라 한다)를 마련한다.
- ② 내부통제기준에서 정하여야 할 세부적인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지주회사 그룹내부통제규정에서 정한다.

제66조(준법감시인의 임면 등)

- ① 회사는 내부통제기준의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내부통제기준을 위반하는 경우 이를 조사하는 등 내부통제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준법감시인을 두며, 준법감시인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조사결과를 감사위원회에 보고할 수 있다.
- ② 회사는 사내이사 또는 업무집행책임자 중에서 준법감시인을 선임한다.
- ③ 회사가 준법감시인을 임면하려는 경우에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하며, 해임할 경우에는 이사 총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④ 준법감시인의 임기는 2년 이상으로 한다.
- ⑤ 회사는 준법감시인에 대하여 회사의 재무적 경영성과와 연동하지 아니하는 별도의 보수지급 및 평가기준을 마련하여 운영한다.

제67조(준법감시인의 자격요건)

- ① 준법감시인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사람이어야 한다.
 - 1. 최근 5년간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또는 금융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의 원장, 그 밖에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정하는 기관으로부터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1항 각 호 및 제2항 가 호에 규정된 조치 중 문책경고 또는 감봉 이상에 해당하는 조치를 받은 사실이 없을 것
 -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다만, 다음 각 목(라목 후단의 경우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라목 전단에서 규정한 기관에서 퇴임하거나 퇴직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

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검사 대상 기관(이에 상당하는 외국금융회사를 포함한다)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

나. 금융 관련 분야의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소지자로서 연구기관 또는 대학에서 연구원 또는 조교수 이상의 직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다. 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그 자격과 관련된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라.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증권선물위원회, 감사원,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예금자보호법」 제3조에 따라 설립된 예금보험공사(이하 “예금보험공사”라 한다),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금융 관련 기관에서 7년 이상 근무한 사람. 이 경우 예금보험공사의 직원으로서 「예금자보호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부실금융기관 또는 같은 조 제5호의 2에 따른 부실우려금융기관과 같은 법 제36조의 3에 따른 정리금융기관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7년 이상 근무 중인 사람을 포함한다.

마. 그 밖에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② 준법감시인이 된 사람이 제1항 제1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그 직을 잃는다

제68조(리스크관리체제)

① 회사는 자산의 운용이나 업무의 수행, 그 밖의 각종 거래에서 발생하는 위험을 제때에 인식·평가·감시·통제하는 등 위험관리를 위한 기준 및 절차(이하 “위험관리기준”이라 한다)를 마련한다.

② 위험관리기준에서 정하여야 할 세부적인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지주회사 그룹리스크관리규정에서 정한다.

제69조(위험관리책임자의 임면)

① 회사는 자산의 운용이나 업무의 수행, 그 밖의 각종 거래에서 발생하는 위험을 점검하고 관리하는 위험관리책임자를 임면한다.

② 회사는 사내이사 또는 업무집행책임자 중에서 위험관리책임자를 임면한다.

③ 회사가 위험관리책임자를 임면하려는 경우에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하며, 해임할 경우에는 이사 총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험관리책임자의 임기는 2년 이상으로 한다.

⑤ 회사는 위험관리책임자에 대하여 회사의 재무적 경영성과와 연동하지 아니하는 별도의 보수지급 및 평가기준을 마련하여 운영한다.

제70조(위험관리책임자의 자격요건)

① 위험관리책임자는 위험관리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실무경험을 갖춘 사람으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사람이어야 한다.

1. 최근 5년간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또는 금융관계법령을 위반하여 금융감독기관 등으로부터 문책경고 또는 감봉요구 이상에 해당하는 조치를 받은 사실이 없을 것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일 것

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검사 대상 기관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

나. 금융 관련 분야의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소지자로서 연구기관 또는 대학에서 위험관리와 관련하여 연구원

또는 조교수 이상의 직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 다.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예금보험공사 등 금융 관련 기관에서 위험관리 관련 업무에 7년 이상 종사한 사람
- 라. 그 밖에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정하는 사람

② 위험관리책임자가 된 사람이 제1항 제1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그 직을 잃는다.

제71조(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의 겸직 금지 등)

준법감시인과 위험관리책임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 업무를 수행하는 직무를 담당해서는 아니 된다.

1. 자산 운용에 관한 업무
2. 회사의 본질적 업무(해당 회사가 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필수업무로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말한다) 및 그 부수업무
3. 회사의 경영(兼營)업무
4. 자회사등의 업무(위험관리책임자가 자회사등의 리스크관리업무를 담당하는 경우는 제외)
5. 그 밖에 이해가 상충할 우려가 있거나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업무에 전념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정하는 업무

제72조(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에 대한 회사의 의무)

- ① 회사는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가 그 직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
- ② 회사는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를 임면하였을 때에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보고 한다.
- ③ 회사 및 임직원은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가 그 직무를 수행할 때 필요한 자료나 정보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이에 성실히 응한다.
- ④ 회사는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였던 사람에 대하여 그 직무수행과 관련된 사유로 부당한 인사상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부 칙(제정)

제1조(시행일) 이 규범은 2015년 03월 0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등)

- ① 제19조의 규정은 이 규범 시행 후 선임(재선임과 연임을 포함한다)되는 사외이사부터 적용한다.
- ② 이 규범 시행 후 선임되는 사외이사의 제19조 제4항에 따른 총 재임기간 산정과 관련해서는 이 규범 시행 전 재임한 기간에 대해서도 제19조 제5항, 제6항을 적용한다.
- ③ 회사는 현재 사외이사의 임기 등을 고려하여 이 규범 시행 후 최초로 열리는 주주총회에서 제20조에 따른 선임 사외이사 선임비율을 준수하기 어려운 경우 그 이유와 준수계획을 주주총회일이 속하는 달의 익월 말일까지 공시한다.
- ④ 이 규범 시행일 현재 사외이사로 재임 중인 자도 제23조 제7항 제1호와 관련해서는 이 규범 시행후 최초로 도래하는 정기주주총회에서 최초로 선임되는 것으로 본다.

제3조(폐지규정) 이 규범의 시행과 동시에 「사외이사운영규정」은 폐지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범은 2016년 08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범은 2016년 09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범은 2017년 03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범은 2017년 12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범은 2018년 3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등)

이 규범 시행 후 선임되는 사외이사의 총 재임기간 산정과 관련해서는 이 규범 시행 전 재임한 기간에 대해서도 제19조 제4항을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범은 2018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범은 2019년 2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범은 2020년 3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범은 2020년 6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범은 2021년 1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범은 2021년 3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범은 2021년 9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범은 2022년 5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범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범은 2024년 12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첨부 가. (4) 신한자산운용(주) 감사위원회규정

감사위원회규정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목적)

이 규정은 관계법령 및 정관에 따라 회사에 설치한 감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적용범위)

- ① 위원회와 관련하여 관계법령, 정관 또는 이사회 규정, 지배구조 내부규범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2018.3.30)
- ② 이 규정에서 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사항과 적용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조항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결의에 의한다.

제 3 조 (역할)

위원회는 회사의 전반적인 내부통제시스템의 적정성과 경영성과를 평가. 개선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

1. 재무감사, 업무감사, 준법감사, 경영감사, IT감사 등으로 구분되는 내부감사 계획의 수립, 집행, 결과평가, 사후조치 및 개선방안 제시
2. 회사의 전반적인 내부통제시스템에 대한 평가 및 개선방안 제시
3. 외부감사인 선임에 대한 승인
4. 외부감사인의 감사활동에 대한 평가
5. 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확인
6. 법령 또는 정관에서 정한 사항과 이사회가 위임한 사항의 처리
7. 감독기관 지시, 이사회 또는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한 감사 등

제 4 조 (권한)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갖는다.

1. 회사 내 모든 정보에 대한 요구권(경영진은 위원회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중요한 경영활동에 관한 정보를 사전적 또는 사후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2. 관계자의 출석 및 답변요구
3. 창고, 금고, 장부, 녹취, 물품 등에 대한 실사 및 봉인 요구
4. 거래처에 대한 회계관계 제반자료 요구
5. 감사결과 위법, 부당한 사항에 대한 시정과 관련 임직원에게 징계 요구
6. 기타 감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의 요구

제 5 조 (의무)

위원회는 감사를 행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공정하게 감사하여야 한다.
2. 직무상 취득한 기밀을 정당한 사유없이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된다.
3. 관계법규 및 지시사항에 따라 사실과 증거에 근거하여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감사사항에 대하여는 충분한 기록과 입증자료를 확보하여야 한다.

제 6 조 (독립의 원칙)

- ① 위원회는 이사회, 집행기관 및 타부서로부터 독립된 위치에서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② 위원회 위원은 관계법령 등에서 허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회사 또는 자회사등으로부터 자문, 기타 보상적 수수료를 수령하거나, 회사 또는 자회사등과 이해관계인의 지위에 있어서는 아니된다.(2015.3.3 개정)

제 7 조 (보고 등)

- ① 위원회는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감사결과 문제점에 대해서는 대표이사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구하여야 한다.
- ② 위원회는 위원회 의결사항 중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를 이사회에 부의 또는 보고하여야 한다.
- ③ 위원회는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용실태를 평가하여 이사회에 사업연도마다 보고 한다
- ④ 위원회는 임원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를 할 위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이사회 및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016.8.1 개정)

제 2 장 구 성

제 8 조 (선임 및 구성)

- ① 위원회의 위원은 3인 이상 5인 이내의 이사로 구성되며, 위원 중 3분의 2 이상은 사외이사이어야 한다.
(2015.3.3 개정)
- ② 위원회의 위원 중 1인 이상은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회계 또는 재무전문가이어야 한다.
- ③ 위원의 임기는 3년 이내로 하며, 위원회에 결원이 생길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최초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제 9 조 (위원장 및 간사)

- ① 위원장은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결의로 사외이사 중에서 선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별로 업무를 분장할 수 있다.
- ③ 위원장이 유고 등의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회가 정하는 순 서에 따라 직무를 대행한다. (2018.3.30)
- ④ 감사부서의 부서장은 별도의 정함이 없는 경우 위원회의 간사가 된다.

제 10 조 (위원회의 권한 위임)

- ① 감사위원의 미착임, 출장 기타 사유로 인하여 위원회의 소집이 곤란하고 사안이 긴급한 경우 감사부서의 부서장이 이를 대행하고 위원회의 추인을 받는다 (2018.3.30)
- ② 제16조의 위임사항 및 위원회가 위임을 결의한 사항은 감사부서의 부서장이 전결처리하고 이를 다음 위원회에 보고한다. (2018.3.30)
- ③ 일상 감사대상 이외의 문서 중 대표이사의 결재를 받은 중요한 문서가 있을 경우 이를 감사부서의 부서장이

공람한다. (2018.3.30)

제 3 장 회 의

제 11 조 (회의의 종류 및 소집절차)

-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된다.
- ② 정기회의는 분기당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개최되며, 임시회의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된다.
- ③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 장소 및 목적사항을 기재한 통지서와 안건을 회의개최 7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④ 위원회는 위원 전원의 동의를 있는 경우 제3항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 ⑤ 위원은 위원장에게 의안과 사유를 밝혀 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으며, 위원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회의 소집을 못할 경우에는 이를 서면으로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 12 조 (결의방법)

- ① 위원회는 감사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 감사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의한다. (2021.5.11)
- ② <삭제> (2021.5.11)
- ③ 위원회는 위원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위원이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수단을 이용하여 결의할 수 있다. (2012.6.21개정)
- ④ 위원회의 안건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당해 안건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이 경우 행사가 제한되는 의결권의 수는 출석한 위원의 의결권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 13 조 (부의사항 등)

- ① 위원회 의결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주총회에 관한 사항
 - 가. 임시주주총회의 소집 요구
 - 나. 주주총회 의안 및 서류에 대한 의견 진술
 2. 이사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
 - 가. 이사회에 대한 보고사항
 - 나. 감사보고서의 작성, 제출
 - 다. 이사의 위법행위에 대한 유지 청구
 - 라. 이사에 대한 영업보고 요구
 - 마. 임시이사회 소집 요구
 - 바. 기타 이사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3. 감사에 관한 사항
 - 가. 감사계획의 수립
 - 나. 내부감사 실시와 관련한 위임 사항
 - 다. 감사부서장 임면에 대한 동의 및 업무성과평가 (2018.3.30)
 - 라. 외부감사인 선정 및 해임 요청 (2018.11.01.)
 - 마. 외부감사인으로부터 이사의 직무수행에 관한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에 위배되는 중요한 사실의 보고 수령
 - 바. 외부감사인으로부터 회사가 회계처리 등에 관한 회계기준을 위반한 사실의 보고수령

사. 외부감사인 감사활동에 대한 평가

4. 기 타

가. 감사위원회직무규정의 제정 및 개폐

나. 관계법령, 정관 또는 기타 규정에서 정하는 사항

다. 기타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 보고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감사에 관한 사항

가. 회계기준의 제정 및 변경

나. 회사 재무활동의 건전성 및 타당성과 재무보고의 정확성 검토

다. 내부통제시스템의 평가 및 개선

라. 감사결과 시정사항에 대한 조치 확인

2. 기 타

가. 관계법령, 정관 또는 기타 규정에서 정하는 사항

나. 기타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 14 조 (관계인의 출석 등)

①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임직원 및 외부감사인을 회의에 참석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필요할 경우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 등에게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

제 15 조 (의사록)

① 위원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제 4 장 감사 및 보고

제 16 조 (감사의 위임)

① 위원회는 감사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사부서의 부서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사부서의 부서장은 위임받은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2018.3.30)

1. 연간감사계획에 의한 세부감사계획, 실시, 결과보고 등 내부감사업무 수행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

2. 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확인

3. 감사실시 등 내부감사 업무 통할

4. 기타 위원회의 결의로 위임한 사항

②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세부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감사위원회직무규정에서 따로 정한다.

제 17 조 (준법감시인관련 사항)

① 위원회는 준법감시인이 수행한 다음 각 호의 업무처리 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받는다.

1. 컴플라이언스 모니터링 시스템에 의한 주기적인 점검 및 상시 감시업무

2. 기타 관계법령, 정관, 대표이사, 이사회 또는 위원회가 별도로 정한 업무

② 위원회는 회사의 내부통제시스템 구축 및 이행상황에 대하여 상시적으로 평가·감독하고, 필요한 경우 내부통제시스템의 개선을 위한 시정조치를 대표이사에게 요구할 수 있다.

제 18 조 (감사위원회에 대한 보고)

① 감사부서의 부서는 제16조에 의하여 위임받은 사항 및 업무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중요사항에 대하여 위원회에 보고한다. (2018.3.30)

② 준법감시인은 내부통제기준의 준수여부를 점검하고 내부통제기준을 위반하는 경우 이를 조사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조사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할 수 있다.(2016.8.1 개정)

제 5 장 보 칙

제 19 조 (외부감사인과의 관계)

위원회는 외부감사인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외부 감사인의 감사계획 및 절차와 결과를 활용하여 감사목적을 달성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 20 조 (감사보조조직)

① 회사는 위원회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2인 이상의 전담인력으로 구성된 감사부서를 둔다.

② 감사부서는 위원회의 감사업무를 보조한다.

③ 감사부서의 운영에 관한 세부기준 및 내부감사절차 등은 감사위원회직무규정에서 따로 정한다.

제 21 조 (감사업무 외부위탁시의 특칙)

외부전문기관에 감사업무를 위탁하여 감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당해 외부전문기관을 이 규정에 의한 감사보조조직으로 본다.

제 22 조 (규정의 개폐)

이 규정의 개폐는 이사회회의 결의에 의한다.

부 칙

제 1 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 1 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09년 6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 1 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6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 1 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5년 3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 1 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 1 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9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 1 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3월 30일부터 소급하여 시행한다.

부 칙

제 1 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 1 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21년 5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첨부 가. (5) 신한자산운용(주) 임원후보추천위원회규정

임원후보추천위원회규정

제정 : 2016.08.01

개정 : 2018.02.27

개정 : 2021.12.27

개정 : 2023.12.26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임원후보추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위원회는 3인 이상 5인 이내의 이사로 구성한다. 이 경우 총 위원의 과반수는 사외이사로 한다.

제3조(위원장) ① 위원회는 위원회 결의로 사외이사인 위원 중 1인을 위원장으로 선임한다.

② 위원장이 부재중이거나 유고시에는 위원회에서 정한 순위에 따른 위원이 이를 대행한다. 다만, 위원회에서 별도로 순위를 정하지 아니한 경우 이사회에서 정한 이사회 의장 직무대행 순서에 따른 위원회 소속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소집) ①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다만, 위원회 구성 후 최초로 소집되는 위원회는 이사회 의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를 소집할 때에는 위원장이 일시, 장소 및 목적사항을 회일 7일전에 각 위원에게 통지한다. 그러나 긴급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으며, 위원 전원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제5조(결의사항 등) ① 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 결의한다.

1. 대표이사 후보 추천에 관한 사항
2. 사외이사 후보 추천에 관한 사항
3. 감사위원 후보 추천에 관한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회에서 심의, 결의된 사항을 이사회에 부의 또는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대표이사 후보 추천) 위원회는 지주회사의 자회사최고경영자후보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대표이사 후보자에 대하여 관계법규와 지배구조 내부규범 제29조에서 정한 자격기준 적합여부를 검토하여 주주총회에 추천한다.

제7조(사외이사 및 감사위원 후보 추천 등) 위원회는 회사 및 주주 등의 이익에 부합하는 자를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에 따라 관계 법규 및 규범에서 정하는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지 검증한 후 주주총회에 추천한다.

제8조(결의방법) ① 위원회의 결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다만, 감사위원 후보 추천의 경우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위원이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위원은 위원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③ 위원회의 결의에 관하여 자신이 후보가 되는 등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이 경우 해당 위원의 의결권의 수는 출석위원의 의결권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감사위원 후보 추천의 경우 당해 위원의 의결권 수는 재적위원의 의결권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9조(의사록) 위원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한 의사록을 작성하고 출석한 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6. 8. 1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등) 이 규정은 시행 후 선임(재선임과 연임을 포함한다)되는 임원부터 적용한다.

제3조(폐지규정) 이 규정의 시행과 동시에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규정」은 폐지한다.

부 칙(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8. 02. 27 부터 시행한다.

부 칙(2)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1. 12. 27 부터 시행한다.

부 칙(3)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3. 12. 26 부터 시행한다.

첨부 가. (6) 신한자산운용(주) 보수위원회규정

보수위원회규정

제 정: [2015. 03. 03]

개 정: [2016. 08. 01]

개 정: [2017. 12. 14]

개 정: [2019. 02. 14]

개 정: [2020. 03. 24]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정관, 이사회규정 및 지배구조 내부규범에서 정한 보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역할) 위원회는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 결의하며 경영진 등의 평가·보수체계가 건전하게 수립, 운용되도록 관리한다.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2인 이상 5인 이내의 이사로 구성한다. 이 경우 총 위원의 과반수는 사외이사로 한다.

② 위원 중 1인 이상은 금융회사(지배구조 내부규범 제2조의 금융회사를 말한다.) 또는 상법상 회사(지배구조 내부규범 제2조의 상법상 회사를 말한다.)의 금융, 회계 또는 재무 분야에서 종사한 경험이 있는 자로 한다.

③ 사외이사인 위원은 연속하여 2년을 초과 재임할 수 없다. 다만 임기만료시점의 불일치, 재임 제한시 위원회 구성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조(위원장) ① 위원회는 위원회 결의로 위원 중 1인을 위원장으로 선임한다. 다만, 위원장은 사외이사인 위원에 한한다.

② 위원장이 부재중이거나 유고시에는 위원회에서 정한 순위에 따른 위원이 이를 대행한다. 다만, 위원회에서 별도로 순위를 정하지 아니한 경우 이사회에서 정한 이사회 의장 직무대행 순서에 따른 위원회 소속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소집) ①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위원회를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다만, 위원회 구성 후 최초로 소집되는 위원회는 이사회 의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를 소집할 때에는 위원장이 일시, 장소 및 목적사항을 회일 7일전에 각 위원에게 통지한다. 그러나 긴급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으며, 위원 전원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제6조(결의사항 등) ① 위원회는 다음의 각호의 사항을 심의, 결의한다.

1. 금융투자업무 담당자(지배구조 내부규범 제2조의 금융투자업무 담당자를 말한다. 이하 동일), 업무집행책임자(지배구조 내부규범 제2조의 업무집행책임자를 말하며 이 규정에 한하여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는 제외한다. 이하 동일), 경영진의 평가 및 보수체계 결정에 관한 사항
2. 금융투자업무 담당자, 업무집행책임자, 경영진의 평가 및 보수안의 결정에 관한 사항

3. 보수체계 연차보고서(지배구조 내부규범 제2조의 보수체계 연차보고서를 말한다)의 작성 및 공시에 관한 사항
4. 금융투자업무 담당자, 업무집행책임자, 경영진의 보수체계 설계·운영의 적정성 평가 등에 관한 사항
5. 회사의 보수 정책에 대한 의사결정 절차와 관련된 사항
6. 회사의 위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 또는 파생상품의 설계·판매·운용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 중 위원회의 심의·의결이 필요한 대상자의 결정
7. 주주총회에서 위임 받은 범위 내 사외이사 보수의 결정
8. 기타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회에서 심의, 결의된 사항을 이사회에 부의 또는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결의방법) ① 위원회의 결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② 위원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이 경우 당해 위원은 재적위원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위원회는 위원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위원이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위원은 위원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제8조(관계인의 출석, 관계자료 제출 및 외부자문) 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경영진 및 관계 직원에게 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할 것을 요구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외부인사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②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외부 전문기관에 자문을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외부 전문기관과의 계약 체결 및 해지는 전적으로 위원회의 권한에 속한다.

제9조(의사록) 위원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한 의사록을 작성하고 출석한 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부 칙 (제정)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5년 03월 0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08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12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2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3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위험관리위원회규정

제 정 : 2016.07.28

개정(1): 2017.05.18

제 1 조 (목적)

① 이 규정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위험관리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위원회의 역할)

위원회는 이사회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의결하며 회사의 고유재산과 집합투자재산의 운용 및 기타 경영상 발생할 수 있는 제반 리스크를 종합적으로 관리한다.

제 3 조 (구성)

- ① 위원회는 이사회에서 선임된 2인 이상 5인 이내의 이사로 구성한다. 이 경우 총위원의 과반수는 사외이사로 한다.
- ② 위원 중 1인 이상은 금융회사(지배구조 내부규범 제 2조의 금융회사를 말한다.) 또는 상법상 회사(지배구조 내부규범 제 2조의 상법상 회사를 말한다.)의 금융, 회계 또는 재무 분야에서 종사한 경험이 있는 자로 한다.
- ③ 위원회는 위원회 결의로 사외이사인 위원 중 1인을 위원장으로 선임한다. 위원장이 부재중이거나 유고시에는 위원회에서 정한 위원이 이를 대행한다.

제 4 조 (소집)

- ① 위원회는 분기 1회 소집함을 원칙으로 하며,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위원회를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다만, 위원회 구성 후 최초로 소집되는 위원회는 이사회 의장이 소집한다.
- ② 위원회를 소집할 때에는 위원장이 일시, 장소 및 목적사항을 회일 7일전에 각 위원에게 통지한다. 그러나 긴급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으며, 위원 전원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 ③ 소집회의가 불가능한 경우, 서면으로 결의(보고 포함) 할 수 있다.

제 5 조 (심의·의결사항 등)

- ① 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의결 한다.
 - 1. 위험관리의 기본방침 및 전략 수립
 - 2. 금융회사가 부담 가능한 위험 수준 결정
 - 3. 적정투자한도 및 손실허용한도 승인
 - 4.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 27조에 따른 위험관리기준의 제정 및 개정
 - 5. 리스크관리조직 구조 및 업무분장에 관한 사항
 - 6. 리스크관리정보시스템의 운영에 관한 사항
 - 7. 각종 한도의 설정 및 한도초과의 승인에 관한 사항

8. 리스크관리실무위원회규정의 제정 및 개정
 9. 기타 이사회 및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위원회는 제 1 항에 따라 결의한 사항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리스크관리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에 위임할 수 있다. 위원회는 실무위원회가 결의한 사항에 대해 다시 결의할 수 있다.

제 6 조 (결의방법)

- ① 위원회의 결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 ② 위원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이 경우 당해 위원은 재적위원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③ 위원회는 위원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위원이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위원은 위원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제 7 조 (관계인 출석)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경영진 및 관계직원 또는 외부인사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 8 조 (의사록)

위원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한 의사록을 작성하고 출석한 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제 9 조 (리스크관리실무위원회)

위원회는 효율적인 리스크관리업무 수행을 위하여 리스크관리실무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부 칙 (제정)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6 년 8 월 1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 제 1 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7 년 5 월 18 일부터 시행한다.

내부통제위원회규정

제 정 : 2024.12.19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본 내부통제위원회 규정(이하 “본 규정”이라 한다)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정관에 따라 이사회 내 위원회로 설치 되는 내부통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위원회에 관한 규정은 법령, 정관 또는 이사회규정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 하고는 본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장 구 성

제3조(구성)

위원회는 3인 이상 5인 이내의 이사로 구성한다. 단, 위원 과반수는 사외이사로 구성한다.

제4조(위원장)

- ① 위원장은 사외이사로 한다.
-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 ③ 위원장의 부재 또는 유고 시에는 사외이사 위원 중 선임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 행한다.
- ④ 위원의 사임·사망 등의 사유로 제3조에서 정한 내부통제위원회의 구성요건에 미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최초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제 3조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3장 운 영

제5조(소집)

-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 ② 위원회 소집 시기는 회의 일시 및 장소를 정하여 회의일 7일 전에 이를 각 위원 에게 서면(E-mail 등 전자통신 수단 포함)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③ 위원 전원의 동의를 있을 때에는 전항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제6조(업무)

-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및 의결한다.

1. 내부통제의 기본방침 및 전략 수립
 2. 임직원의 직업윤리와 준법정신을 중시하는 조직문화의 정착방안 마련
 3. 지배구조내부규범의 마련 및 변경
 4. 내부통제기준의 제정 및 개정
 5. 기타 위원회 결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위원회는 법 제30조의2 제1항에 따른 임원과 대표이사가 각각 법 제30조의2 및 제30조의4에 따른 관리조치와 보고를 적절하게 수행 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평가하고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하여야 한다.
- ③ 위원회 보고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임원의 내부통제등 관리의무에 대한 점검, 평가 및 미흡사항에 대한 개선조치에 관련된 사항
 2. 대표이사등의 내부통제등 총괄관리의무에 대한 점검, 평가 및 미흡사항에 대한 개선조치에 관련된 사항
 3. 기타 이사회 또는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 7 조(결의방법)

- ① 위원회의 결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 ② 위원회는 위원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위원이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위원은 위원회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제 8 조(관계인의 출석)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련 임직원 또는 외부 인사를 출석시켜 설명이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 9 조(의사록)

- ① 위원회는 의사에 관하여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 ② 의사록에는 심의 내용과 그 결과를 기재하고 심의를 실시한 위원 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제4장 기 타 사 항

제10조(내부통제운영위원회)

회사는 내부통제업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제6조 제1항 각 호 사항의 협의를 위한 내부통제운영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제11조(규정의 개폐)

본 규정의 제·개정 및 폐지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며, 그 외 단순한 자구 수정 및 법규개정사항 반영 등 필요한 경우에는 대표이사가 이를 변경할 수 있다.

부 칙

본 규정은 2024년 12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첨부 나.

재선임 대상 사외이사 후보 검토보고서

성 명	총 합 의 견
이 재 은	적 합
박 영 규	적 합
조 성 부	적 합

본 위원회는 상기 재선임 대상 사외이사 후보자에 대한 자격요건을 확인합니다.

2024년 2월 27일

신한자산운용(주)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위원장 이 재 은 (사인)



후보자	이 재 은	소속법인	홍익대학교
-----	-------	------	-------

※ 사외이사 자격요건에 대한 법령 및 내부규범 준수 여부

상법 제382조 제3항 - 주식회사 사외이사 결격 요건	해당사항 없음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제5조 제1항, - 금융회사 임원의 결격요건	해당사항 없음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제6조 제1항, 제3항 - 금융회사 사외이사 결격요건	해당사항 없음
당사 지배구조 내부규범 제16조 제1항, 제2항- 적극적 자격요건	충족
당사 지배구조 내부규범 제19조 제4항- 사외이사 임기제한	해당사항 없음

※ 사외이사 자격요건 주요 항목

후보자와 회사 등과의 관계	해당여부	비 고
회사 또는 자회사등과의 관계	미해당	특이사항 없음
최대주주와의 관계	미해당	특이사항 없음
임원과의 관계	미해당	특이사항 없음

소극적 자격요건 (주요 사항)	해당여부	비 고
소속 법인 자본의 10% 초과여신거래	미해당	특이사항 없음
소속 법인 및 본인의 자문거래 및 용역거래 여부	미해당	특이사항 없음
당사 외 둘 이상의 다른 주권상장법인의 사외이사, 비상임이사, 비상임감사 겸직 여부	미해당	특이사항 없음

적극적 자격 요건	충족여부	비 고
전문성	충족	- 회계 전문가
직무공정성, 윤리책임성, 충실성	충족	-

재선임 대상 사외이사 평가결과	사외이사 업무수행 능력 우수
------------------	-----------------

후보자	박 영 규	소속법인	성균관대학교
-----	-------	------	--------

※ 사외이사 자격요건에 대한 법령 및 내부규범 준수 여부

상법 제382조 제3항 - 주식회사 사외이사 결격 요건	해당사항 없음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제5조 제1항, - 금융회사 임원의 결격요건	해당사항 없음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제6조 제1항, 제3항 - 금융회사 사외이사 결격요건	해당사항 없음
당사 지배구조 내부규범 제16조 제1항, 제2항- 적극적 자격요건	충족
당사 지배구조 내부규범 제19조 제4항- 사외이사 임기제한	해당사항 없음

※ 사외이사 자격요건 주요 항목

후보자와 회사 등과의 관계	해당여부	비 고
회사 또는 자회사등과의 관계	미해당	특이사항 없음
최대주주와의 관계	미해당	특이사항 없음
임원과의 관계	미해당	특이사항 없음

소극적 자격요건 (주요 사항)	해당여부	비 고
소속 법인 자본의 10% 초과여신거래	미해당	특이사항 없음
소속 법인 및 본인의자문거래 및 용역거래 여부	미해당	특이사항 없음
당사 외 둘 이상의 다른 주권상장법인의 사외이사, 비상임이사, 비상임감사 겸직 여부	미해당	특이사항 없음

적극적 자격 요건	충족여부	비 고
전문성	충족	- 금융, 경영 전문가
직무공정성, 윤리책임성, 충실성	충족	-

재선임 대상 사외이사 평가결과	사외이사 업무수행 능력 우수
------------------	-----------------

후보자	조성부	소속법인	-
-----	-----	------	---

※ 사외이사 자격요건에 대한 법령 및 내부규범 준수 여부

상법 제382조 제3항 - 주식회사 사외이사 자격요건	해당사항 없음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제5조 제1항, - 금융회사 임원의 자격요건	해당사항 없음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제6조 제1항, 제3항 - 금융회사 사외이사 자격요건	해당사항 없음
당사 지배구조 내부규범 제16조 제1항, 제2항 - 적극적 자격요건	충족
당사 지배구조 내부규범 제19조 제4항 - 사외이사 임기제한	해당사항 없음

※ 사외이사 자격요건 주요 항목

후보자와 회사 등과의 관계	해당여부	비고
회사 또는 자회사 등과의 관계	미해당	특이사항 없음
최대주주와의 관계	미해당	특이사항 없음
임원과의 관계	미해당	특이사항 없음

소극적 자격요건 (주요 사항)	해당여부	비고
소속 법인 자본의 10% 초과여신거래	미해당	특이사항 없음
소속 법인 및 본인의 자문거래 및 용역거래 여부	미해당	특이사항 없음
당사 외 둘 이상의 다른 주권상장법인의 사외이사, 비상임이사, 비상임감사 겸직 여부	미해당	특이사항 없음

적극적 자격요건	충족여부	비고
전문성	충족	- 경영 전문가
직무공정성, 윤리책임성, 충실성	충족	-

재선임 대상 사외이사 평가결과	사외이사 업무수행 능력 우수
------------------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96

TEL: 02-767-5777

www.shinhanfund.com